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15 집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15 집



언론중재위원회

제15집을 발간하며 ……

우리 언론은 헌법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라는 지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이래 오늘날까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비판과 시비를 가리는 공리적(公器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언론은 정보전달, 사회감시, 의제설정 등과 같은 주된 기능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무엇보다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특성인 속보성, 선정성, 강력한 전파력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며 갈수록 보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모두 소중한 헌법적 가치이자 기본권이므로 두 권리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가치의 충돌에 따른 분쟁과 관련해 우리 법원은 진실상당성의 법리, 익명보도의 원칙, 위법성의 조각사유 등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는 등 그 동안 언론소송 판례를 많이 발전시켜왔습니다.

법원 소송단계 이전에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기관인 우리 위원회는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매년 언론관련 주요 판결을 수집해 ‘국내언론 관계판결집’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007년 각급 법원이 내린 언론관련 판결 가운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판결(반론보도청구 4건, 정정보도청구 7건, 손해배상청구 35건, 기타 3건 등) 49건을 선정하여 제15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집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법리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언론인, 언론법제 연구자 등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

차 례

I. 반론보도청구사례

1.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
진○○ 대 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카기1937, 서울고등법원 2005나100290) (확정) 13
2. 반론제도가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여○○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112566) (확정) 20
3. 타 프로그램을 인용 방송했다 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인터뷰를 거절한 사실이 반론보도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김○○ 외 1인 대 기독교○○○○회 ○○교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833) 31

II. 정정보도청구사례

1.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관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이○○ 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2371) (확정) 40
2.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임종인 대 주식회사 와이티엔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066) (확정)	52
3.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개인이 속한 단체가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 대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655) (확정) 대통령 비서실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662) (확정)	55
4.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 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182) (확정)	62
5. 피고 언론사가 원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보도를 해주었으나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 건설교통부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3984) (확정)	69
6.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우○○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9017)	75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1.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주유소의 전경을 방영하여 실제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 외 1인 대 주식회사 광주방송 외 1인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892) (확정)	87
2.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김○○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9577) (확정) …………… 96

3.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진다

김○○ 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571) …………… 103

4.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 공공성이 부정된다

주○○ 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6인 (대법원 2004다61372) …………… 124

5. 국회의원 욕설 보도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주성영 대 오연호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8321) …………… 129

6. 마치 원고가 예정된 피해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이해찬 대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82) …………… 145

7.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현한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황△△ 대 대한민국 외 4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8420) (확정) …………… 149

8.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의 경우에는 픽션드라마보다 명예훼손 책임이 가중된다

박○○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6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9818) (확정) …………… 157

9.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

-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김○○ 대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외 1인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49079,
대구지방법원 2006나11409, 대법원 2007다52744) 169
10. 원고의 대북접촉 사실이나 알리바이의 의문점 등의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김○○ 외 3인 대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대법원 2005다55510) 182
11.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김○○ 외 3인 대 한국방송공사 외 4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302, 서울고등법원 2006나80294) (확정) 187
12.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다
이○○ 대 주식회사 중앙엠엔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97) (확정) 205
13. 기사 내용상 원고와 A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이라는 집단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김○○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575) (확정) 211
14.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를 통해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대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3415) (확정) 216
15.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평이 회화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일뿐, 독자들에게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733) (확정)	221
16.	보도내용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위법성이 없다 박○○ 대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7242, 대법원 2007다2268)	225
17.	사찰이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염○○ 외 1인 대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 외 1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가단4557) (확정)	236
18.	보도가 명예훼손적 사실을 일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진실상당성이 있으므로 보도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대 설□□ 외 5인 (서울양지방법원 2007가합1826) (확정)	243
19.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범죄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 대 주식회사 연합뉴스 외 4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6200, 대법원 2006다656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0029) (확정)	249
20.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된 경우 사장은 보도 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한 자는 작성자로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조○○ 외 17인 대 정연주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5539, 서울고등법원 2006나103531)	261
21.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 사진이나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케이티 노동조합 외 1인 대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3887) (확정) 277
22.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취재를 하였다든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염동연 대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외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2100) (확정) 283
23. 언론기관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한 경과 보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박○○ 외 1인 대 주식회사 뉴시스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5157) (확정) 290
24.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성이 인정된다
박○○ 외 4인 대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외 1인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9121, 대전지방법원 2007나9762) (확정) 298
25.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대 주식회사 경향닷컴 (창원지방법원 2007나7861) (확정)
이○○ 대 주식회사 스포츠서울미디어 (창원지방법원 2007나7878) (확정) 307
26. 보도에서 굳이 기재할 필요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사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주식회사 충청일보 외 3인 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외 4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9609) (확정) 319

IV. 기타사례

1.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17) 340

2. 피고인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김○○ (전주지방법원 2006노195, 대법원 2006도3619) 348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I. 반론보도청구사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못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9.자 판결 (2005카기1937)

서울고등법원 2007. 1. 10.자 판결 (2005나100290)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10일 진○○이 탁○○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심판청구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신청인은 현대종교 2005년 6월호 제17면에 『진□□ 목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라는 제목으로 진□□ 목사가 신청인의 개종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면서 “고발 주체를 ‘안○○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측’이라고 한 표현이나, ‘협의를 씌워’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사에서 ‘고발’을 ‘고소’로 잘못 표현한 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신청인의 단순한 오기로 역시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반론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재판부는 2005년 11월 9일 신청인과 사건 기사 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신청인은 2005년 7월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5서울중재242)을 하여 중재결과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은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5카기193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진 ○ ○

피 신 청 인 : 탁 ○ ○

변 론 종 결 : 2005. 10. 26.

판 결 선 고 : 2005. 11. 9.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현대종교의 첫 면 우측 상단부에 별지 제1 기재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은 22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월간 현대종교의 본문 활자로, 반론 보도신청인 이름은 1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1일 금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의 진□□은 2005.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신청의 진△△ 등과 공모하여, 위 진△△의 딸인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신청인을 기도원과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월간 현대종교' 라는 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위 현대종교 2005년 6월호 제 17면에는 '진□□ 목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라는 제목 아래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05. 7. 11.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 7. 25. 위 중재신청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는 불성립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월간 현대종교 2005년 6월호를 발행함에 있어, 위 진□□ 목사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신청인에게 개종을 강요한 위 진□□ 목사가 마치 상담시 성경공부만을 하고, 신청인이 위 진□□ 목사에게 혐의를 씌워 고소한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아버지만이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히려 위 진□□ 목사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의 가족들이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고(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16조), 여기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혐의를 씌워 고소하였다' 라는 부분은 그 문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아니라 안○○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측이 혐의를 씌워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청인과 위 기사 내용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담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부분과 "가족들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라는 부분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하는 위 진□□ 목사의 주장을 인용표를 붙여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 중에는 위 진○○ 목사가 신청인에게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용 부분만으로 곧바로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김양훈
판사 이상우

〈별지 1〉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2심 판결문

사 건 : 2005나100290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항소인 : 진 ○ ○

피신청인, 피항소인 : 탁 ○ ○

제 1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카기1937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11. 1.

판 결 선 고 : 2007. 1. 10.

주 문 :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현대종교의 첫 면 우측 상단부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은 22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월간 현대종교의 본문 활자로, 반론 보도신청인 이름은 1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1일 금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 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 정○○, 오○○(이하 '신청인 등' 이라 한다)은 기독교 단체인 '안○○증인회 하남의 교회' (이하 '안증회' 라고 한다)의 신도이다.

나. 신청인 등, 안증회 목사 김○○, 안증회 신도 등 72인은 2001. 4. 경 김○○을 대표로 하여 '진□□ 목사가 신청인 등을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진□□을 고발하였고, 그 결과 진□□은 '신청인은 부(父) 진△△, 정○○의 남편 송○○, 오○○의 남편 정△△ 으로부터 신청인 등을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신청인 등을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2003고단1797)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5. 4. 13. '진□□이 신청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하지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 등을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월간 현대종교라는 종교관련 잡지의 발행인으로, 위 현대종교 2005년 6월호 제17면에 '진□□목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이 사건 기사의 'A'는 기사 내용상 신청인이다.

마. 이에 신청인은 2005. 7. 11.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 중재불성립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8. 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률 및 반론보도청구의 제한

가. 적용 법률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 한다)의 반론보도청구 등에 관한 조항은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고 2005. 7. 27.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나, 언론중재법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간법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

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정간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정간법이다.

나. 반론보도청구의 제한

정간법 제16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에 관해 이미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참조).

3. 주장 및 판단

가. 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기사 중 "상담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은 진□□이 개종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관련 형사판결에서 진□□이 신청인에게 개종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기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상담시 성경공부를 했을 뿐이다"라는 부분은, 그 앞 부분에서 진□□이 신청인에 대한 개종강요 및 감금·감금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그중 감금·감금교사 혐의는 무죄로 개종강요 혐의는 유죄로 선고되었다는 취지를 적시한 후,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수증하지 않는 진□□의 의견을 전제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반론보도로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즉 진□□이 신청인에게 개종강요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기사 중에 포함된 '법원에서 진□□의 개종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부분에 의하여 이미 충분히 보도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시 반론보도청구로 동일한 사실을 주장을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중 "안증회측은 ... 혐의를 씌워"라는 부분에 관하여, 진□□을 고발한 사람은 신청인 등 개인 자격의 72인이지만 안증회가 아니며, 혐의를 씌우는 것도 수사기관이지 고발인이 아니므로, 위 기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비록 안증회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진□□을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72인의 고발인 중 대부분이 안증회 신도이고 대표 고발인은 안증회 소속 목사인 점, 위 고발은 안증회 신도인 신청인 등에 대한 개종강요 혐의에 대한 고발인 점, 고소(고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한 혐의로 고소(고발)한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고발 주체를 ‘안증회측’이라고 한 표현이나, ‘혐의를 씌워’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또한, 이 사건 기사에서 ‘고발’을 ‘고소’로 잘못 표현한 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신청인의 단순한 오기로 역시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위 부분에 대한 반론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 중 “가족들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신청인의 아버지인 진△△는 거짓 증언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기사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의 남편 송○○, 오○○의 남편 정△△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사 부분은 진□□이 같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송○○, 오○○과 관련하여 한 진술을 그대로 전제한 것에 불과하며, 진□□의 그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진□□의 개종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이 이 사건 기사에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는 이상, 비록 신청인의 아버지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이승한
판사 장일혁

〈별지 1〉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반론제도가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7. 11.자 판결 (2006나112566)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11월 23일 파기환송한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들에게 취소재판보도를 허용하면서 신청인 여○○은 피신청인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반론보도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며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판시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동아일보사등이 2001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을 내렸으나, 3심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9집 56~95면 참조, 2~3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4집 13~27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6나112566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항소인 : 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신청인, 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김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부사장 송 필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 광 명, 최 세 련, 이 춘 원, 김 형 근

제 1 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환 송 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7. 11.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 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 1.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1)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1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2)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1-2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1-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고,

다.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소을나 제4호증의 2, 소을나 제5호증의 2, 소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

(1) 일간 「동아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직 폭력배 출신 기업가’, ‘○○○○파 두목 출신’, ‘1992년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파를 이끌었다’고 소개하고, 신청인이 2000. 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면서 20억 원 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2000. 7.경에도 D증권사를 통해 ○○○전자와 ○○○

○○의 전환사채 3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10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청인을 통해 이용호의 정관계 배후 및 비호세력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가 약속어음 40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고,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이용호가 횡령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진정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2) 월간 신동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 「신동아」 2001년 11월호에서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 당시 조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 검찰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 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3) 중앙일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부터 2001.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중앙일보」에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 의혹을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을 ‘○○○○파의 배후’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폭력조직 ○○○○파 두목으로 구속기소되었었고, 오래전부터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두터운 인맥을 쌓아 온 이른바 ‘마당발’로서 이용호의 정·관계와 검찰 로비 창구 역할을 맡아왔으며, 이용호와 K상고 동창으로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 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홍○○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 의원이 신청인의 구속 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또 이용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300억 원대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 원은 신청인이 이용호를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나.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1-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02. 2. 1. 신청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별지 2-1, 2, 3의 각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 및 1일 3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2002. 2. 9. 「동아일보」 제4면에 별지 2-1 반론보도문을, 「신동아」 2002년 3월호 220면에 별지 2-2 반론보도문을,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2002. 2. 10. 「중앙일보」 제4면에 별지 2-3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였다.

2.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된 이 사건 각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명예와 신용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신청인으로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1-1, 2, 3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그에 해당하는 원보도가 없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당원의 판단

(1) 반론보도청구권은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2006. 2. 10. 선고 2002다

4904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다.

그러나 한편 언론기관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지는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반론보도문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언론기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위와 같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상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 나 제12호증의 1, 2, 3, 소을나 제13호증, 소을나 제14호증의 6, 7, 8, 13, 소을나 제15호증, 소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폭력조직인 광주 ○○○○파의 두목급 수괴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조직인 광주 ○○○○파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고문급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신청인은 “2000. 1.경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위 횡령 고소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0. 5.경 심○○의 고소 및 강○○의 진정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이용호에게 ‘20억 원을 주면 동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용호의 승낙을 얻은 다음, 이용호를 대리하여 심○○ 등과 화해 및 고소 취소 등을 알선한 결과, 심○○이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고소를 취소함과 아울러 강○○으로 하여금 진정을 취하하게 하자, 이용호에게, 이용호가 신청인에게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받아 이중 15억 원은 심○○, 강○○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사무마를 위한 청탁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며, 2억 원은 신청인이 위 약속어음 결제일 이전에 이

용호에게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할인 이자와 신청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이용호에게 미리 교부한 11억 원 및 앞으로 줄 돈 9억 원과 상계하겠다고 하여,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 8장 액면 합계 40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용호로부터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아 할인받은 합의금 명목의 15억 원 중 10억 원만을 심〇〇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신청인의 개인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0. 6. 중순경 이용호에게 사실은 강〇〇 등이 추가 합의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〇〇 등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용호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0. 7.경 이용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〇〇실업이 300억 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〇〇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의 주간사 역할을 맡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용호로부터 액면금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7. 25. 위 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사실, 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인 이〇〇는 2002.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2000. 6.경 신청인으로부터 주식회사 〇〇실업이 〇〇증권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령한 뒤, 〇〇증권 주식회사 사장인 박〇〇에게 주식회사 〇〇실업의 전환사채 발행건을 잘 추진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〇〇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12. 24. 상고가 기각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서 신청인이 2000. 1.경 자신으로부터 위 횡령 고소사건의 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대검찰청 직원인 이〇〇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91. 12.경 광주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검·경 인사 5명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한 명인 부장검사 1명은 그로 인하여 사직하였으며, 다른 한 명인 광주지방검찰청 사건과장 최〇〇는 1993. 5. 16. 신청인의 권유로 슬롯머신 업소에 투자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 1992년 당시 수사 검사였던 홍〇〇 전 한나라당 의원은 신청인에 대한 수사 당시, 전직 국회의원인 조〇〇를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하였고, 고위 검찰간부로부터 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당시의 신문기사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은 2000. 5.경 이용호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전 검찰총장인 김〇〇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 이용호는 검찰에

서 신청인이 평소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인적관리를 하는데, 주변에 힘쓰는 사람이 많다고 과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도내용, 즉 신청인이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서 이용호가 고소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40억 원,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0억 4,000만 원을 받았고, 이용호의 돈을 횡령하거나 이용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홍○○가 신청인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는 모두 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이나 기타 정·관계 등에 신청인의 불법이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호세력이 없거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관계 인사가 없었다는 취지 및 신청인이 이용호나 ○○○○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이는 또 신청인이 직접 관련되거나 신청인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밖에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 중 나머지 부분, 즉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당시 신청인을 면회하거나 신청인이 출소 후 만난 검찰간부가 없었다거나, 한○○, 권○○, 김○○ 의원 등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로 KAL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단, 피신청인 중앙일보사는 신청인이 이용호와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하였다가 2001. 9. 26. 중앙일보 제2면에 신청인은 ○○상고 출신이 아니라는 요지의 정정기사를 게재하였다) 지엽적인 것으로서 역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신청인에게 그 행사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의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들이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3의 가, 나, 다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그 광고료 상당액이 피신청인별로 각 1,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별지 1-1~2-3〉 반론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3〉 취소재판보도문

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4.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이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

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9.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신동아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년 11월호에 ‘주먹과 권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권력과 폭력조직의 관계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어 이들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당사는 본지 2002년 3월호에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 제 목 : 여○○ 씨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 내 용 : 본지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여○○ 씨가 조폭출신으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이용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에 여○○ 씨는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2. 2. 1. 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2. 2. 10. 판결대로 여○○ 씨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07. 7. 11. 위 사건에서 여○○ 씨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간부로 가담한 바 있고, 이용호로부터 로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로비를 하거나

그 중 상당부분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여○○ 씨가 구한 반론은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여○○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타 프로그램을 인용 방송했다 하더라도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인터뷰를 거절한 사실이 반론보도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6.자 판결 (2007카합1833)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26일 김○○ 외 1인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가처분소송에서 청구인의 반론을 방영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1998년 4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길 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김○○의 재산문제, 부정선거문제 등에 관하여 방송을 한 바 있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7년 3월 24일 MBC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에서의 재정 관련 의혹과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이 새로이 담임목사에 취임하고자 준비 중인 사례들을 소개한 후,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새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중소형교회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취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인터뷰는 피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 김○○가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더라도 과연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이 원하는 바와 같은 반론내용을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거나, 위 청구인이 그 행사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을 인용하면서 그 일부에서는 인용한다는 자막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인용방송이라는 표시를 하였다더라도 이 역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카합1833 반론보도가처분

청 구 인 : 1. 김 ○ ○

2. 기독교○○○○회 ○○교회

대표자 당회장 김 ○ ○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청 구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변 론 종 결 : 2007. 7. 12.

판 결 선 고 : 2007. 7. 26.

주 문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화면 상단에 “기독교 ○○○○회 ○○교회 김○○ 담임목사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1 반론보도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청구인 김○○에게 1일 일백만(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 김○○의 나머지 청구 및 청구인 기독교○○○○회 ○○교회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청구인 김○○와 피청구인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청구인이, 나머지는 피청구인이 각 부담하고, 청구인 기독교○○○○회 ○○교회와 피청구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피청구인은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뉴스 후’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기독교 ○○○○회 ○○교회 김○○ 담임목사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자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천천히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청구인이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청구인들에게 매주 각 1억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김○○는 1971년경 청구인 기독교○○○○회 ○○교회(이하 ‘청구인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그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5. 21:40부터 약 40분간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을 통하여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길 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김○○의 재산문제, 부정선거문제 등에 관하여 방송(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을 한 바 있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7. 3. 24. 22:50부터 약 50분간 위 텔레비전을 통하여 ‘뉴스 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에서의 재정 관련 의혹과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이 새로이 담임목사에 취임하고자 준비 중인 사례들을 소개한 후, 종전 담임목사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새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중소형교회들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 제1방송 중 청구인 김○○가 청구인 교회의 교인들에게 ‘(청구인 김○○가) 10억이 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2억 짜리 외제가구를 들여왔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 내가 줄게요, 누구든 찾아내요, 가져 가세요’라고 발언하는 부분을 인용·방영한 후, 청구인 김○○가 형사 재판과정에서 청구인 교회의 자금을 상당 부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 사건 제1방송 중 ‘청구인 김○○가 등기부상 대지 130평에 건평 100평의 시가 10억 원 상당의 목사관을 비롯해 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용·방영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 김○○의 부인 명의로 된 별장(강원도

인제읍 상동리 24-6 대 488㎡ 및 그 지상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별장’이라 한다)의 건축비 3억 원 및 위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매입한 토지(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69-8 잡종지 1,322㎡ 등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매대금 16억 원 중 8억 원은 청구인 교회의 자금으로 지불되었는데, 이 사건 별장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 신축과 토지의 등기가 마쳐지는 대로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이었다는 청구인 김○○의 해명을 소개하였다.

(2) 다음으로, 청구인 김○○가 청구인 교회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과정에서 청구인 김○○가 자신이 곧 교회이며 교인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2005도756호)에서는 청구인 김○○가 청구인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더라도 청구인 교회와 청구인 김○○는 별개이고, 청구인 김○○가 재정보고를 하면서 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범죄사실을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교단법에서는 일반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교단법정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 김○○에 대하여 중교법정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3) 또한 청구인 김○○가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 청구인의 아들 김△△ 목사가 청구인 교회의 주요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가 되는 것에 대하여 교회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는 청구인 교회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 김○○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수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 교회에서는 청구인 김○○의 일정이 바빠 면담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왔고, 위 청구인이 형사재판 진행 중이던 2005. 8.경 새로이 전원주택(○○시 ○○읍 ○○리 ○○○-○ 대 938㎡ 및 그 지상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을 구매하였으며, 취재진이 이 사건 전원주택을 찾아 갔으나 위 청구인을 면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이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은 청구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방송에서는 ① 청구인 김○○가 교인들에게 ‘(위 청구인이) 10억이 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2억 원짜리 외제가구를 들여 놔다는데, 누구든 찾아내요, 가져 가세요’ 라는 요지로 발언하는 것을 소개한 직후, 위 청구인이 교회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 위 청구인이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 위 청구인이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전 원주택을 구매하였다는 내용, ② 위 청구인이 위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의 각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의 방송방영으로 인하여 위 청구인은 인격권 내지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론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장하는 사실 중 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별지1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1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을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고(한편, 청구인 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해 줄 것을 구하나, 반론보도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제2방송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청구인이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일백만(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 김○○에게 인터뷰 등을 통한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위 청구인은 반론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별지1 반론보도문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제1방송의 인용이라고 자막표시하였으며, 위 반론보도문 제1항에 기재된 각 부동산이 여전히 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방송한 바 없음에도, 위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③ 별지1 반론보도문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라고 방영한 부분은 은유적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김○○ 목사는 교인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위 청구인의 반론내용을 이미 방영한 바 있어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먼저 피청구인이 취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인터뷰는 피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 김○○가 인터뷰 요청에 응하였더라도 과연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이 원하는 바와 같은 반론내용을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거나, 위 청구인이 그 행사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방송을 인용하면서 그 일부에서는 인용한다는 자막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점, 인용방송이라는 표시를 하였더라도 이 역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제2방송에 별지1 반론보도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 여전히 청구인 김○○ 또는 그 친인척의 명의로 남아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2방송에서 제1방송의 인용방영 직후에 위 청구인이 횡령 혐의로 처벌받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부분을 방영하고, 이 사건 전원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교회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이 한창 중’일 때 이를 구매하였다는 멘트를 앞서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전원주택을 비롯한 별지1 반론보도문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별지1 반론보도문 제1항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이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③ 그 밖에 통상적인 종교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곧 교회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청구인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그 표현상의 차이에 비추어 ‘김○○ 목사는 교인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이 사건 제2방송에서 함께 방영되었다고 하여 위 청구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에게 별지2 반론보도청구권 제2항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다만, 청구인 김○○는 별지1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어서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의, 청구인 교회는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의 각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①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 제1번 항목(이하에서는 순번만 언급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제

2방송에서는 청구인 교회의 전 장로인 유○○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방송으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반론을 요구하는 1998. 9. 17.자 합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적 주장이 방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제2번 항목 중 이 사건 별장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과 제3, 4번 항목의 경우 청구인들은, ㉠ 청구인 김○○가 이 사건 별장을 처음부터 청구인 교회에 기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 청구인 교회가 성장과 더불어 개척교회의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김△△ 목사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나, 청구인 김○○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노3175호) 판결에서는, 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을 배척하고,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별장의 부지를 매입할 당시 청구인 교회에 기증하기로 한 바 없이 자신의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교회의 현금으로 이를 매입하였으며 그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김○○라는 사실, 청구인 김○○는 은퇴 후 청구인 교회와는 독립한 개척교회를 지어 김△△ 목사님과 함께 목회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청구인 김○○는 청구인 교회가 아닌 김△△ 목사의 소유로 할 의사로 김△△를 매수 명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사실 등을 확정된 후 이에 기하여 청구인 김○○가 이 사건 별장과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대로 확정된 이상,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적어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내용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위와 같은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부분만을 반론보도를 통해 방송한다면, 이는 이 사건 제2방송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거나 해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청구인 김○○가 정당한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수도 있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제5번 항목 중 '김○○ 목사는 재판 진행과정 중 ○○교회의 정관 등 규약에 따라 기획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사전 혹은 사후 동의절차를 거쳐 교회공금을 사용하였고, 이는 교인들의 총의에도 부합하므로 무죄라는 주장을 하였다' 라는 취지의 부분은 이 사건 제2방송에서 '김○○ 목사는 교인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는 내용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방송됨으로써 별도로 반론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제6번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제2방송에서 ‘종교법정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방영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로 보이나, 이 사건 제2방송의 위 표현은 피청구인의 논평 내지 의견에 해당할 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제7번 항목 과 제8번 항목 중 ‘○○교회나 김○○ 목사는 문화방송으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에서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는 부분의 경우, 김△△ 목사가 향후 청구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및 취재진이 청구인 교회를 통하여 청구인 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제2방송의 핵심요지로 보이는데, 제7번 항목의 경우 이 사건 제2방송의 방영내용과 반론보도 요구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이 사건 제2방송에서도 청구인 교회의 현재 신도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 김○○가 ‘예배시간’에는 후임 담임목사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으며 김△△ 목사는 ‘부담임목사’일 뿐 정식으로 ‘담임목사’가 된 바 없음에도 위 목사의 출연 장면에서 ‘담임목사’라는 자막이 표시되었다거나, 제8번 항목 중 ‘이 사건 전원주택’에서는 취재요청을 받은바 없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본질적 핵심내용에서 벗어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⑥ 또한 앞서 인용한 별지1 반론보도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은 주로 청구인 김○○ 개인에 대한 의혹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 교회는 청구인 김○○가 대표자로 있는 종교단체나 교회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익의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교회로서는 별지1 반론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김○○가 별지1 반론보도문의 범위를 넘어서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을, 청구인 교회는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과 같은 내용을 각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하여 구하는 것은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반론보도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및 청구인 교회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현
판사 강경표
판사 김지영

〈별지 1〉 반론보도문

문화방송은 2007년 3월 24일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회 ○○○교회 담임목사인 김○○의 재산관련 의혹, 담임목사 세습 문제 등에 관하여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1. 문화방송은 위 2007. 3. 24.자 방송에서 1998. 4. 5.자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방송내용 중 김○○ 목사가 ‘10억이 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2억 짜리 외제가구를 들여왔다’ 그러는데, 여러 분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 내가 줄게요, 누구든 찾아내요, 가져가세요’ 라고 발언하는 부분 및 김○○ 목사가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방영하였고, 또한 김○○ 목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던 2005. 8.경 남양주시의 전원주택을 새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는, 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지목된 서울 중랑구 망우동 182-51 소재 목사관을 비롯하여 서울 ○○구 ○○동 184-1 ○○○○○○ ○○○호, 서울 ○○구 ○○동 ○○○-○ 연립주택 1동 ○○○호, 같은 동 ○○○-○○ ○○아파트 ○○동 ○○○호, 같은 동 ○○○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는 1998.경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남양주시 전원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교회의 돈이 아니라 김○○ 목사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교회의 수련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4.경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또한 김○○ 목사의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 101동 204호에 관하여도 2006. 2.에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김○○ 목사 명의로 된 ○○○교회 재산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또한 10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억 원 상당의 외제가구를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문화방송은 위 2007. 3. 24.자 방송에서 김○○ 목사가 관련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였다고 방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목사는 관련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곧 교회라고 주장하거나 신격화된 사람인 양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김○○ 목사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끝.

□

II. 정정보도청구사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자 (2004가합12371)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5일 이○○이 주식 회사 에스비에스와 소속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와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쌍방은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위 청구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중재신청사건을 피고 회사와의 화해로 종결시킨 이후 이와 별도로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다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정간법에 기한 중재합의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가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의 행태와 그 검거과정 및 그 조직의 알선에 따라 일본으로 간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수집하여 그 실태를 알림으로써 향후 그와 같은 피해 여성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해외 불법취업 조직의 알선으로 일본으로 간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보도하면서 일본에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해 여성들의 금원을 갈취하고 폭행을 했다고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4년 6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4서울중재278)을 하여 중재결과 반론보도로 합의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12371 정정보도등

원 고 : 이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면 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 기 복

피 고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820

대표이사 송 도 균

2. 윤 □ □

서울 양천구 목동 82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박 영 주, 이 민 서

변 론 종 결 : 2007. 6. 14.

판 결 선 고 : 2007. 7. 5.

주 문 :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제목보다 큰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일본으로 간 여인들 - 해

외불법송출의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을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12호증, 갑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 을 8호증, 을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 을 18호증, 을 36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4(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일부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및 피고 윤□□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7호증의 1 내지 9,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4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본 ○○○현 ○○○시에서 ‘○○ 에스떼’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업을 실질적으로 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며, 피고 윤□□은 2004. 5. 22. 23:05경부터 24:00경까지 방영된 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나. 정△△의 이 사건 업소에의 취업과 그 곳에서의 생활

1) 정△△(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김미영’으로 불리운 자이다)는 2003. 8. 12. 이혼을 한 후, 식당 등에서 일을 하던 중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3. 11. 25.경 해외 취업 알선 광고를 보고 서울 ○○구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찾아 갔고, 위 직업소개소의 소장인 김○○으로부터 소위 일본의 ‘에스떼’라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업체에의 취업을 권유 받았다.

2) 정△△는 2003. 12. 2.경 다시 위 직업소개소를 방문하여 원고를 만나 이 사건 업소에의 취업과 관련한 면접을 보고, 정△△가 이 사건 업소에서 올리는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하여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로 원고와 확정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선불금으로 400만 원

을 받아 김○○에게 취업 알선과 관련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정△△는 2003. 12. 12. 일본의 이 사건 업소로 갔고, 그 무렵부터 2004. 5. 2.까지 이 사건 업소 내에 구분되어 있는 약 10㎡ 남짓한 마사지실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시간(1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에는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마사지일을 하였으며, 2004. 1. 12.부터는 출장 마사지업체인 ‘△△△’의 종업원으로서 출장 마사지를 가서 성매매도 함께 하였다.

4) 정△△는 이 사건 업소에서 2달 넘게 일을 하면서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원고는 정△△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서 정△△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원고로부터 가불을 받은 금원 및 숙박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매달 청구하는 금원을 공제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정△△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에 정△△는 2004. 3. 5. 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업소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되자 2004. 3. 7. 정△△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하였으며, 정△△의 여권을 빼앗아 복사를 하여 정△△의 한국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정△△를 지명하여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자, 2004. 4. 12. 정△△에게 마사지일을 다시 배우라고 하였고, 정△△가 도저히 못하겠다고면서 한국에 가고 싶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업소로 옮겨 달라고 하자, “누가 너를 데리고 가겠냐. 네가 갈 곳은 (야쿠자) ○○○한테 말해서 15년 동안 빼도 박도 못하고 몸만 팔아야 하는 그런 데다.”라고 욕설을 하며 정△△를 구타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신뢰하는 박△△, 박○○ 등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정△△에게 마사지일을 가르치도록 시키면서 정△△가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때려도 좋다고 하였고, 정△△는 그 무렵부터 원고뿐 아니라 다른 종업원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으며, 원고의 눈치가 보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소 밖으로 나갈 때에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나갈 수 있었다(원고가 없을 경우에는 원고가 신뢰하는 종업원인 박○○ 또는 야쿠자로 보이는 ○○○라는 일본 남자 등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였다).

7) 가) 정△△는 원고 및 종업원들의 구타, 마사지일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원고에 대한 빚을 갚고 위 업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5. 2. 정△△의 어머니로부터 정△△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 윤□□ 등의 도움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을 나왔다.

나) 정△△는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을 나올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였으나, 당초 원고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기는 커녕 원고에 대한 채무가 5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및 방송경위

1) 피고 윤□□은 2004. 4. 말경 서울시경찰청에서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에 관하여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법취업알선 조직의 행태와 그 검거과정 및 위 조직의 알선에 따라 일본으로 나간 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그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아니하도록 범죄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2) 피고 윤□□은 서울시경찰청 김○○ 형사로부터 불법취업알선자를 통하여 일본으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갔다가 15일만에 도망나온 김○○를 소개받아 김○○의 진술을 확인하고 일본 현지의 취업 실태 등을 취재하기 위하여 2004. 4. 28. 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조연출 및 촬영담당인 김○○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3) 피고 윤□□은 일본 현지 안내자인 박□□(이하 피고 윤□□, 김○○, 촬영관계자, 박□□를 '피고 윤□□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04. 4. 29.부터 일본 현지 촬영을 시작하였고, 첫 날은 김○○가 탈출한 업소가 있는 가와사키 지역의 유흥가를 취재하러 갔는데, 야쿠자로 추정되는 사람 2~3명이 위 취재를 제지하여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었다.

4) 피고 윤□□ 등은 2004. 4. 30. 한국에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가로부터 일본 ○○○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한국인 여성(정△△)가 구타와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시민단체에 와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일본의 시민단체인 '소셜 마이너리티' 상담소의 ○○○○○ 등을 만나 정△△에 대한 구조 문제를 상담하였으나, 일본 상담자로부터 대부분의 여성들이 불법체류신분이고, 그러한 업소들은 보통 야쿠자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취재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합법적인 구조도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5) 가) 피고 윤□□ 등은 2004. 5. 1. 일본 ○○○시로 가서 이 사건 업소의 주위에서 그 업소를 관찰하면서 위 업소에 정△△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고, 피고 윤□□과 박□□가 이 사건 업소의 아래에 있는 다른 에스페 업소를 먼저 방문하여 에스페 업소의 영업 형태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다.

나) 피고 윤□□과 박□□는 2004. 5. 2. 00:00경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박□□는 정△△를 지명하여 정△△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 윤□□은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는 이 사건 업소의 각 마사지실의

벽이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말소리가 새어나갈 것을 염려하여 정△△와 필담을 나누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을 가고 싶은지를 물었고, 정△△는 박□□에게 '정말 가고 싶은 한테 여기 마마 술집 등의 여주인을 의미하는 일본어가 야쿠자를 끼고 하고 자기 돈 떼어 먹으면, 한국에도 아는 깡패가 많다고 했고 만일 돈을 안 갖고 제가 도망갈 시에는 인터넷에다가 제 사진 다 올리고 민·형사상 재판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돈을 번다 하더라도 제 돈이 아니고 전부 마마가 관리하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적응을 못해서 많이 맞기도 맞았어요, 처음 오는 날부터 마마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순간까지도 나를 미워하다가 자꾸 어린 애들한테도 일 못하니까 때리라고 시키고 욕하고 그렇다고 시메가 없는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지금은 애들한테도 제가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못 만난다면 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환(야쿠자)은 어떻게 해요? 가족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오늘 이따가는 제가 아예 도망가는거죠?' 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박□□는 정△△가 업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었고, 정△△는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업소 근처의 편의점 앞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6) 정△△는 2004. 5. 2. 새벽 3시가 넘자 담배를 사러 다녀오겠다며 이 사건 업소를 나와 미리 약속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 윤□□ 등을 만나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나왔고, 도망가는 차 안에서 피고 윤□□ 등과 이 사건 업소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7) 피고 윤□□은 일본 시민단체에 정△△의 보호를 요청하고 정△△와 일본 시민단체의 상담 과정을 취재한 다음 정△△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일본 현지에서의 취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2004. 5. 4. 한국으로 돌아왔다.

8) 그 후 피고 윤□□은 정△△의 취업을 알선하여 준 김○○의 직업소개소를 취재하고, 일본 에스페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2~3명을 인터뷰하여 에스페는 구강 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이고, 일본의 업소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을 갚을 계획으로 선불금을 받고 일본에 오더라도 생활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많아 구조적으로 돈을 갚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에 의하여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이 체포되는 과정을 취재하였다.

9) 피고 윤□□은 위와 같이 취재한 것을 기초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4. 5. 22. 23:05경부터 24:00경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와 관

련있는 내용은 별지 2 보도내용의 기재와 같다.

1) 도입부분 : 지난 5월 초 한 어머니가 일본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딸이 구타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니 도와 달라며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 시민단체로 찾아 왔다. 그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니 그 곳에는 3층 건물 모두 남성 전용 마사지실인 일명 에스페가 영업 중이었다(이 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의 일본어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 등이 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송되었다). 제작진은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가서 김미영(정△△의 방송상 가명)을 만나 탈출의사를 확인하였고, 새벽 3시가 조금 지날 무렵 도망나온 김미영을 데리고 나왔다.

2) 김미영과의 인터뷰 부분 : 이 사건 업소는 마사지실이라고 했지만, 전화 성매매업까지 하고 있었고, 김미영은 그 업소에 온 첫날부터 기가 죽어 일도 서툴렀는데, 그 때부터 구타가 시작되어 주먹으로도 맞고 물건으로도 맞았다. 업주의 눈치가 보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지만, 마사지일과 전화 성매매까지 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마사지실 안에서 숙식을 다 하지만 손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달 동안 600만 원을 벌었지만 선불금도 다 갚지 못하였고, 두 달 동안은 마마의 돈이 된다.

3) 일본 동경 신주쿠의 유흥가 촬영 및 직업소개소 촬영 부분 : 신주쿠의 유흥가에는 한국인 종업원이 많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일본으로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미영이 소개를 받아 왔다는 한국의 직업소개소를 찾아 갔다. 직업소개소 직원은 일본에 쉽게 갈 수 있고, 25일만 일을 해도 5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소개한다.

4) 일본 업소 탈출자의 인터뷰 및 경찰의 불법취업알선 조직 단속 촬영 부분 : 안영옥(가명)은 한달에 600만 원을 보장하고 성매매는 없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갔으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여 도망을 나왔다. 경찰은 안영옥의 일본 취업을 알선한 불법조직 일당을 국외이송 목적 부녀자 유인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이들은 여성들을 일본에 취업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일인당 수백만 원어치의 옷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5) 일본에 취업한 여성들의 생활 실태 부분 : 일본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업소의 방침에 따라 옷을 사거나 미장원을 가야하고, 숙소비, 지각에 따른 벌금 등 돈이 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생각처럼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고, 더 이상 업주에게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는 사실상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다. 선불금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여성들을 술집에 묶어 두고 부적절한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

6) 일본의 술집과 야쿠자의 관계 부분 : 지난 해 8월 유선미(가명)는 일본 업소에서 도

망을 나와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한 달 뒤 야쿠자가 한국으로 유선미를 찾아와 선불금을 갚으라고 위협을 하였다. 업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만 둔다고 하면 섬으로 팔아버린 다거나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한다.

7) 끝부분 :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인권 착취와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고, 성을 산업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뒷에 걸린 모든 여성은 피해자이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후의 정황

1) 원고는 2004. 6.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① 정△△가 이 사건 업소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 ② 정△△가 감금된 상태에서 감시당하고 밥도 못먹었다는 부분, ③ 정△△가 구타당했다는 부분, ④ 정△△가 일을 하여 번 돈을 원고가 갈취하고 있다는 부분, ⑤ 정△△가 매춘을 강요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4. 6. 28.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피고 회사가 2004. 7. 3.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별지 3 중재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여 그러한 내용의 중재조서가 작성되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중재합의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주지시켰다.

3) 피고 회사는 2004. 7. 3.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끝부분에서 별지 3 중재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하였다.

2.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본안전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① 정△△가 돈을 벌려고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일본에 왔고, ② 일본에 온 첫날부터 일이 서투르다고 원고와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③ 정△△가 감금된 상태에서 감시당하며 일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있고, ④ 일을 하여 번 돈을 착취당하였으며, ⑤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방송한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된 것, 위 법은 2005. 1. 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7369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은 언론 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2.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와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쌍방은 피고 회사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중재신청사건을 피고 회사와의 화해로 종결시킨 이후 이와 별도로 동일한 청구원인을 이유로 다시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할 것을 전제로 위 중재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가 요청하는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포기하는 취지로 피고 회사와 중재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정간법에 기한 중재합의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윤○○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윤○○에 대하여도 피고 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그러한 보도를 정정하는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건대, 정정보도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출판물 등의 발행인, 방송사업자, 인터넷 신문 운영자 등이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 윤○○은 프로듀서로서 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에 지나지 아니하여 방송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의 위치 및 외관, 일본어로 상호가 기재된 이 사건 업소의 간판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원고를 이 사건 업소의 ‘마마’로 칭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정△△를 구타한 사람이 원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그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그 방송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원고의 업소에 취업을 한 정△△를 구타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면서 정△△가 성매매를 포함하는 일을 하여 번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를 섬으로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정△△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순간적으로 그냥 일본으로 왔다’라는 부분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정△△가 이 사건 업소에 취업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쉽게 취업결정을 하였다는 위 방송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피고 윤□□ 및 피고 윤□□의 사용자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2) 공공성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방송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 불법취업알선 조직의 행태와 그 검거과정 및 그 조직의 알선에 따라 일본으로 간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수집하여 그 실태를 알림으로써 향후 그와 같은 피해 여성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정△△는 이 사건 업소 내의 마사지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후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마사지 일을 하였고, △△△라는 상호로 원고가 운영하는 출장 마사지업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하기도 한 사실, 정△△가 이 사건 업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정△△를 찾는 손님도 많지 아니하자, 원고는 정△△를 탓하면서 구타를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섬으로 팔아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정△△에게 마사지 일을 가르치도록 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정△△를 때려도 좋다고 하여 위 종업원들도 정△△를 구타한 사실, 원고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정△△는 원고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에 업소 내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정△△는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숙박비, 식비 등을 비롯한 생활비가 많이 들어 선불금 400만 원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 나올 당시에는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프로그램 중 별지 2 보도내용 중 ②부분의 방송내용은 정△△가 마사지일이 서툴러서 제대로 하지 못하자 그때부터 원고가 정△△를 구타하였다는 취지 또는 정△△가 이 사건 업소에 온 첫날부터 원고가 정△△를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각 이해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원고가 정△△를 정△△가 이 사건 업소에 온 첫날부터 구타한 것은 아닌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일반 시청자가 위 방송내용을 위 두 번째의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를 구타하였다는 전체적인 방송내용의 취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것이고, 다만 구타의 기간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방송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별지 2 보도내용 중 ①, ③부분의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방송부분은 원고가 정△△를 감금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①, ③부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정△△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경 민

판사 김 은 정

판사 정 경 희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3〉 중재합의서 생략 - 편집자 주

□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19.자 판결 (2006나106066)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19일 국회의원 임종인의원이 주식회사 와이티엔과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피고 와이티엔이 「뉴스Q 2부」 ‘돌발영상’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방송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동료의원들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원고 몰래 촬영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한 널리 허용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원고는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 중 원고가 등장하는 제3장면은 원고가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공적 영역

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대화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1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 14집 58~64면 참조).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6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253)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을 내린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나106066 정정보도등

원 고, 항 소 인 : 임 중 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3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와이티엔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대표이사 표 완 수

2. 디지털와이티엔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젤존타워

대표이사 김 도 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7. 11.

판 결 선 고 : 2007. 9. 19.

주 문 :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방송하는 뉴스Q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3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tn.co.kr)의 초기화면에 별지3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하라. 만약 피고들이 위 정정보도문의 방송 및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들은 각자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각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1일 3,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수정하고, 간접강제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 방송하는 뉴스Q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tn.co.kr)의 초기화면에 별지2 정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하라.

이 유 : 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간접강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간접강제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별지 1~3〉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개인이 속한 단체가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자 판결 (2006가합110655)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자 판결 (2006가합110662)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10일 대통령 비서실이 주식회사 문화일보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각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문화일보는 2006년 10월 27일 31면에 「노정권 ‘친북기조’와 ‘386 간첩단’」 제하의 사설을, 2006년 10월 30일 1면에 「대북 포용론자와 갈등 ‘폭발’」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4면에 「해실험 후 청·통일부-국정원 충돌」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2007 대선까지 붉게 물들이려 한 ‘386 간첩단’」 제하의 사설을, 2006년 10월 31일 7면에 「김승규 원장측 “타의에 의한 사퇴”」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386 간첩단 수사하는 ‘김승규 국정원’ 흔들지 마라」 제하의 사설을 각 게재하였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6년 10월 28일 A3면에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력」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A5면에 「‘간첩단’ 발표 바로 다음날, 왜 김원장이 사의를…」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A35면에 「‘386 간첩단’ 수사 도중 물러나는 국정원장」 제하의 사설을, 2006년 10월 30일 A3면에 「국정원 내부갈등 불거지나」 제하의 기사를, 같은 날 A4면에 「“압력설 맞다” vs. “아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국정원장 사임 압력설」 제하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대통령 비서실)는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여권 386 세대들’, ‘여권 내 386 인사’, ‘정치권 386 인사’, ‘386 출신 권력 핵심’ 이라는 표현들을 들어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보도가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바,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10655 정정보도청구

원 고 : 대통령 비서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대표자 비서실장 이 병 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피 고 : 주식회사 문화일보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68

대표이사 이 병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인 제, 하 죽 봉, 박 춘 희

변 론 종 결 : 2007. 9. 12.

판 결 선 고 : 2007. 10. 1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문화일보 제1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내용은 다른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위 법령에는 원고의 총 정원이 53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문화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06. 10. 27. 31면에 별지2 기재 사설을, 2006. 10. 30. 1면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같은 날 4면에 별지4 기재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별지5 기재 사설을, 2006. 10. 31. 7면에 별지6 기재 기사를, 같은 날 31면에 별지7 기재 사설(위 기사 및 사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을 문화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386 간첩단사건'의 피의자들이 청와대 386 비서진들과 수시로 교유해왔으며, 청와대 386 비서진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설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언론중재법의 규정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개별적 연관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조직체계 및 그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위 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정정보도의 소를 제기할 능력이 있음에는 별 다른 의문이 없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개별적 연관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¹⁾ 핵심들’, ‘여권 386 세대들’, ‘여권 내 386 인사’, ‘정치권 386 인사’, ‘386 출신 권력 핵심’이라는 표현들을 들어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보도가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바,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노정권의 386 핵심들’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말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말한다. 주로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를 통칭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이 중 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7〉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110662 정정보도청구
원 고 : 대통령 비서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대표자 비서실장 이 병 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인 제

변 론 종 결 : 2007. 9. 12.

판 결 선 고 : 2007. 10. 1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 선일보 A1면 오른쪽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그 제목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내용은 다른

본문활자 크기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통령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해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위 법령에는 원고의 총 정원이 53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이고, 피고는 일간신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06. 10. 28. A3면에 별지2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5면에 별지3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35면에 별지4 기재 사실을, 2006. 10. 30. A3면에 별지5 기재 기사를, 같은 날 A4면에 별지6, 7 기재 기사(위 기사 및 사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조선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서 '386 간첩단사건'의 피의자들이 청와대 386 비서진들과 수시로 교류해왔으며, 청와대 386 비서진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보도를 정정하는 내용의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설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언론중재법의 규정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개별적 연관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조직체계 및 그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위 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정정보도의 소를 제기할 능력이 있음에는 별 다른 의문이 없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지(개별적 연관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정치권의 386²⁾들’, ‘청와대의 386 비서진’, ‘청와대 386 인맥’, ‘여권내 386 세력’이라는 표현들을 들어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 어떤 보도에서 지칭된 개인과 그가 속한 단체 또는 기관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단체에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개인에 대한 보도가 그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하여 개별적 연관성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데,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사용된 ‘청와대 386 비서진’ 등의 표현에 의하여 지칭되는 특정인들이 원고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별지7 기재 기사의 경우에 그 일부 내용과 원고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보도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사 내용 중에서 정정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않은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2)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말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말한다. 주로 1980년대에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를 통칭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7〉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자 판결 (2006가합98182)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7일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피고 조선일보는 2006년 8월 14일 「또 가짜 명품시계?」 제하의 기사를, 같은 달 16일 「스위스 ‘한국 명품시계’ 진상조사 착수」, 「스위스 시계만 수백종 ... 전문가도 다 몰라」 제하의 기사를, 같은 달 17일 「환불 ... 신흥브랜드 입점 까다롭게」 제하의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원고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시계가 그 가격에 맞는 내실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고 한 부분은 비록 피고 조선일보가 각 기사에서 이 사건 시계를 지칭함에 있어 '가짜 명품시계' 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소위 명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특정상품의 명품여부에 관해 각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가 다른 사실의 적시 없이 바로 이 사건 시계를 가짜 명품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이 지칭한 점, 따라서 그와 같이 지칭한 근거가 된 사실의 적시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 라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서 이 부분이 따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8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329)을 하여 조정결과 조정불성립결정을 받은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98182 정정보도등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변 론 종 결 : 2007. 10. 10.

판 결 선 고 : 2007. 11. 7.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가 발행하는 조선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부에 제목은 조선일보 2006. 8. 16.자 A9면 상단 '명품시계' 관련 기사 제목의 활자 크기로, 본문은 같은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

보도요구문을 게재하라. 피고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그 위반일부터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는 조선일보에 원고가 수입, 판매한 'OOOOO(OOOOO)' 라는 상호의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별지2 기재 기사를, 같은 달 16. 별지3, 4 기재 각 기사를, 같은 달 17. 별지5 기재 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인정사실 :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기사를 통해 원고가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민법 제764조에 규정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위 2006. 8. 14.자 별지2 기재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

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위 민법 규정에 따른 정정보도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와는 달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모두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전제로 비로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한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

(3)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4)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위 각 기사에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및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위 각 기사의 구성 및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1) 먼저, 위 각 기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여 보면, 위 각 기사는, “이 사건 시계의 수입, 판매사인 원고의 광고와는 달리, 이 사건 시계가 18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OOOO OOOO’라는 인물도 이 사건 시계의 제조사인 OOOOO사(이하 이 사건 제조사라 한다)의 창업주가 아니며, 이 사건 제조사의 본사와 공장도 제네바가 아닌 끼아소에 있고, 이 사건 시계가 일본, 미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시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스위스 시계협회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국내 판매업체들은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시계가 소위 명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짜 명품시계이다”라는 부분(이하 ㉡ 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먼저, 편의상 ㉡ 부분에 관하여 살펴건대, 비록 피고가 위 각 기사에서 이 사건 시계를 지칭함에 있어 ‘가짜 명품시계’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

으나, 소위 명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특정상품의 명품여부에 관해 각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가 다른 사실의 적시 없이 바로 이 사건 시계를 가짜 명품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㉔ 부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이 지칭한 점, 따라서 그와 같이 지칭한 근거가 된 사실의 적시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기사 중 ㉔ 부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으로서 이 부분이 따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부분은, “원고의 광고와는 달리, 이 사건 시계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창업자 및 제조사의 정체, 판매실적 등도 의심스러우며 스위스 시계협회가 이 사건 시계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백화점들과 홈쇼핑 업체에서 환불조치도 해주고 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시계를 수입, 판매한 원고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다.

다. 위법성 조각여부

(1) 공익성 여부

위 각 기사는 소비자들에 의해 엄청난 고가에 판매되고 있던 이 사건 시계가 그 가격에 걸맞는 명성과 내실을 지니고 있는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은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시계에 관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180년 숨결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 ○○○○ ○○○○는 해외파 유학생들과 해외 출장이 잦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명품 주얼리 시계 브랜드로, 유럽의 감각 있는 트렌드 세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다.

○○○○○는 3대에 걸쳐 시계와 주얼리를 만드는 이태리의 전통적인 기업으로, 창립자인 ○○○○ ○○○○(○○○○)가 젊은 시절 시계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모나코와 자신의 시계에 대한 열정을 본 주변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붙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의 1대이

자 창립자인 ○○○○ ○○○○는 1822년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시계를 만드는 것에 소질을 보였던 그는 정밀하고 세련된 시계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는 아버지의 지원과 격려로 고향 근처의 작은 시계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스위스와 프랑스 그리고 모나코에서 유명한 시계 제조업자 아래에서 공부하게 된 ○○○○는 이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 ○○○’라는 별칭으로 불리어진다. 바로 그 이름이 오늘날 브랜드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저 유럽에 걸쳐 고급시계 업계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달성하는 자’로 명성을 얻게 된다. 현재 ○○○○사는 3대에 걸쳐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 열정과 장인정신, 기술력은 과거의 업적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후손들과 ○○○○○사에 의해 지금도 계승 및 발전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조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 ○○○(○○○)는 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 ○○○○는 자신의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째 계속하여 귀금속 제조에 종사해 왔으나, 실제로 시계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경부터였다.

- ○○○ ○○○○는 2002년경 최초로 시계제조업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매제인 ‘○○○○ ○○○○’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계기술자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점에 착안하여 그의 장인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시계에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 이 사건 제조사는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아레조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다가 2003년 말경 본사 및 공장을 스위스의 끼아소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시계상표에 있어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는 제네바 상표(Geneva Seal)를 표기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제네바 지역에 법인등기를 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시계가 미국, 일본 등지에도 딜러들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가장 주요한 수출지역은 중동이다.

- 2007년 6월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조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8명이다.

③ 위 각 기사의 취재 및 기사 작성에 관여한 피고 소속 기자 김○○은 취재과정에서 스위스 시계협회 회장인 ○○○○ ○○○(○○○○)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시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가 스위스 시계 협회의 진상조사 방침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날인 2006. 8. 16. 연합뉴스에서도 제네바 특파원의

취재를 통해 이와 동일한 취지의 스위스 시계협회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다.

④ 흡소영업체인 현대흡소핑은 이 사건 시계와 관련하여 위 2006. 8. 14.자 기사가 보도된 이후 같은 해 8. 16.부터 8.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계를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전화하여 허위, 과장광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품조치를 해주었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07. 4. 6.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기사의 ㉠ 부분 중 “이 사건 시계의 수입, 판매사인 원고의 광고와는 달리, 이 사건 시계가 18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 ○○○○’라는 인물도 이 사건 제조사의 창업주가 아니며, 이 사건 제조사의 본사와 공장도 제네바가 아닌 끼아소에 있고, 이 사건 시계가 일본, 미국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시계에 관한 첫 보도가 있는 후 국내 판매업체들은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중 “이 사건 시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스위스 시계협회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는 부분은 위 인정사실 만으로 그것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나 위 취재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입장에서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기사를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구할 수도 없다(게다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시계가 스위스에서 생산된 시계로서 중동 및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는 것인데, 피고는 위 각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시계가 스위스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지 않았고 중동 및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이 중 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5〉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피고 언론사가 원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보도를 해주었으나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7.자 판결 (2007가합33984)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7일 건설교통부가 주식회사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동아일보는 2007년 2월 15일 “건교부 장관 지나친 ‘고향챙기기’ 뒷말”이라는 제목하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스타일로 뒷말이 무성하다고 보도하였다. 피고는 원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07년 3월 2일 “건교부 ‘동향 인사 챙기기’ 지적 해명 부심”이라는 제목하에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7. 3. 2.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는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반응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07. 3. 2.자 기사를 보더라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3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78)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증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33984 정정보도청구등

원 고 : 건설교통부

대표자 장관 이 용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창

담당변호사 이 연 주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 론 종 결 : 2007. 10. 17.

판 결 선 고 : 2007. 11. 7.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B3면 기사 게재부분에 상자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 부분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B3면 기사 게재부분에 상자기사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 부분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15. 동아일보 B3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제 목 : 건교부 장관 지나친 ‘고향 챙기기’ 뒷말

- 내 용 :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스타일로 뒷말이 무성, 전남 함평 출신인 이 장관은 취임 후 차관은 물론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등 건교부 3대 핵심 본부장 자리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또 장관비서관에는 대학(전남대) 후배가 임명됐고 조직을 감시하는 감사관 자리 역시 호남 출신이 차지. 이 장관의 인사스타일은 2003년 국제청장 재임 때도 구설수에 올랐는데 상당수 건교부 공무원은 “과거 어떤 장관도 이 정도로 내놓고 편중인사는 안 했다”며 “이 장관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고 일침.

나. 그러나, 이용섭은 2006. 12. 11. 원고 소속 장관으로 임명된 반면, 같은 소속 차관인 이 OO는 그 이전인 2006. 11. 28.에, 감사관은 2006. 6.에 각 임명되었다. 다만, 이용섭 장관은 취임 이후 위 기사에 언급된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좌관을 호남 출신 인사들로 임명하였다.

다. 위 보도 후 피고는 2007. 3. 2. 같은 신문 같은 면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 제 목 : 건교부 ‘동향 인사 챙기기’ 지적 해명 부심

- 내 용 : 건설교통부는 이용섭 장관의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 스타일(본보 2월 15일자 B3면 참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자 곤혹스러워 하면서 해명에 부심. 건교부측은 “일부 고위 간부들이 이 장관과 같은 호남출신인 것은 맞지만 차관과 감사관은 이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임명됐다”며 “이 장관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 건교부 공무원들은 이 장관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조직관리에서 앞으로 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기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차관 및 감사관은 이용섭 장관의 취임 이전에 이미 임명되었고,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비서관은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로서 연고에 따른 특혜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그 소속 장관의 고향을 챙기기 위해 편중인사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의 구성 및 성격

먼저, 이 사건 기사를 분석해 보면, 이는 크게 '원고 소속 이용섭 장관이 취임 후 차관, 감사관,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비서관을 호남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다'는 부분과 "원고 소속 장관이 지나치게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각 부분의 성격을 살펴보면, 앞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뒷부분은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소속 장관이 지나치게 연고 위주의 편중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이상 위 의견이 위 사실 이외에 또다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서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사실적 주장의 진실성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2) 차관, 감사관 임명에 관한 부분

위 사실적 주장 중 이용섭 장관이 취임 후 원고 소속 차관과 감사관을 임명하였다는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부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적 주장 중 이용섭 장관이 취임 이후에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좌관을 호남 출신 인사들로 임명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앞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이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이 아니므로 위 본부장들을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으로 지칭한 부분도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본부장을 3대 핵심 본부장으로 볼 것인지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내부에서 직무의 중요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각 직위에 '가'에서 '마'까지의 등급을 부여한 결과에 따르면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은 가등급, 주거복지본부장은 다등급에 각 해당하므로 위 각 직위를 원고의 3대 핵심 본부장이라고 지칭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소속 장관인 이용섭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행정부처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인 행위로서 이를 단지 장관 개인의 문제로 보아 해당 행정부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어떤 행정부처의 고위직에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행정부처의 정책수행 신뢰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부처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7. 3. 2. 원고의 반론을 포함한 해명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

도와 반론보도는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반응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07. 3. 2.자 기사를 보더라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통해 정정보도에 준하는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B3면 기사 게재부분에 상자 기사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본문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내용 부분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정정보도의 시기는 이 판결의 확정일 이후 최초 신문발행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문구도 별지1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이 중 훈

〈별 지1〉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 2. 15.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 챙기기 인사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용섭 장관이 취임 후 차관 및 감사관을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차관 및 감사관은 이용섭 장관 취임 전에 이미 임명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 지2〉 정정보도요구문

본지는 2007. 2. 15.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이 지나친 고향챙기기 인사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본지는 이용섭 장관이 차관 및 감사관을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고 보도하였습디만, 차관 및 감사관은 이용섭 장관 취임 전 임명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고위공무원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23%, 영남 27%, 호남 16%, 충청 21%, 강원 11%, 제주 2%이며, 특히 본부장 중 호남출신자의 비율이 이용섭 장관의 취임 전에는 50%였으나 취임 이후 30%로 오히려 낮아져 인사의 호남편중 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위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자 판결 (2007가합9017)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27일 우○○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9시 뉴스데스크」와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그 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하던 사람들 중 급성녹내장에 걸리거나 자살을 기도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인터뷰와 함께 원고 병원을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자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주장에 대해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있으나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 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어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

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원고가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 외래교수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대한비만체형의학회 등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전공과 관계 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원고가 비만 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4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129)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반론보도를 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9017 정정·손배청구

원 고 : 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태 원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국빌딩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최 정 민

변 론 종 결 : 2007. 11. 29.

판 결 선 고 : 2007. 12. 27.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모두 삭제하라.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4. 만일 피고가 위 제2, 3항 기재 일자에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위 제2, 3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 중 원고 및 원고 운영 병원의 영상을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 삭제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각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오른쪽 화면 상단에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원고는 뉴스데스크의 ‘알고보니 간질약’이라는 보도 및 뉴스후의 ‘병주고 약주고’ 라는 보도에서의 토파맥스 관련 녹내장 부작용과는 관계없고, 토파맥스는 비만치료약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5 ‘정정보도문요구문’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전항 기재 일자에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에서 ○○○○○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경위

피고 소속 김△△ 기자는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 등을 접하게 되자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을 보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김△△ 기자는 실제로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기 위하여 실험을 위한 연기자를 환자로 위장시켜 다이어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그 후 김△△ 기자는 위와 같은 실험으로 얻은 처방전 중 급성녹내장의 부작용을 일으킨 토파맥스를 처방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원고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고 속이고 위와 같은 처방전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고, 그 상황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원고 병원의 상호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도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실험자의 진료 장면과 원고의 인터뷰 장면 등을 포함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알고 보니 간질약”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살 빼는 약에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들어있고,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도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장면을 내보내는 등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고, 같은 날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藥주고 病주고”라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처방받은 후 그 약을 복용하던 중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급성녹내장을 앓게 된 사례를 보도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원고 병원에서 몰래 촬영한 진료 장면 및 원고 인터뷰 장면 등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를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록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하였지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병원의 모습과 원고가 촬영된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에서 프로작(항우울제), 써모펜(감기약), 토파맥스(간질약)가 비만치료약으로 처방 가능한 약물임을 알면서, 원고가 마치 비만치료에 처방할 수 없는 약을 처방한 것처럼 “항우울제, 감기약, 심지어 간질약까지 조금이라도 식욕 억제에 있는 약은 모두 비만치료제로 처방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간질약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② 피고는 9시 뉴스데스크에서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고(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뉴스후에서도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다른 병원에서도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가 원고 병원에서 진찰 받은 후 처방받은 약에도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뒤 이어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사례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하였다(녹내장 부분, 이하 이 사건 제3보도라 한다).

③ 피고는, 뉴스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가지 약을 병합해서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원고가 “왜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하느냐 그러는데 아무래도 효과면인 것 같아요. 효과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를 또 계속 오시게 하고 해야지 효과를 많이 줘야 하지만.. 그렇잖아요.”라고 답변하는 내용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에서 피고가 항우울제와 감기약 간질치료제 등 다섯 가지 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한 원고에게 부작용은 없느냐고 묻자 원고가 전혀 없다고 자신 있

게 말한다고 보도하면서, 원고가 “오히려 비만한 게 병이지, 약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은 전혀 염려가 없어요”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병합 처방 부분, 이하 이 사건 제4보도라 한다).

④ 피고는 뉴스후에서, 원고 병원이 원래는 가정의학과 병원인데 비만클리닉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비만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병원 내부는 온통 비만관련 광고로 가득하다고 하였으며, 그 후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 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방송하였다(비만 연구 부분, 이하 이 사건 제5보도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또는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화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시청자가 원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1, 2 기재 보도에서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참조).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 중 00:19에서 00:20 사이에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하였고, 02:08에서 02:16 사이에 같은 날 밤 10시 50분에 뉴스 후에서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것이라고 광고를 한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35:59에서 36:01 사이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된 바 있던 원고 병원의 “○○○”이라는 로고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보도하였고, 36:09에서 36:16 사이에 화면의 절반 중 윗부분을 뿌옇게 처리하여 원고 병원의 대기실 장면을 내보냈으며, 21:18에서 21:19 사이에 원고 병원의 복도 장면이, 21:32에서 21:34 사이에 원고 병원 건물의 외부 전경이 각 보도되었고, 원고와의 인터뷰 장면 중 수 차례에 걸쳐 진료실 내부의 모습이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의 상호를 알거나 원고 병원에 와 본 사람이라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통하여 위 각 보도에 나오는 병원이 원고 병원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사가 비록 화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원고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원고 및 원고 병원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 5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이 항우울제이고, 써모펜이 감기약이며, 토파맥스가 간질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5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비만성형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프로작은 항우울제이기도 하지만 폭식, 과식 등의 식이장애의 경우 식욕증추 안정화를 위하여 처방되기도 하고, 써모펜은 감기약이기도 하지만 운동하기 30분 전에 복용하면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를 최대화시키는 등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는 약물이며, 토파맥스는 간질약이기도 하지만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어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보도에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단순히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이라고만 보도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제목을 “알고보니 간질약”이라고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원고가 비만치료에 쓸 수 없는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을 단순히 체중감량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제2보도

피고는 2007. 4. 7.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비만치료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처방받은 후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직후 실제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모든 약은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안약도 녹내장이 올 수 있거든요.”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원고가 자신이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제5보도

을 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3. 1.부터 4년간 ○○○○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2007. 3. 1.부터 2년간 같은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의 외래교수로 각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2003. 6. 대한비만체형의학회의 정회원으로, 2004. 12. 12. 대한지방성형학회의 정회원으로 각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병원 건물의 외벽 간판 및 원고 병원의 진료실 내부 촬영 장면을 내보내면서 요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비만클리닉, 전공과 관계없이 의사자격증만 있으면 비만관련 연구 한 번 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만클리닉을 열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마치 원고가 비만관련 연구 한 번 없이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비만클리닉을 개원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3, 4보도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3보도

을 1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보도 중 19:22에서 19:57 사이에 병원에서 비만치료제로 간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를 보도한 후, 다른 병원에서 간질약을 비만치료제로 처방하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실험자로 하여금 서울 시내에 있는 10군데의 비만클리닉(이하 실험 대상 병원이라 한다)을 찾아가 처방전을 받게 하였고, 그 중 간질약을 처방한 강남의 한 비만클리닉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도에서 원고 병원이 급성녹내장 환자가 처방을 받은 병원이 아니라 실험 대상 병원 중 간질약을 처방한 병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시청자들이 원고가 처방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이 걸린 환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

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4보도

위 보도는 김△△ 기자가 원고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는 내용으로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초상권 침해 여부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보도를 방영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목록 1 기재 보도에서 원고 병원의 로고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보도에서 원고의 모습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음성은 변조되었는바, 달리 원고의 초상이 공개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1) 일반론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이 사건 각 보도는 비만 치료를 받다가 자살기도를 하고, 급성녹내장을 앓게 되는 등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의 폐해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의료인들의 과잉진료행위의 문제점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만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3) 진실성 및 상당성

(가) 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가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한비만학회는 2003. 4. 16. '비만지침'이라는 자료에서 비만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약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 등을 기재하여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는 시부트라민과 올리스타트 뿐이라고 발표한 사실, 김△△ 기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김 모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이모, 강모, 김모, 김모 의대 교수 등을 비롯한 의사들의 의학적 자문 등 다양한 취재자료를 수집한 후 이러한 내용을 위 보도에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처방한 프로작, 써모펜, 토파맥스는 정식으로 비만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제가 아니고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서 비만치료제로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의 약품이어서 의학적 내부에서 그 효과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약제가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실제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을 복용하고 급성녹내장에 걸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심지어 간질약까지"라고 하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는 의사들이 항우울제, 감기약, 간질약 등을 과잉처방 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보도의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5보도

위 각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각 허위 내용의 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및 방송경위, 그 표현 방법, 위 보도가 방송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의 사회적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2007.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4. 정정보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 등

(1) 이 사건 제2, 5보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써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mbc.com)에 게재된 별지 목록 3 기재 장면을 삭제하여야 한다(원고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목록 1, 2 기재 동영상의 삭제도 구하나, 원고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그 삭제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피고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5보도로 허위사실을 방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9시 뉴스데스크 및 뉴스후 프로그램에서 별지 목록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보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게재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보도가 방송된 방식과 그 비중 및 허위성의 정도, 고려해야 할 공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의 '9시 뉴스데스크', '뉴스후'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각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 목록 4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각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프로그램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 (1), (2)항 기재 일자에 (1), (2)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1), (2)항에서 정한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이 경 민

판 사 김 은 정

판 사 정 경 희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주유소의 전경을 방영하여 실제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다는 인상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광주지방법원 2006. 12. 15.자 판결 (2006가합892) (확정)

사실개요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2006년 12월 15일 서○○와 김○○가 주식회사 광주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주시에 소재한 주유소를 공동 경영하는 원고들은 ‘KCC 8시뉴스’ 프로그램에서 전남 나주시 지역에서 유사 휘발유를 진짜 휘발유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경유에 값싼 첨가제를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전경이 방영되자,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손해 4,000만원 및 위자료 8,000만원의 지급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 주유소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적절 방영된 것은 아니고, 탱크로리, 담벼락 등이 3초 정도 방영된 것만으로 원고의 주유소라고 식별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주변의 지형·지물이 노출되었고, 주유소 입구의 주유박스, 글씨 등이 원거리 촬영에서 점차 클로즈업되어서, 이 사건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이 사건 주유소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특히, 단골고객)이라면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주유소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유소는 특정되었다”면서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 특히 이 주유소의 단골고객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한다면 ‘원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섞어 팔다 적발된 나주의 주유소이

거나 이 주유소 역시 문제된 주유소들과 같이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하는 주유소'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출 감소와 보도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점,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정정보도가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조치로 상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정정보도는 기각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892 손해배상(기)

원 고 : 1. 서 ○ ○

2.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재

피 고 : 1. 주식회사 광주방송

광주 남구 ○ ○ ○

대표이사 박 ○ ○

2. 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재 중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정 재 중, 이 상 현

변 론 종 결 : 2006. 12. 1.

판 결 선 고 : 2006. 12. 1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서○○에게 5,00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200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광주방송은 '2005. 8. 30. 20:00경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등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나누시' ○○○ ○○○ 소재 ○○주유소 및 그 전화번호가 방영된 바 있으나 당시 진실주유소는 가짜 휘발유

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영상보도는 방송국의 착오로 방영된바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를 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나주시 ○○○○○○에서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광주방송(이하 '광주방송' 이라 한다)은 'KBS 8시뉴스'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강○○은 피고 광주방송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이 사건 보도의 취재과정

(1) 피고 강○○은 2005. 8. 29. 피고 광주방송 소속 촬영기와 함께,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서 유사회탈유를 진짜 휘발유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경유에 값싼 첨가제를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와 나주시의 발표를 접하고 이를 취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오전 경에 광주 ○○동 소재의 연한 ○○ 주유소(이하 '○○동 주유소' 라 한다)에 대한 촬영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인터뷰 등의 취재를 하고, 오후 경에 나주시 소재의 주유소를 탐문 취재하던 중 이 사건 주유소가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당시 이 사건 주유소는 회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7.말경부터 잠시 휴업상태에 있었다)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단 별지 2005. 8. 30.자 KBS TV의 '8시 뉴스' 의 보도 내용(이하, '별지' 라고만 한다) 기재 중 '화면구성' 란의 ① '~④'의 각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그 후 더 취재를 하여 나주시 관내에서 불량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ㅎ' 주유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위 'ㅎ' 주유소의 노란색 기둥, 가격표지판 등의 촬영 및 그 업주와 인터뷰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 강○○와 위 촬영기자는 위 일곡동 주유소 및 'ㅎ' 주유소와 관련된 화면을 정리·편집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촬영하였던 위 ①~④의 각 장면을 별지 기재 중 '화면구성' 란의 기재와 같이 위 각 주유소들의 촬영장면에 각 일부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다. 2005. 8. 30.자 KBS 8시뉴스의 보도내용

(1) 피고 광주방송은 2005. 8. 30. 20:30경 자신의 'KBS 8시뉴스' 시간에 [가짜연료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 뉴스로 약 10초를 방영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이 이를 총 1분 55초 가량 보도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은 약 13초 정도이었다.

(2) 즉, 이 사건 보도가 방영되기 시작하지 약 43초가 지난 즈음에 별지 기재 '대사'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유소 가건물에는 정품과 가짜를 바꿔 공급할 수 있는 이중 벨브

를 설치했습니다' 라는 멘트 중 '바뀌 공급...' 부분부터 위 일곡동 주유소의 가건물 장면(그 전까지는 일곡동 주유소의 여러 장면이 방영되었다) 다음에 ① 원고들의 탱크로리의 장면이 약 1초간(다만, 일반 주유소의 탱크로리와 쉽게 구별이 되지 않고, 탱크로리에 있는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는 반투명 처리되어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주유소 입구의 난방유 배달용 고압호스, 초록색 주유박스 한 개의 일부와 노란색 담벼락 일부 장면(이상 하단에 '가짜 연료 사용 차량 고장 불허' 라는 제목, 다만 일반 주유소의 모습과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음)이 약 3초 정도 방영되었고, 그 후 광산경찰서의 수사과장의 인터뷰,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 장면, 다시 ○○동 주유소의 각 장면이 합계 약 28초 정도 방영된 후, '지난 24일 나주의 한 주유소도 가짜 경유를 섞어 팔아오다 적발됐는데, 이곳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들의 고장이 잇따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라는 멘트 중 '차량들의...' 부분부터 'ㅎ' 주유소의 여러 장면들 사이에 ③ 약 3초간 이 사건 주유소의 초록색 주유박스 일부와 검은색 주유기를 ○○일 기자가 들고 있는 장면이 방영되었고,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및 운전자들의 피해 가능성에 관한 기자의 대사가 시작되는 '가짜휘발유를 판 업주는 최고 사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5,000만 원이 추정되고' 라는 멘트의 배경화면에 ④ 약 6초간 이 사건 주유소에서 도로방향으로 촬영한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고 주변의 지형·지물이 보이는 원거리 촬영 장면에서 점차 이 사건 주유소 입구의 '슈퍼디젤'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초록색과 노란색의 주유박스 1개, '주유중엔진정지 등' 의 문구가 기재된 초록색과 노란색의 기둥과 노란색 주유박스 1개 등의 촬영장면이 방영되고 그 후 위 'ㅎ' 주유소와 ○○동 주유소의 촬영장면이 다시 방영되었으나,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나 전화번호는 노출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도 방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은 이 법원의 디브이디(DVD) 검증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2, 갑 제8,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디브이디(DVD) 검증결과(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디브이디(DVD)가 피고들에 의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의 전체 취지

2.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가 위 1. 다. (2)항과 같이

배경화면으로 방영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주유소도 방영된 다른 주유소와 같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체 중 하나라고 오인하게 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재산상 손해 4,000만 원 및 위자료 8,000만 원의 지급을, 피고 광주방송에 대하여 청구지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 광주방송은 이 사건 주유소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을 직접 방영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방영된 부분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 사건 주유소임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주유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주유소 인근의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주유소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에서 문제된 나주의 'ㅎ' 주유소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그 업주의 인터뷰를 방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주유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업체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주유소의 경우에도 그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이 사건 주유소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써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를 주유소의 상호나 전화번호 등이 직접 방영된 것이 아니고, 위 ①~③의 장면과 같은 탱크로리, 난방유 배달용 고압호스, 주유박스 일부, 담벼락 일부가 다른 주유소의 장면들 사이에서 약 1초, 3초, 3초 정도 각 방영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바라 본 도로 등 주변의 지형·지물이 노출되었고, 그 후의 장면은 위 원거리 촬영에서 이 사건 주유소 입구의 '슈퍼디젤'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초록색과 노란색의 주유박스, '주유중엔진정지 등'의 문구가 기재된 초록색과 노란색기둥과 노란색 주유박스 1개 등을 점차 클로즈업한 화면이어서, 이 사건 보도를 시청한 사람 중 적어도 이 사건 주유소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특히, 단골고객)이라면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주유소임을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도 중 이 사건 주유소의 방영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유소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어느 정도 문제된 ○○동 주유소와 나주의 ‘ㅎ’ 주유소의 가짜 휘발유 판매 수법을 위주로 보도되었고, 나주의 ‘ㅎ’ 주유소와 관련하여서는 그 업주의 인터뷰 내용까지 방영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보도의 첫머리에 [가짜연료비상]이라는 제목의 화면과 함께 앵커가 일반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팔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멘트가 시작된 후, 하단에 ‘가짜 연료 사용 차량 고장 불러’ 등 제목의 화면과 함께 피고 강○○ 기자가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면 차량에 손상을 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고, 운전자들은 싸다는 말에 현혹되어 쉽게 속을 수밖에 없으며, 나주의 한 주유소도 가짜 경유를 섞어 팔아 오다 적발이 됐다는 등의 멘트가 이어지고, 그 후 가짜 가짜휘발유 판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체 주유소들 때문에 운전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는 기자의 평가로 보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유소 방영부분도 위와 같은 피고 강○○ 기자의 멘트 도중에 나오며 특히 위 ④의 장면은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멘트와 함께 나오고 그 후 바로 가짜 가짜휘발유 판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멘트가 이어지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보도에서 이 사건 주유소 장면은 이 사건 보도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 점, 비록 나주의 ‘ㅎ’ 주유소 업주의 인터뷰 장면에서 ‘ㅎ’ 주유소의 전경이 화면으로 방영되었으나 그 업주가 구체적으로 ‘ㅎ’ 주유소의 업주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 시청자들이 그 업주가 ‘ㅎ’ 주유소의 업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청자들, 특히 이 사건 주유소의 단골고객들이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보도를 접한다면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섞어 팔아오다 적발된 나주의 주유소이거나 또는 이 사건 주유소 역시 문제된 위 주유소들과 같이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하는 주유소’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공익적 목적과 이 사건 보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 중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 적시 부분,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하였다는 점이 진실

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도에서 실제로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한 주유소를 방영하는 것 외에 원고들의 주유소를 방영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전에 원고들이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주유소를 방송에 내보낸 것이어서(더구나 이 사건 보도 직전에 가짜 경유를 판매한 나주의 한 주유소가 위 ‘ㅎ’ 주유소이고 원고들 주유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 강동일은 알고 있었다). 피고들에게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도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을 훼손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를 취재·편집한 피고 강○○과 이를 방영한 피고 광주방송은 각자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발생여부

갑 제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재개하였고, 이 사건 보도 전의 매출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보도 이후의 매출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매출의 감소가 이 사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도를 인한 손해 및 그 수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책임 발생여부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규모, 피고 광주방송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내용, 방송시간 기타 이 사건 언론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서○○ 500만 원, 원고 김○○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정정보도여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자료의 지급을 명시한 점,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보도후의 정황, 이 사건 보도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은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 부분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자료로 원고 서○○에게 500만 원, 원고 김○○에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2.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남○○

판사 고○○

□

2005. 8. 30.자 KBS TV의 '8시 뉴스'의 보도내용

화 면 구 성	대 사
앵커얼굴과 앵커 오른쪽 상단에 [가짜연료비상]이라는 제목(약 10초 정도)	앵커 : 고유가 속에 일반 주유소에서까지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팔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유소들의 지나친 경쟁이 가짜 연료판매를 부추기면서 운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일곡동 소재의 연한 청록색 주유소의 여러 장면(하단에 '주유소까지 가짜 연료 판매 충격', 약 32초 정도)	기자 : 광주시 일곡동과 무안, 영광 3곳의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와 경유 7억 5,000만 원어치를 팔아 온 업주 두 명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지하에 묻힌 여러 개의 대형 탱크 가운데 일부를 비운 뒤 블루엔과 같은 값싼 제품을 섞은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채워 놓았습니다.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 쉽게 차량에 손상이 쥐고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유소 가건물에는 정품과 가짜를(약 32초 정도)

화 면 구 성	대 사
<p>① 주차해 있는 탱크로리 장면(약 1초, 주유소 상호와 전화번호는 반투명 처리되어 보이지 않음)</p> <p>② 원고들 주유소 입구의 난방유 배달용 고압호스, 초록색 주유기 한개의 일부와 노란색 담벼락 일부 장면(약 3초, 이상 하단에 '가짜 연료 사용 차량 고장 불러'. 위 ①, ②는 이 사건 주유소이지만, 일반 주유소의 탱크로나 주유소의 모습과 쉽게 구별이 되지 않음)</p> <p>수사과장 인터뷰 장면(약 11초)</p>	<p>바뀌 공급할 수 있는 이중 밸브를 설치했습니다.(약 4초 정도)</p> <p>수사과장 : 정품이 나오도록 하면 정품. 유사석유가 나오도록 하면 유사석유가 나오도록 장치해 놓고 탱크에서 나오는 유사석유를 일반운전자들에게 판 거죠.</p>
<p>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 장면(약 10초)</p>	<p>기자 : 이들은 석유품질검사소 담을 넘어 들어가 단속 직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다시, 광주 일곡동 소재의 연한 청록색 주유소 장면(약 6~7초)</p>	<p>운전자들은 싸다는 말에 현혹됐고, 냄새나 육안으로 가짜 여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p>
<p>나주의 'ㅎ' 주유소 장면(주변의 건물과 함께 원거리에서 촬영하였다가 점차 주유소 내부를 촬영, 약 8초)</p> <p>③ 초록색 주유박스 일부와 검은색 주유기를 강동일 기자가 들고 있는 장면(약 3초, 원고들 주유소)</p> <p>다시, 위 'ㅎ' 주유소의 노란색 기둥과 주유기 등 전경 정지 장면(하단에 '주유소 업주 인터뷰 내용', 약 8초)</p>	<p>지난 24일 나주의 한 주유소도 가짜 경유를 섞어 팔아오다 적발됐는데, 이곳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들의 고장이 잇따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p> <p>'ㅎ' 주유소 업주 : 가격을 일단 싸게해야 되니까 저희는 싼값에 공급하죠, 저희가 가격을 내리면 주위에서 올리라고 난리죠...</p>
<p>④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 등 원고들 주유소에서 도로방향으로 원거리 촬영을 하였다가 점차 클로즈업하여 원고들 주유소의 두 개의 초록색 주유박스 등 촬영장면(약 6초, 슈퍼디젤과 주유중 엔진정지 글씨보임)</p> <p>다시 'ㅎ'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일곡동의 주유소 등 장면(약 15초)</p>	<p>기자 : 가짜휘발유를 판 업주는 최고 사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5,000만 원이 추정되고,</p> <p>구속되는 형사처벌까지 받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짜휘발유 판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p> <p>가짜휘발유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암채 주유소들 때문에 운전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p>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4.자 판결 (2006가합9577)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07년 5월 4일 김○○이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06년 3월 6일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생명인가? 죽을 권리인가?” 프로그램에서 원고와 담낭암 말기환자인 원고의 아버지에게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방송을 한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원고는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응하였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원고와 원고 아버지의 얼굴과 신체 모습, 실명,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내용도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아버지가 마치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것처럼 보도되어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아버지 김○○의 건강상태나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병원 홍보담당 직원과 담당의사가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의 방송이라는 설명과 함께 방송사의 급한 사정, 익명성 보장 등을 언급하며 재차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인터뷰를 허락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 소속의 방송관계자 등 직원들은 원고가 익명성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얼굴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익명성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터뷰 당시 설명하였던 방송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리포터의 설명을 통하여 마치 원고의 아버지 김○○이 죽음에 임박한 말기암 환자로서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9577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평

담당변호사 옥 중 호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변론종결 : 2007. 3. 23.

판결선고 : 2007. 5. 4.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6.부터 2007. 5.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방송했던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이 중영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시간대에 편성·방송되고 있는 “○○○과 네 남자” 프로그램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제목과 본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고, 방송 후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이 ‘다시보기’ 되고 있는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pmorning>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30일간 게재하라.

3.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pmorning>에서 ‘다시보기’ 되고 있는 내용 중 원고 또는 소외 망 김△△와 관련된 내용을 각 삭제하라.

4.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MBC프로덕션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녹화테이프 내용 중

원고 또는 소의 망 김△△와 관련된 내용을 각 삭제하라.

5. 만약 피고가 위 제2 내지 4항에서의 기간 안에 위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1, 갑5의 3, 갑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담낭암 말기환자인 자신의 아버지 소외 김△△을 간호하던 자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로서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현재는 중영되어 그 시간에 대해 “○○○과 네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방송의 보도

(1) 피고는 2006. 3. 6. 08:44부터 08:51까지 약 7분 동안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생명인가? 죽을 권리인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의 인터뷰 장면은 약 3분정도였다.

(2) 이 사건 방송은, ○○○국회의원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말기암 환자인 김△△과 보호자인 원고에 대한 인터뷰 내용,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있던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행위로 인해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의사에 관한 내용(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소극적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의사 한명과 시민 두 명의 인터뷰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방송 맥락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나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일정 부분 필요한 면도 있겠으나 생명윤리문제와 오남용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면 아직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으로서 그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유보하고 있다.

다. 한편 김△△은 이 사건 방송 이후인 2006. 4.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김△△ 단독 상속인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의 방송관계자 등 직원들이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방송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환자인 김△△과 보호자인 원고모두의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인터뷰를 하였던 것인데, 실제 이 사건 방송은 원고와 김△△이 인터뷰에 응했던 조건과는 달리 원고와 김△△의 얼굴과 신체 모습, 실명,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되었고, 그 내용도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마치 김△△이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것처럼 보도됨으로써 이로 인해 원고와 김△△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방송관계자 등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망 김△△을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원고의 위자료와 김△△의 위자료를 합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와 김△△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을 구하면서 그 이행의 간접강제를 위하여 정정보도 등의 불이행시 매일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김△△의 인터뷰 당시 소극적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환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의 불합리성에 대한 기획의도를 설명하였을 뿐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약속한 바 없고, 또한 익명성 보장과 관련하여 환자인 김△△의 모자이크 처리만을 요구 받았을 뿐, 김△△의 음성변조와 보호자인 원고의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익명성 보장을 요구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갑4의 1 내지 4, 갑5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미디어뷰의 담당작가(○○○은 2006. 3. 3.경 위 영동세브란스병원 홍보담당 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최근 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환자나 그 가족이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방송을 하려는데 이에 적합한 환자와 사례가 있는지 그 섭외가능성을 의뢰하였다.

2) ○○○은 ○○○교수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하고,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하여

적합한 환자와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이를 찾을 수 없자, ○○○ 교수의 제안에 따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에게 문의하였고, ○○○이 이에 동의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위한 환자 섭외를 부탁하였다.

3) ○○○은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암을 앓고 있는 김△△과 그 보호자인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와 김△△에게 피고의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및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취재하려 하니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인터뷰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김△△은 공중파 방송에 자신들이 나가는 것을 꺼려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 화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익명서를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재차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락하였고, ○○○은 ○○○에게 원고와 김△△이 위와 같은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했다고 전하였다.

4) 그러나, 이후 원고와 김△△은 김△△의 건강상태와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담당의사에게 말하였고, 원고와 김△△의 인터뷰 거부 사실을 연락받은 ○○○이 2006. 3. 5. 원고에게 전화하여 방송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니 인터뷰에 응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 보라면서 일단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전하였다.

5) 그 직후 담당의사가 원고와 김△△에게 방송사의 급한 사정과 방송된 내용의 공익적인 취지, 익명성 보장 등을 언급하며 재차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와 김△△은 결국 이를 허락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6)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3. 6. 방송된 이 사건 방송은 「생명인가? 죽을 권리인가?」라는 제목으로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및 소극적 안락사 허용으로 인한 생명윤리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그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7) 이 사건 방송 중 그 취재 내용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첫 부분에 병원의 병실 내부를 보여주면서 김△△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약 1초간 그대로 노출되었고, 원고와 김△△의 인터뷰 내용을 취재하는 장면에서는 담낭암 환자라는 자막과 함께 김△△의 앞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눈 밑쪽 부분만이 나오도록 하였으나(뒷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 김△△의 음성은 변조되지 않았고, 진통제 약병에 적힌 김△△의 이름이 약 1~2초간 노출되었으며, 원고의 경우는 원고의 이름과 담낭암 환자의 딸이라는

자막과 함께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음성도 변조되지 않았다.

8)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와 김△△의 인터뷰 장면 중간 중간에는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쓸개에 암이 생기는 담낭암, 환자의 80%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이분 역시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어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몰핀이나 근육이완제를 맞으며 목숨을 연명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라는 리포터의 설명이 나오고, 또한 말기암이라고 들었다는 취재 피디(PD)의 물음에 대해 말기암이라기보다는 항암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안하는 상태일 뿐이라는 원고와 김△△의, 인터뷰 뒤에 “뜻밖의 대답이었는데요, 그들은 말기암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라는 리포터의 설명이 이어지기도 한다.

9) 피고는 이 사건 방송 이후 원고가 익명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항의를 하자,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와 ○○○의 인터뷰 장면에서 원고와 김△△ 모두에 대한 얼굴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하고, 또한 진통제 약병에 김△△의 이름이 노출되는 부분도 모자이크 처리하는 한편 자막으로 나갔던 원고의 이름을 지운 후, 그렇게 수정, 편집한 상태의 이 사건 방송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다시보기’ 라는 콘텐츠를 통하여 방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는 처음에는 김△△의 건강상태나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병원 홍보담당 직원인 ○○○과 담당의사가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의 방송이라는 설명과 함께 방송사의 급한 사정, 익명성 보장 등을 언급하며 재차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인터뷰를 허락하였다 할 것인데, 담당작가인 ○○○과 이 사건 방송에 관여한 피고 소속의 방송관계자 등 직원들은 병원측이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하여 적합한 환자나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그 대안으로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적합한 사례인 원고와 김△△을 소개하였다는 점과 원고 김△△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 및 익명성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함에 있어서 원고와 김△△의 얼굴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익명성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터뷰 당시 설명하였던 방송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리포터의 설명을 통하여 마치 김△△이 죽음에 임박한 말기암 환자로서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원고와 김△△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담낭암을 극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원고와 김△△이 이 사건 방송 보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김△△에게 위 명예훼손 및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김△△의 인터뷰 장면이 방송된 시간이 총 3분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의 정도,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원고와 김△△의 사회적 지위, 방송매체로서의 피고의 지위 및 영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3,000,000원, 김△△의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 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원고의 위자료와 망 김△△의 위자료 합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6.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정보도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원고와 김△△에 대하여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를 하는 등으로 원본 녹화테이프를 수정, 편집하여 원고와 김△△의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직원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의 지급 이외에 별도의 정정보도나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와 김△△ 관련 부분의 삭제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각 청구들과 관련하여 간접강제의 수단으로서 구하는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위 각 청구들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자 판결 (2005가합6457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최영룡 부장판사)는 2007년 5월 18일 김○○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외 3개 포털사이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망인 서○○의 어머니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운영의 ○○월드 내에 있는 서○○의 미니홈피에 원고가 망인 서○○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 하였으나 망인 서○○가 첫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내 아이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정자덩어리일 뿐이다” 등의 극언을 하였으며,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하고 망인의 합의 간청을 매정하게 거절하여 망인이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망인의 미니홈피에 접속자수가 폭주하고, 그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전파 하였다. 또한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응징하자는 취지의 카페가 개설되고, 서명 운동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들은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여 위와 같이 네티즌들이 망인을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현상을 전하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데, 그 중에는

망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망인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포함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으며, 위 기사들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을 통해서 원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표현물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①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사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류하고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에 배치하기도 하고,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기도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에게는 500만원,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에게는 400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서 “원고는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사를 해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고들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재 욱, 이 지 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의 훈

피 고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큰길타워

대표이사 김 범 수

2.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생명 양재빌딩

대표이사 이 재 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성

담당변호사 배 대 준, 남 수 진

3.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대표이사 유 현 오

피고 1,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이광육, 진호식

4. 야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글라스타워

대표이사 이 승 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 촌

담당변호사 성 소 영, 김 남 호

변론종결 : 2007. 4. 27.

판결선고 : 2007. 5. 18.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는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주식회사는 각 4,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9. 26.부터 200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최종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2, 15호증, 강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강제5, 7호증의 각 1 내지 4, 강제6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1호증의 1 내지 4, 을가제2, 5 내지 7호증, 을나제1, 2, 4, 6호증, 을다제1, 2호증의 각 1, 2, 을다제3호 증의 1 내지 16, 을다제4 내지 8호증, 을라제1 내지 3호증, 을라제5호증의 1, 2, 을라 제6 내지 9호증, 을라제10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망 ○○○의 교제와 ○○○의 자살

1) 원고는 1976년 생으로 1994. 2. 서울 선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3. 9.부터 1995. 12.까지 주식회사 태산정밀 경리부에서 근무하였고, 1997. 9.부터 1999. 12.까지 군복무를 마쳤으며, 2000. 3.부터 2005. 5.까지 주식회사 두산 인쇄사업부문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국민대학교 야간 경영학부에 입학하였다.

2) 원고는 2004. 4. 17.경 친구의 소개로 ○○○를 만나 1년 간 교제하다가 2005. 4. 경 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 어머니 ○○○은 원고가 임신한 상태인 ○○○를 학대하고 버리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원고의 회사와 학교 생활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는 2005. 4. 16. 자신의 거주지에서 ○○○, 원고가 다니던 회사 등에 여러통의 편지 형식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같은 달 22. 원고 등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엔이라 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¹⁾ '네이버(www.naver.com)' 를,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 을,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라 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www.nate.com)' 및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싸이월드(cyworld.nate.com)' 를, 피고 야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야후코리아라 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www.yahoo.co.kr)' 를 각 운영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하 네티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이메일

1) portal site, PS. 이용자가 웹 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들어가는 사이트(곳). 허브, 관문국(게이트웨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길라잡이 사이트로 설계된 페이지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속하도록 분야별 연결 주소나 최신 뉴스, 일기 예보, 스포츠 정보 등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화제가 게재되어 있다.

2) 인터넷을 의미하는 web와 기록일지를 뜻하는 log의 합성어로 <인터넷일기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메모장, 스케치북, 스크랩북, 수필집, 자서전, 사진첩, 신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개인 사이트의 일종이다. 시간 순으로 배열되므로 가장 최 신 자료가 제일 앞에 오는 특징이 있다. 블로그 사용자나 블로그사이트 운영자를 블로거 (blogger)라 부르며, 블로거들이 자기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쓰는 행위를 블로깅(blogging)이라고 한다. 블로깅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문사이트에 가입해 블로그계정을 받는 방법과 블로그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2001년 미국의 시애틀지진, 9·11테러, 이라크전쟁 등을 거치면서 <뉴스게릴라>적인 성격과 더불어 실시간 놀라운 전파력으로 전세계에 블로그를 일으켰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서 일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 공유,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회원들이 결성하여 폐쇄적 또는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동호회를 뜻한다.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가 카페 또는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동호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의 회원에 가입하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카페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일서비스를 비롯하여 뉴스, 블로그²⁾, 카페³⁾, 쇼핑몰, 게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고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피고들은 자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 '뉴스' 서비스란을 두고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으로부터 뉴스 기사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이를 배치하여 네티즌이 열람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사이트상의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터넷상의 정보자원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⁴⁾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이미 만들어 놓은 형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문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함으로써 회원들 상호간에 이를 자유로이 교환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피고들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브페이지 상에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 ○○○이 망 ○○○의 유서를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재

(1) ○○○은 2005. 5. 5.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운영의 싸이월드 내에 있는 자신의 사망한 딸인 ○○○의 미니홈피(<http://www.cyworld.com/tomato117>, '故 ○○○님의 홈페이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 모씨는 2004. 4. 17. ○○○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애인 사이가 되었는데, ○○○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004. 8.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후 ○○○로 하여금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게끔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가 '김' 모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자연유산하게 되자, '김' 모씨는 태도가 돌변하여 ○○○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만나는 횟수도 뜸해졌다.

(나) '김' 모씨의 태도에 실망한 ○○○는 2005. 3.경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그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을 다짐하자 관계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4) 홈피는 홈페이지(homepage)의 줄임말로써, 웹 사이트의 URL(웹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들에 있는 파일들의 위치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접속해야 될 서비스의 종류, 서버의 위치(도메인 네임), 파일의 위치를 포함한다)로 접속했을 때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페이지를 의미하며, 그 사이트를 대표하는 페이지이다.

그러나 ○○○가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자 ‘김’ 모씨는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단절하였다.

(㉔) ○○○는 ‘김’ 모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자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다니는 야간대학으로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나, ‘김’ 모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개 값 물어주기 싫다”면서 ○○○를 차에서 밀쳐, 그로 인하여 ○○○의 구두굽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㉕) ○○○은 2005. 4. 12. ‘김’ 모씨를 만나 ○○○가 임신 중인 사실을 전하였으나, ‘김’ 모씨는 “그 애가 내 애가 맞느냐? 임신을 했다 해도 그저 정자 덩어리일 뿐이다. 임신은 어차피 당사자의 일이고 성인 남녀로서 가질 수 있는 성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대꾸하였다. 충격을 받은 ○○○은 ‘김’ 모씨의 뺨을 세 대 때리고 그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는 경찰서에서 ‘김’ 모씨에게 합의를 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조사하던 경찰도 매정한 ‘김’ 모씨를 나무랐으나 ‘김’ 모씨는 “법대로 하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은 이 때 받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㉖) ○○○는 2005. 4. 16. ○○○, 원고, 원고의 회사 등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혼자 살던 방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망하여, 6일 후 원고와 ○○○에 의해 발견되었다.

2) ○○○은 위 미니홈피에 “딸의 장례식장에서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김씨가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원고가 다니던 국민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의 위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 과 ‘○○○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 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3) 이후 위 ○○○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는 ○○○의 명복을 빌고 ‘김’ 모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김’ 모 씨의 실명이 ‘A(원고)’ 이고 학교와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하는 글들도 있었다.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라. 피고들 포털사이트에 원고와 관련한 글 게시

1) 피고 엔에이치엔

가) 피고 엔에이치엔이 운영하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시되었다.

(1) 2005. 5. 11. 02:47경 ‘현대판 베르테르, S양의 죽음과 네티즌의 추모열기’ 라는 제목의 브레이크뉴스 기자 ○○○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의 요지를 소개하고,

네티즌들이 남자의 변명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한 여자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남자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⁵⁾을 다는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위 기사에 대하여 “기자이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시길”, “당장 기사 지우시지. 가끔 올라오는 A 두둔하는 모습 다 A 측근으로밖에 안 보임” 등 〇〇〇 기사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2) 같은 달 12. 09:48경 ‘내딸이 자살한 사연」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〇〇〇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 사연으로 인하여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5. 11. 오후 현재 〇〇〇의 미니홈피에 무려 11만 4,000명의 네티즌이 방문하여 서씨를 추모하고 비정한 김씨를 성토했고 있다.’,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는 서씨를 추모하는 카페가 5곳이 개설되었는데, 회원수가 1만여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씨가 숨진 서울 화곡동에서 촛불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 기사 중간에 〇〇〇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〇〇〇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다. 위 기사에 “짐승만도 못한 개자식 A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A씨는 주소 지원구요 <http://cyworld.nate.com/tomato117> 여기 추모게시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네티즌이 도움시다” 등 많은 댓글들이 달렸다.

(3) 같은 날 13:28경 게시된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는 김모씨가 서모씨를 사귀던 중 배신하였고, 서모 씨의 어머니는 이에 대하여 김씨를 나무라던 중 고소를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으나, 김씨는 서씨의 합의를 차갑게 거절하여, 결국 서씨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 및 위 사연이 인터넷상으로 급속히 퍼져 피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집계한 급상승 검색어 2위에 오르고 12일 8만여명의 네티즌들이 서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역시 원고를 비난하는 많은 댓글들을 볼 수 있다.

(4) 같은 달 14. 09:54경 게시된 ‘딸 자살 억울함 호소한 미니홈피,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 김명관의 기사는 이 사건 게시물의 요지와 함께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뉴스타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네이버지식검색’ 서비스란에 ‘〇〇〇가 누구예요?’, ‘A

5) 웹 문서의 형식으로 된 글에 붙는 독자의 의견으로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묻고답하기(Q&A) 상에서 올려진 글에 대한 답변 내지 의견 형식으로 올리는 글을 이르는 신조어. 리플레이·답글이라고도 하며, 리플레이를 줄여 리플이라고도 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씨를 자살로 몰고간 국민대 A 아직 살아있나요’ 또는 ‘고○○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A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라는 질문에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소개, ○○○의 미니홈피 주소, 원고의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답변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다) 피고 엔에이치엔이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연희낭자’, ‘백수광부’, ‘희야뽀뽀’ 등의 인터넷 가명(ID)을 쓰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 관련 뉴스기사, 동영상, ○○○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 원고의 신상명세 및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의 카페 서비스에서는 ‘○○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쓰레기 A의 사진입니다’, ‘05학번이고 ○○○ 출판사에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학번은 05학번인데 나이는 많다고 해요. 빠른 76년생 이름은 A구요. 이 남자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람의 만행을 천하에 알리고 싶어요.’ 등 원고의 사직서, 사진,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었고, 거기에 원고를 비방하는 많은 댓글들이 달리게 되었다.

2)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가)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다음’의 뉴스서비스인 ‘미디어다음’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1) 2005. 5. 8. 14:56경 게재된 ‘자살한 딸 유서 인터넷공개 파문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김상기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는 ‘김모씨’, ‘서모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유언 사진과 함께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하루 34,400명에 이르는 많은 네티즌들이 서씨의 미니홈피를 방문하여 서씨의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비정한 김씨의 행각을 성토했고 있다’, ‘혼인을 빙자해 서씨에게 자살을 택하게 한 김씨를 찾아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는 글도 연달아 오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씨의 실명 등 신상을 퍼뜨리고 있으며,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을 위해서 반드시 김씨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사의 첫머리에는 ○○○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주소가 나타나 있는 위 ○○○의 미니홈피 초기화면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2) 같은 날 15:02경 ‘○○○의 자살사건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쿠키뉴스 기자 ○○○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이 기사는 “짜가지라고는 1g만큼도 없는 김모씨라는 인간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여자(○○○씨)와 결혼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어왔고, 임신을 하자 여자를 버렸다. 두 번째 임신 때는 ‘자기 아이가 맞느냐’ ‘단순히 정자덩어리일뿐’이라는 극언까지 해

됐다. 한편 그 썩가지 없는 김모씨의 실명과 인적사항이 벌써 공개되어 유포되고 있는 중이다.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는 썩가지 없는 녀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짓밟히게 되어 있는 게 ... 인터넷의 속성이다. 막을 수도 없고 인터넷은 그렇게 민중적이고 감정적인 매체다. 어떨 땐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씨 사건의 썩가지 없는 김모씨처럼 ... 그렇게 짓밟혀도 썩다는 생각이 든다. 김모씨의 변명이 궁금해진다. 그런데 만약 그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면? 인터넷은 참 무섭다. 침묵하는 자는 매장당하는 곳이다.” 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게시물의 전문을 옮겨 실은 다음, 끝 부분에 ○○○의 생전 사진을 덧붙였다. 이 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고, 관련 카페가 링크(연결)되어 있다.

(3) 같은 달 11. 20:04경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이 기사의 하단에 관련검색어의 링크(연결)를 설치하였다. 이 기사에도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다.

(4) 같은 달 12. 13:32경 ‘자살한 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이 기사에도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다.

(5) “[클릭! 이주일의 키워드]한국 스포츠카 자존심 썩”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는 검색어 순위 6위에 오른 ‘○○○’는 미니홈페이지에 오른 사연이 네티즌들에 의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인터넷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검색서비스에 ‘A’를 입력할 경우 ‘네티즌의 선택 - 1. A사진, 2. ○○○, 3. ○○○, 4. ○○대A, 5. ○○○A, 6. A채팅내용, 7. A싸이 8. 개똥녀, 9. 나야현, 10. ○○○’라는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를 입력할 경우 ‘네티즌의 선택 - 1. ○○○싸이월드, 2. A, 3. 개똥녀, 4. ○○○A, 5. 싸이홈피, 6. ○○○의 남자친구, 7. ○○○세븐데이즈, 8. ○○○, 9. ○○○싸이, 10. ○○○미니홈피’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다.

다) 카페서비스란을 통하여 ‘故○○○님을 추모하는 모임(서울)’, ‘○○○님을 추모하는 모임’, ‘故’○○○씨 사랑지킴이’, ‘A 년 장가 다갔어 각오해라’ 등의 카페가 개설되어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사진 등이 다수 게재되었고, ○○○를 추모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글이 실려 있다.

라)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티서비스 중 ‘아고라토론방’에는 ‘네티즌 청원, 고○○님의 부모님 돕기 운동 - 김 * * 공개사과 촉구 15611명 서명 서명목표 17000명’라는 글이 게시된 후 ‘○○대 ○○○학과 A...’, ‘남자이름이 A라네요...’ 등의 많은 댓글이 게시되었다.

3)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의 뉴스서비스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게시되었다.

(1) 2005. 5. 13. 19:47경 「억울하게 죽은 내 딸」미니홈피글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스타뉴스 기자 성명불상자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사건 게시물 및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 폭력 문제를 지적한 한국방송의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뉴스타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고, ○○○의 미니홈피에도 A씨(이 기사에서는 ○○○의 남자 친구를 이렇게 표현함)를 비난하고 KBS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도 원고에 대한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려 있다.

(2) 2005. 5. 31. 14:00경 '그리운 사람은 갔어도 미니홈피는 남아'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 기자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서 모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로 부터 버림받자 뱃속의 아기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버려 사이버공간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미니홈피가 망자와의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로 들고 있다.

나) 검색서비스에서 'A'를 입력할 경우 '○○○, ○○○, ○○대학교' 등의 검색어 추천이, '○○○'를 입력할 경우 'A, ○○○, 세븐데이즈, 동아일보, 개똥녀' 등의 검색어 추천과 함께 원고의 사진, ○○○의 유서, 영정사진, 미니홈피사진 등의 이미지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원고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등) 및 ○○○의 사건을 이슈화하도록 촉구하는 네티즌 미니홈피, 클럽 등의 글들이 게시되었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제공하는 개인 미니홈피서비스인 '싸이월드' 내 ○○○의 미니홈피에는 이 사건 게시물을 비롯하여 ○○○ 명의로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못한 딸의 어머니로 부탁드립니다(1279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49제를 준비하며' 등 ○○○ 유가족들이 게시한 글들과 방문객이 올린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다수 게시되었고, ○○○, ○○○, ○○○ 등 많은 다른 싸이월드 회원들의 미니홈피에도 위 ○○○의 미니홈피에서 옮겨온 게시물들 및 원고의 사진, 이름, 학교, 전화번호, 전자메일계정, 회사 등의 정보가 게시되었다.

4) 피고 야후코리아

가) 피고 야후코리아가 운영하는 '야후'의 뉴스서비스란에 다음과 같은 뉴스 기사가 게시되었다.

(1) 2005. 5. 11. 18:54경 '내딸이 자살한 사연 모정에 네티즌들 와글와글' 이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자 ○○○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2) 같은 달 12. 02:53경 '자살한 내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나) 피고 야후코리아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A'를 검색할 경우 원고의 사진, 사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 등과 함께 ○○○를 네티즌추천검색어로 추천한 내용이, '○○○'를 입력할 경우 ○○○에 대한 기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의 호소문, ○○○의 사진 및 영정사진, 원고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블로그 또는 클럽 주소 등의 검색결과가 표시되었고, 지식검색서비스란에서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 원고에 대한 신상 정보가 표시되었다.

다) 피고 야후코리아의 블로그서비스란에서는 블로그 중에 원고에 대한 비난의 글과 ○○○의 미니홈피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되었다.

마. 피고들의 삭제 조치

1)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16.경부터 원고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고, 2005. 7. 8.경 원고와 ○○○의 실명에 대한 검색결과 중 지식iN과 웹 영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후 그 일시경부터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원고와 관련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2)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쿠키뉴스 ○○○ 기자의 기사를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편집판에 올리고 댓글창을 개방한 지 3시간여 후 그 댓글에서 네티즌들이 싸이월드 ○○○ 홈페이지에서 밝혀낸 A 실명을 밝히고 비판하기 시작하자, 위 기사를 편집판에서 내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삭제하였다. 이후 네티즌들이 위 피고의 토론방 서비스, 카페 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을 연속하여 게재하자, 위 피고는 원고 및 ○○○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린 글을 찾아 삭제하였다.

3) 피고 B3은 2005. 5. 7. ○○○ 미니홈피에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K' 군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상히 여겨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같은 달 8. ○○○ 유가족에게 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위 미니홈피를 자진 폐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타 회원들의 미니홈피의 게시물들을 찾아 삭제하였다. 2005. 5. 21.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김재춘에 의하여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는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그 중 2건이 위 피고에 의해 삭제되었다. ○○○의 위 미니홈피는 2005. 7. 27. 자진폐쇄되었으나, ○○○은 그 이전인 같은 해 7. 14. 위 피고의 미니홈피 서비스 내에 자신 명의의 미니홈피를 개설하여 위 ○○○ 미니홈피 내의 게시물을 옮겨와 게시하였다가, 같은 달

25. 위 피고에 의하여 사용중지 되었다.

4)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5. 9.경부터 뉴스서비스 영역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인 위험이 큰 댓글들을 삭제하였고, 2005. 7. 8.경부터 커뮤니티와 지식검색서비스 내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신상에 관련한 게시물을 삭제하였다(위 피고가 자신의 뉴스 서비스란에 처음 원고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한 것은 2005. 5. 11.인바 그 이전에 삭제된 댓글들은 원고와 무관한 기사에 원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덧붙인 댓글들이므로 보인다).

바. 원고의 삭제 요구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 이문원을 통해서 피고 엔에이치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피고 야후코리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면서 1.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2. 관련 추모, 안티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3.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사.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서비스 제공 방식

1) 회원제 운영 방식

피고들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포털사이트 회원 약관은 이용자들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약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뉴스서비스 운영 방식

가) 피고들은 그 운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신문사 등과 뉴스 기사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공자들로부터 유, 무상으로 뉴스 기사를 제공받는다. 위 계약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보장하고, 피고들은 정보제공자의 요청 없이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전송된 뉴스 기사는 실시간으로 피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네티즌들이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상태에 제공된다.

다) 피고들은 전송받은 기사들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시의성, 속보성, 영향성 등의 자체

기준에 따라 뉴스 기사를 선별하여 뉴스서비스 초기화면에 배치하는데, 이때 노출되는 기사 수를 늘리거나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라) 피고들은 뉴스 기사의 하단에 댓글창을 열어 네티즌들이 짧은 의견을 덧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

가) 피고들은 자료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된 웹문서,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현출되도록 하되, 네티즌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검색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⁶⁾

나) 피고들이 제공하는 지식검색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이 지식검색서비스란에 질의를 게재하면 다른 네티즌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댓글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방식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회원은 카페, 클럽,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포털사이트들은 포털사이트 이용약관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 이용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가) 회원은 자유롭게 카페, 클럽 등의 동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고,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가 음란물 게시, 타인비방, 범죄행위 등 불법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나) 커뮤니티 운영은 자율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자 사이에서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커뮤니티 서비스의 개설자 및 이용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커뮤니티 서비스 내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부정기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회원 약관 또는 커뮤니티 약관 및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커뮤니티 이용 금지, 강제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6) 예를 들어, 성인 대상의 검색시스템에서는 검색어 '바다'는 가수 '바다'와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나, 미성년 대상의 그것에서는 일반명사인 '바다'가 더 우수한 검색결과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 회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를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이용 현황

가) 피고 엔에이치엔의 경우 2006. 8.말을 기준으로 2,300만명의 회원이 있고,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블로그는 700만개, 신규 블로그의 수는 하루 2만 개 가량이며, 200만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매일 4,000여개의 카페가 생성되고 있다. 2005. 11. 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1,2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470만명이다.

나)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2006. 7.경 약 3,80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고, 1일 당 300만개의 게시물이 새로 생성되고 있으며, 625만개의 카페에 4,300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위 피고의 커뮤니티 서비스 내에 150만개의 블로그가 존재한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1,0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330만명이다.

다)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닷컴의 경우 2006. 8. 31. 회원수(미니홈피)는 1,876만 여명이고, 108만 개 클럽이 있다. 네이트의 경우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9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100만명이다.

라) 2005. 5. 31.을 기준으로 피고 야후코리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된 클럽 수는 100,271개이고 순이용자는 1,042,124명이다. 한편, 2006. 7.경 위 피고의 포털 사이트 내에 개설된 블로그는 3,312,441개이고, 2,737,467명의 회원이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05. 11.경 기준으로 1일 방문자수는 450만명이고, 1일 뉴스 방문자수는 140만명이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가) 관련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역무제공의무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의 특성

(1) 인터넷은 종래의 언론매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사용자가 능동적인 정보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소유와 접

근이 제한적이었던 종래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컴퓨터, 모뎀, 전화선이나 케이블과 인터넷서비스 공급자만 있으면 거의 비용없이 전세계 컴퓨터와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정보의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공적 담론에의 민주적 참여를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힘의 불균형을 다소 해소하여 주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최초의 민주적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인터넷의 순기능과 더불어 인터넷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신문, 방송 등 매체에 비하여 명예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종래의 언론매체는 제한적 공간과 높은 접근비용 때문에 정보의 취사선택이 강요되나,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발신이 용이하고 개인 컴퓨터의 개별적인 작업의 형태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떨어뜨리고 억제력을 약화시킨다. 중앙통제장치가 없고 속도를 중요시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대부분의 정보가 검열 또는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 또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동일성이 실명이 아닌 인터넷상 명칭인 ID로 식별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쉽게 가질 수 있고, 인터넷을 현실세계의 담론을 구속하는 제한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영역으로 비유하는 논평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또한, 무제한 정보 복제가 가능한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일단 전파된 정보를 사후에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또는 가상 집단따돌림(cyber bullying)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크다.

(3) 따라서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이 커졌음에도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지켜져야 하는 점,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발생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실명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누

구라도 포털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인터넷의 이용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역무를 이용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적인 판단에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이 이루어져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에 대하여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염려가 있는 점,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단지 신고함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표현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자신들의 뉴스 서비스란을 통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5. 12. 09:48 경 위 피고 운영의 뉴스 서비스란에 조선일보 기자 ○○○의 기사, 같은 날 13:28경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같은 달 14. 09:54경 스타뉴스 기자 김△△의 기사를 연속하여 올리고, 네티즌들이 위 기사들에 원고의 실명 등의 정보를 댓글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5. 5. 8. 쿠키뉴스 김◇◇ 기자의 기사를, 이어 같은 날 쿠키뉴스 기자 ○○○의 기사를, 같은 달 11. 조선일보 기자 ○○○의 기사를, 같은 달 12.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연속하여 게시하였고,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2005. 5. 13. 스타뉴스 기자 설명불상자의 기사를 게재하여, 거기 400건이 넘는 많은 댓글들을 통하여 원고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도록 하고, 이어 같은 달 31. 노컷뉴스 이○○ 기자의 기사를 게시하였으며, 피고 야후코리아는 2005. 5. 11. 조선일보 기자 ○○○의 기사를, 같은 달 12.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각 게시하였다. 위 기사들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의 기사와 김◇◇의 기사에는 ○○○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 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미니홈피의 초기화면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와 ○○○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에서 말하는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댓글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정보

를 얻거나 그 기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피고들로서는 위 기사들로 인하여 사인인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망 ○○○ 또는 ○○○과 관련한 원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기사들 중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원고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게시하였다 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의 실명, 미니홈피의 주소, 또는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하여 쉽게 원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사들이 가리키는 '김' 모씨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 뉴스서비스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뉴스 기사를 공급받아 이를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고 있고, 뉴스서비스 담당자는 제공받은 기사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이용자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는 등 최소한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을 뿐 기사를 수정, 삭제, 편집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뉴스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편집판'이라 불리는 주요화면(뉴스홈, 정치 면, 사회면, IT면 등)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따라서 비슷한 범주의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편집판에 오르는 주요 기사는 제각기 다르다), 편집판의 제한적 공간 및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더구나 포털사이트는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기사 제작자인 언론사와 사이에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사 하나만 게시되나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언론사로부터 송

부되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된 채 남아있는 기사가 아니라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편집판에 올리기 위하여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한 기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한 기사가 네티즌들의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티즌이 분야별 뉴스란을 통하여 위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원고의 신상정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고,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적극 게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 불법적인 내용의 표현물이 너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삭제 요청, 해당 커뮤니티 활동 정지 등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에게 해당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서 이용자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가치중립적인 서비스에 불과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 카페, 클럽 등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1인 미디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게시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 또는 게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색 서비스의 경우 비록 피고들이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이른바 금칙어 설정⁷⁾(“A”나 “OOO”라는 한 단어로 금칙어로 설정하면 동명이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도 차단될 것이므로, “A”로 검색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A에 대한 정보 중 “A+OOO”, “A+자살”, “OOO+자살”의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는 차단되도록 조건을 설정하면 원고와 관련한 정보의 검색만이 차단될 것이고, 이와 같이 설정하는 데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

7) 특정 낱말을 선정하여 그 낱말로는 검색을 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낱말을 이용하여 검색하려 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성인인증 등)를 거치게 한다든지 검색결과를 제공하되 그 낱말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결과를 제공을 하지 않게 됨.

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원고에 대한 게시물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쉽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네티즌에게 알려주는 등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물들이 확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3)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네티즌들이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정보를 전파하는 이용현실을 고려할 때, 시간, 장소에 있어서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행위가 경합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057 판결), 피고들은 제각기 관리,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영역을 통하여 각자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비록 네티즌들이 피고들의 포털사이트 영역을 넘나들며 정보를 교환하였거나 피고들이 기사를 게재한 시기가 근접해 있고 그 기사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뉴스 기사 등 게시물의 수와 그 표현 정도, 포털사이트의 규모,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게시된 미니홈피가 개설된 포털사이트 여부, 피고들의 자체 삭제 노력의 정도에 다다,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이 처음 인터넷에 게시된 때로부터 두 달 가까이 경과하고 이미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위 게시

물을 접한 이후인 2005. 6. 27.경에야 피고들(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외)에게 구체적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고 원고와 관련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데 그친 점,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다른 네티즌들에게 전파한 네티즌들,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거나 원고의 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장소를 부주의하게 노출한 기사 작성자들 등 원고의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 또는 확대되는 데 기여한 다른 여러 관계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로 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은 5,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는 각 4,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나 원고의 집, 직장, 학교에 원고를 비난하는 전화를 하고, 원고의 직장이나 학교의 홈페이지에 원고를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원고가 다니는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05. 5. 6.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였으며, 또한 네티즌들의 협박으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원고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소득으로 246,244,942원, 일실퇴직금으로 10,372,081원, 학비로 3,543,000원, 이사비용으로 1,150,000원, 치료비로 962,948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회사를 퇴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첫 뉴스 기사가 게시된 2005. 5. 8.보다 앞선 2005. 5. 6.인 점, 피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뉴스 기사 등 표현물이 게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 네티즌들이 원고의 회사, 학교 등에 전화하여 퇴사, 자퇴를 종용하고 원고에게 피해를 가할것을 협박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피고 엔에이치엔은 5,000,000원, 피고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는 각 4,000,000원,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05. 9. 26.부터 피고

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최 영 통
판 사 오 규 희
판 사 황 재 호

□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종전과도 아닌 범죄경력을 보도한 경우 공공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7. 6. 1.자 판결 (2004다61372)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7년 6월 1일 연예인 주○○이 에스비에스와 제작 담당 PD, 일요신문과 소속기자,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우먼센스)와 소속기자,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레이디경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 서울문화사와 소속기자에 대하여 각자 1천만원, 경향신문사에 대하여 3천만원, 일요신문사와 소속기자에게 각자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에스비에스와 제작담당 PD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 에스비에스는 2000년 11월 22일 저녁에 방영된 SBS TV 『한밤의 TV연예』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여대생의 진술이 2차례에 걸쳐 번복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재수사명령을 내려 경찰이 현재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방영하였고, 위 보도내용과 더불어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습, 원고와의 인터뷰, 담당경찰관과의 인터뷰, 사건현장, 강○○로부터 채취한 체액샘플 등의 화면을 함께 방영하였다.

피고 일요신문사는 2000년 12월 3일자 일요신문에 「주○○의 그 여대생 6시간 눈물 대고 백」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고, 2001년 1월 14일자 일요신문에 「여자 출선 사람 '마담뚜'가 왜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피고 서울문화사는 우먼센스 2001년 2월호에 「'성폭행혐의' 주○○, 보석출감 후 처음으로 밝히는 '그때와 지금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위 강간치상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피고 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심문내용 및 원고가 그동안 폭력으로 3차례에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경향신문사는 레이디경향 2001년 1월호에 「방송인 주○○ 씨 성폭행으로 고소한 K씨의 통곡 고백, 폭행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세상여론이 저를 꽃덀으로 몰아 두 번 죽이던군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여성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원고가 그동안 폭력으로 3차례에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이 원고 주○○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과거 폭력 전과나 대마관리법 위반의 범죄경력을 보도한 것에 대해, 기사的主된 보도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과 동종의 전과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경력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1집 106~121면 참조, 2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 226~240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4다6137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 ○ ○

소 송 대 리 인 : 변호사 이재만, 고유창

피 고, 피 상 고 인 :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대표이사 송도균

2. 이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문 선 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3.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신 상 철

4. 백 ○○

5.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조

6. 김 ○○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 형 석, 조 우 성, 김 남 희

7.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조 용 상

소 송 대 리 인 : 변호사 강 병 국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55334 판결

판 결 선 고 : 2007. 6. 1.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피고 백○○,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피고 김○○,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 3764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인터뷰 형식의 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 다음, 별지2, 4 기재 각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은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파렴치범임에도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은밀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였다는 인상을 주었고, 별지3 기재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가 평소에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여자를 만나 성적 접촉을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2, 3, 4 기재 각 기사의 게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한 사실인정과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별지5 기재 기사 중 원고의 범죄경력을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 기사의 주된 보도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과 동종의 전과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경력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그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별지1 기재 보도에 관하여, 위 방송 중 '정액샘플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자막을 방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을 위한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피고 이○○의 노력이나 보도의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자신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편 별지2, 4, 6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피고 백○○, 피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위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체의 특성이 보도의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 또는 월간지여서 사실확인의 요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도 정확한 사실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이 위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그 판단에 위법성 조각사유인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별지2 내지 6 기재 각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기사 제목의 내용과 크기 및 표현방법의 선정성, 보도문의 형식과 내용, 크기, 원고의 입장을 반영한 정도, 보도 횟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를 전·후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그리고 별지6 기재 기사의 보도 시점이 기소 후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한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상당성' 판단에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국회의원 욕설 보도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자 판결 (2005가합9832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13일 국회의원 주성영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발행인, 편집국장, 소속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오마이뉴스는 2005년 9월 23일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중업원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공간이 비좁고 서비스가 나쁘다며 여중업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같은 날 「주의원의 술 추태는 ‘상습’이라는 제목의 기사, 같은 날 「지역 여성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 2005년 9월 25일 「주성영 의원 성적 언어폭력 사실 오마이뉴스 보도보다 더한 욕도 해라는 제목의 기사, 같은 날 「사건은 주성영의 ‘성적 폭언’서 출발, 격분한 정검사 “자기방어 해야겠다”라는 제목의 기사, 2005년 9월 26일 「주성영 의원의 폭언은 모두 사실, 여당의원들 해명은 80%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기사, 2005년 9월 27일 「주성영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 2005년 9월 28일 「일단 잡아떼고 남에게 책임전가... ‘98년 전주’와 ‘2005년 대구’는 닳은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원고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위 각 기사와 성명서의 내용은 모두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98321(본소) 손해배상(기)
2006가합771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주 성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피 고 : 1. 오 연 호

2. 서 ○ ○

3. 이 ○ ○

4. 김 ○ ○

5. 김 ○

6. 박 ○ ○

7. 조 ○ ○

피고 1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세

담당변호사 한 상 혁

피고(반소원고) : 윤 ○ ○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배 삼 희

변 론 종 결 : 2007. 5. 23.

판 결 선 고 : 2007. 6. 13.

주 문 :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오연호, 서○○, 이○○은 연대하여 30,000,000원, 피고 김○○, 김○, 박○○, 조○○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윤○○은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200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오연호, 서○○, 이○○, 김○○, 김○, 박○○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 오연호, 서○○, 이○○, 김○○, 김○, 박○○ 조○○은 각자 160,000,000원,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

한다) 윤○○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 오연호는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Ohmynews, 웹사이트 주소 <http://www.ohmynews.com>)의 발행인, 피고 서○○은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 피고 이○○, 김○○, 김○○, 박○○, 조○○은 오마이뉴스의 기자들이며(다음부터 피고 오연호, 서○○, 이○○, 김○○, 김○○, 박○○, 조○○을 모두 합쳐 ‘피고 오○○ 등’이라 한다), 피고 윤○○은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대구여성회의 사무국장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05. 9. 22. 23:00경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후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및 정선태를 비롯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현○○이 운영하는 ‘럭셔리’ 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공간이 비좁고 서비스가 나쁘다며 현○○에게 욕설을 하였다.

(2) 현○○은 그 날 밤 럭셔리바의 사장인 서◇◇에게 “평소 정중하게 대해주던 원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기분이 상했다”고 이야기하였고, 서◇◇은 이를 이△△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측근인 이□□에게 전했다. 서◇◇과 이□□는 현○○에게 원고의 폭언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할 것을 권하였다.

(3) 피고 이○○은 2005. 9. 23. 14:00경 열린우리당 대구시 홍보팀장 이□□으로부터 “원고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원, 검사들과 어울려 술을 먹고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매일신문,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함께 현○○을 찾아가 인터뷰하였는데, 현○○으로부터 “원고가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다. 오마이뉴스의 이 사건 각 보도 내용

(1) 오마이뉴스는 2005. 9. 23. 17:30경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태어

나서 그런 욕 처음”)이라는 제목 아래 “각테일바 여사장 H씨(현○○을 지칭함)는 23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는 요지의 별지1 기재 기사를 오마이뉴스의 메인화면에 게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2) 같은 날 <주의원의 술 추태는 ‘상습’>이라는 제목 아래 “애주가로 소문이 나 있는 주의원은 1998년 검사로 재직 당시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적이 있고, 1991년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당직 경찰관에게 ‘앉아’와 ‘일어서’를 시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요지의 별지2 기재 기사를 이 사건 제1기사 하단부에 게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3) 같은 날 <지역 여성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제목 아래 “피고 윤○○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면서 ‘성희롱 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요지의 별지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 피고 이○○이 이 사건 제1, 2, 3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5. 9. 25. <주성영 의원 성적 언어폭력 사실 오마이뉴스 보도보다 더한 욕도 해>라는 제목 아래 “주의원이 술집 종업원들에게 성적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또 다른 술자리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문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열린 우리당 의원 세명은 주의원의 언어 폭력이 사실이었으며, 그 중 한 의원은 ‘주의원이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성적 언어 폭력보다 더 심한 욕도 했다’고 말했다. ... (중략) ... 주의원은 술집 주인을 성희롱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검찰청 J차장이라고 물귀신 작전으로 몰고 들어가면서 교묘하게 현장 ‘알리바이’를 주장했다”는 요지의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피고 김○, 박○○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4기사’라 한다).

(5) 2005. 9. 25. <사건은 주성영의 ‘성적 폭언’서 출발, 격분한 정검사 “자기방어 해야겠다”>는 제목 아래 “문제의 술자리에 있었던 참석자들 중 주성영 의원을 제외한 3자(L각테일바 사장 H씨, 정검사, 열린 우리당 의원들)가 주성영 의원이 성적 폭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요지의 별지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피고 김○○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5기사’라 한다).

(6) 2005. 9. 26. <주성영 의원의 폭언은 모두 사실, 여당의원들 해명은 80%가 거짓말>이라는 제목 아래 “22일 밤 ‘술자리 추태’ 사건이 벌어졌던 L각테일바 H사장(여)은 이번 사

건의 발단이 됐던 주성영 의원의 추태가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 H사장은 23일 기자와 만나 '주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오마이뉴스는 이를 가감 없이 보도했다. ... (중략) ... H사장은 25일 밤 9시 30분경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같이 밝혔다. ... (중략) ... H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밝힌 이같은 내용은 '진실 논란'이 일었던 주성영 의원의 '성적 폭언'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이라는 요지의 별지6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피고 이○○, 김○○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6기사'라 한다).

(7) 2005. 9. 28. <일단 잡아떼고 남에게 책임전가... '98년 전주'와 '2005년 대구'는 님은꼴>이라는 제목 아래 "주의원은 1998년 검사로 재직중 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를 때려 중상을 입혔을 때도 '말다툼이 있었을 뿐 폭력은 없었다'로 일단 부인했는데, 이번 사건의 대처방식도 그 때와 흡사하다며, 주의원은 문제가 생기면 ①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 ② 내 탓이 아닌 네 탓으로 돌리며, ③ 지역정서를 활용한다"는 요지의 별지7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피고 조○○이 기사의 작성자로 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7기사'라 한다).

(8) 2005. 9. 27. <주성영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는 제목의 별지8 기재 성명서를 게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제8기사'라 한다).

라. 피고 윤○○의 성명서 작성 등

(1) 피고 윤○○은 2005. 9. 23. 점심 무렵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주성영 의원이 국정감사 후 술자리에서 술집 여사장이인 현○○을 성희롱하였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현○○을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현○○에게 전화하여 "전날 밤 주성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나자"고 하였는데 현○○으로부터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2) 피고 윤○○은 같은 날 저녁 20:00경 피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대구여성회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먼저 현○○을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겠으며, 현○○이 성적 언어 폭력을 당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 윤○○은 2005. 9. 24. <주성영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 아래 "주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성희롱을 하였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게 하는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였다”는 요지의 대구여성회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 명의의 별지9 기재 성명서를 작성하여 대구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

마. 그 이후의 정황

원고는 2005. 9. 27. 국회에서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이비 황색 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이라고 말하고, 피고 이○○, 김○, 윤○○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1심에서 피고 이○○, 윤○○은 유죄판결을 받고, 피고 김○은, 위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4기사는 사실은 오마이뉴스의 정치부장인 김△△가 피고 김○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편집하여 게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피고 이○○, 윤○○, 김○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가 1호증(일부), 을나 1, 2호증, 을나 4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나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윤○○은, 피고 윤○○이 허위내용의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성명서는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등 단체 명의로 발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현○○에게 단순한 욕설을 하였을 뿐 성적 폭언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 오연호 등은 “원고가 현○○을 성희롱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현○○ 및 이 사건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국회의원들도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피고 윤○○은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검사를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제1, 4, 5, 6 기사의 경우

이 사건 제1, 4, 5, 6 기사는 원고가 현○○에게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며 추태를 부려 현○○으로 하여금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목격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기사 중 'B검사는 사건 다음날인 23일 오전 H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부분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H씨에게 대신 사과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라고는 보기 힘드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제2, 7기사의 경우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술을 마신 후 추태를 부린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제7기사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기사는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제3기사의 경우

원고는, 피고 윤○○이 피고 이○○에게 "원고가 여종업원을 성희롱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성희롱은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 이○○으로 하여금 원고의 성희롱을 기정사실화하는 이 사건 제3기사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윤○○, 이○○은 위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에는 피고 윤○○이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고, '지역여성계는 이 사건

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여종업원을 면담한 후 대처하겠다'는 여성계의 원론적인 입장을 취해한 것으로 보이고, '성희롱은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기사가 원고의 성희롱을 기정사실화하였다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제8기사의 경우

위 기사의 요지는, "원고는 2005. 9. 27. 국회에서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이비 황색 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조작'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국정감사 기간 중의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비판여론 등을 모면하고 원고가 주장해온 음모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기사는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에 무게를 둔 글로서,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의 본질은 오마이뉴스의 조작극으로 그 배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폭언을 하였다는 것(비록 오마이뉴스가 원고의 '폭언'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그 표현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감시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인 소명이자 책무이며 술자리 추태를 고발한 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견제 비판 기능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성명서의 경우

이 사건 성명서는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하고, 그 후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 내지 7 기사와 이 사건 성명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및 성명서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체적

으로 보아 그 적시된 내용이 진실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기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원고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3) 공공성

이 사건 제1, 4, 5, 6 기사와 이 사건 성명서는 공적 인물인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추태를 부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제7기사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각 기사와 성명서의 내용은 모두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진실성 또는 상당성

(가) 이 사건 제1, 4, 5, 6 기사에 대하여

먼저,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가 3호증의 1, 2, 을가 4호증의 1, 10,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에

서 현○○에게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가 3호증의 1, 을가 4호증의 10,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이 2005. 9. 25. 피고 이○○에게 이를 재확인해주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 역시 이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는 부분 역시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과 현○○의 9. 25.자 전화통화는 주로 현○○이 9. 23.자 기사(이 사건 제1기사)의 80%가 거짓말이라면서 기사 내용에 항의하는 내용이었고, 현○○이 피고 이○○에게 “주성영 의원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 등 성적 폭언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재확인해 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 오○○ 등이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다’는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을나 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이 다른 언론매체 기자들과 함께 2005. 9. 23. 15:00경 현○○을 인터뷰하면서 “전날 있었던 술자리에서 주성영 의원이 눈만 마주치면 심한 욕설을 하였고, 태어나서 그런 욕설은 처음 들었으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성영 의원이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도 하였느냐”고 물었는데 현○○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현○○은 2005. 9. 25. 저녁 9시 30분경 피고 이○○과 통화하면서 “주성영 의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보다 더한 말이 있었는데 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가 1, 2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가 4호증의 2, 3, 4, 을가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현○○은 2005. 9. 23.자 인터뷰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한 사실, ② 피고 이○○은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주성영 의원이 계속하여 여성의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술집 여사장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기사를 작성 게재하였는데, 당시 욕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원고는 물론 술자리를 같이 하였던 다른 국회의원이거나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등 목격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 ③ 피고 이○○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연합뉴스, 매일신문 기자의 경우 성적 폭언은 제외하고 단지 ‘주성영 의원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이○○은 2005. 9. 26. ‘술집 여사장이 주성영 의원의 성적 폭언을 재확인 해주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6기사를 작

성하였는데, 이에 앞서 2005. 9. 25. 15:00경 당시 술집에서 상황을 목격한 이△△을 인터뷰 하면서 이△△으로부터 9. 23.자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는 단순한 욕설을 하고 성희롱은 정선태 검사가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이를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 ⑥ 오마이뉴스 정치부장 김△△는 2005. 9. 25. 피고 박○○에게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인 이원영, 선병렬, 정성호, 최용규 의원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피고 박○○은 위 국회의원들에게 원고의 당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정보보고에도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⑦ 피고 김○은 같은 날 오전 정성호 의원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15:00경 오마이뉴스 정치부 정보보고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술자리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부분은 정성호 의원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정선태 검사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하는 취지임을 표현한 사실(정성호 의원은 이 사건 술자리에 뒤늦게 참석함), ⑧ 김△△는 피고 김○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이 사건 제4기사 중 ‘A의원(정성호 의원을 지칭)’ 부분을 작성하고,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인 피고 서○○의 전언(피고 서○○은 다른 국회의원으로부터 “선병렬 의원이 ‘원고가 이 사건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을 토대로 위 기사 중 ‘B의원(선병렬 의원을 지칭)’, 부분을, 피고 박○○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C의원(최용규 의원을 지칭)’ 부분을 작성한 뒤 이를 종합하여 피고 김○, 박○○의 공동 명의로 위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사실(그러나 김△△는 피고 김○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정성호 의원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A의원 관련 부분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박○○의 정보보고 내용과 다르게 선병렬, 최용규 의원으로부터 술자리 당시 원고의 언행에 관하여 확인한 것처럼 B의원, C의원 관련 부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보도의 경위 및 특히 ‘성적 폭언’과 같이 보도되었을 경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취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확인 작업과 노력이 보도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오○○ 등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기사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제2기사에 대하여

먼저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년 전주지검 검사로 재직 당시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4주의 중상을 입히고, 1991년 춘천지검 재직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

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당직 경찰관에게 ‘앉아’와 ‘일어서’를 시켜 물의를 빚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국정감사 기간중에 피감기관의 간부들과 가진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기사는 대체로 진실하다고 보이고, 위 기사 중 원고의 술 추태를 ‘상습’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기사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7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현○○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적 폭언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취지의 위 기사 역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하다고 여길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위 기사에는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오마이뉴스의 일련의 기사의 취지는 원고가 단순한 욕설의 차원을 넘어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위 기사 역시 원고가 여성에게 성적 폭언을 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성명서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현○○에게 성적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성명서 중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성적 폭언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는 부분 역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8호증의 2, 을가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선태 검사는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이 사건 술자리 다음날 현○○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부분’은 허위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윤○○이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피고 윤○○이 2005. 9. 23. 점심 무렵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사장한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사를 보내서 현○○을 만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현○○에게 전화하여 “전날 밤 주성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추태를 부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나자”고 하였는데 현○○으로부터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나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은 같은 날 저녁 피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제1기사는 현○○의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 이○○을 비롯한 몇몇 기자들로부터 “현○○과 검사가 이 사건 술자리 다음날 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나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윤○○은 당시 제보자의 신원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현○○으로부터도 구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하였는지, 실제로 검사를 만났거나 어떤 목적으로 검사를 만났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성명서의 작성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윤○○에게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따라서, 이 사건 제1, 4 내지 7기사와 성명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위법하게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4 내지 7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피고 오연호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성명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피고 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4기사의 실제 작성자가 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 9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는 피고 김○, 박○○의 정보보고를 토대로 위 기사를 작성하였고, 오마이뉴스에서는 여러 기자가 올린 정보보고를 편집하여 기사를 작성할 때 원래의 정보보고자를 기사 작성자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고, 정보보고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때 정보보고를 올린 기자에게 기사로 올려도 되느냐는 확인을 거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김○, 박○○도 그 작성자로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김○, 박○○도 이 사건 제4기사의 게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제1, 4 내지 7 기사와 이 사건 성명서의 제목과 그 내용, 그 표현방법과 기사의 크기 및 위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성적 폭언에 관한 내용인 점, 다만 위 각 기사와 성명서는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감시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쓰여졌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오연호, 서○○, 이○○이 배상할 금액은 30,000,000원, 피고 김○○, 김○, 박○○, 조○○이 배상할 금액은 위 금원 중 3,000,000원, 이와 별도로 피고 윤○○이 배상할 금액은 5,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윤○○의 주장

피고 윤○○은, 원고가 2005. 9. 24.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건의 전모는 왜곡되었고, 이 사건 배후에는 추악한 정치음모가 있다. 윤○○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언론에 이 사건을 알렸으며, 윤○○은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 출마준비중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인 이△△과 절친한 관계이고,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으로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에 이 사건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여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있어야 할 시민단체의 간부인 위 피고가 마치 특정정당과 연계되어 선거 활동에 개입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위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5. 9. 24.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기자회견에 대한 피고 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가 2005. 9. 27.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개인의 인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남모 비서관의 부인인 대구여성회의 간부 윤모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유포했다. 원고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달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려는 이△△ 전 청와대 수석과 가깝고, 이 사건의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피고가 원고의 2005. 9. 27.자 신상발언을 문제삼는 취지로 선행하여 살펴본다.

위 발언의 요지는 ‘위 피고 등이 이 사건을 언론에 유포하고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데에는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의 표명 또는 의혹의 제기해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정치적 의도는 그 성질상 이를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나 3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 동구갑 지역구의 야당 국회의원인 사실, 이 사건 당시 대구 동구를 재보궐선거가 근접해 있었고 이△△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준비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열린우리당 대구시 홍보팀장이 피고 이○○을 비롯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하였으며, 이△△의 측근인 이□□ 등이 현○○에게 원고의 폭언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현○○의 2005. 9. 23.자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사실, 시민단체의 간부인 위 피고가 제보자 등에 대한 별다른 사실 확인도 없이 '원고가 여성을 성희롱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제보 받은 다음날 바로 작성 배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위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자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홍보팀장과 이△△의 측근인 이□□ 등은 이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피고의 남편의 지위 등과 연관하여 위 피고의 정치적 의도 등을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오연호, 서○○, 이○○은 연대하여 30,000,000원, 피고 김○○, 김○○, 박○○, 조○○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피고 윤○○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1, 4 내지 7 기사의 게재일 및 이 사건 성명서의 배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5.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최인화

〈별지〉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마치 원고가 예정된 피해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자 판결 (2006가합8882)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13일 전 국무총리 이해찬이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넷신문 프런티어타임스는 2005년 12월 27일 13:10경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그날 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으면서 양주가 아닌 복분자주를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보도대상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

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1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12)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8882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해 찬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영 태

피 고 :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203호

대표이사 최 양 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용 석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6. 13.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05. 12. 27. 13:10경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 하였다. 위 기사는 네이트, 드림위즈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까지 게재되었고 위 기사에 수백 개의 비난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나. 기사게재 이후의 피고의 대응

그 후 피고는 원고측의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는 위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하고 같은 날 17:00경에는 “프린티어타임스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프린티어타임스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전북 정읍의 폭설피해현장 확인차 정읍 촌식당에서 피해보고를 받은 뒤 시, 군, 경 관계자들과 ‘양주파티’를 벌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 날 식탁에 오른 술은 양주가 아니라 복분자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측에 따르면, 이총리는 정읍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주를 마신 사실이 없으며 저녁식사자리에 놓여있는 병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와 음료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였다.

다. 보도대상사건 발생당시의 정황

한편, 원고는 2005. 12. 21. 당시 국무총리로서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는데, 당초 일정에는 16:20경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17:10경에는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18:40경에는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각 보고받고 19:30경 정읍시 소재 초원식당(기사 속 촌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찬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원고 일행은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쪽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50분 늦은 19:20경에야 정읍역에 도착하게 되어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받기 어렵게 되자, 현장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초원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과 지역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정읍역을 출발하여 23:55경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측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원고 일행은 이를 반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까지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마치 원고가 폭설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예정된 피해현장시찰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고 즐긴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공익성 및 상당성 인정여부

피고는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사는 보도대상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측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위 기사를 삭제하였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현한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자 판결 (2006가합88420)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13일 살해된 황○○의 가족들이 주식회사 뉴시스,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식회사 뉴시스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고, 주식회사 연합뉴스, 대한민국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뉴시스의 보도에 대해서 “피고 뉴시스 소속 박○○ 기자는 동료기자로부터 입수한 경찰의 내부자료를 기초로 ‘내연녀 살해 30대, 죄책감 자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2005. 6. 2. 11:30경 인터넷상에 게재하였다”면서, “피고 뉴시스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보도자료 및 기사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황○○를 이○○의 ‘내연녀’라고 적시하였는데, 위 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문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

목을 ‘내연녀’로 표현한 이 사건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서 “피고 연합뉴스는 2005. 6. 2. 10:55경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였다”면서, “피고 연합뉴스가 수사기관이 배부한 위 보도자료를 신뢰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행위에 대해서 “살인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 경위의 발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살인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계자가 10개월 전부터 황○○와 사귀어 왔다는 이○○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믿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부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경찰에서 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보도 자료를 작성·배부하였는데,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살인사건의 피의자이던 이○○과 살해된 황○○가 교제를 해 오던 사이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황○○의 유족들은 허위보도로 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보도자료를 작성·배부한 경찰관들과 대한민국 그리고 보도를 한 뉴스사와 연합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88420 손해배상(기)

원 고 : 1. 황 △ △

2. 유 ○ ○

3. 황 ○ ○

4. 황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인 섭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 용 국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이승철, 이병관

2. 최 ○ ○

3. 최 △ △

위 피고들 주소 원주시 봉산동 1105 원주경찰서내 강력팀

4.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대표이사 김 서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 룩

담당변호사 강현구

5.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진 영

변 론 종 결 : 2007. 5. 9.

판 결 선 고 : 2007. 6. 13.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는 원고 황△△, 유○○에게 각 3,000,000원, 원고 황○○, 황◇◇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2.부터 2007.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최○○, 최△△, 주식회사 연합뉴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3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최○○, 최△△, 주식회사 연합뉴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황△△, 유○○는 망 황○○의 부모이며 원고 황○○, 황◇◇는 위 황○○의 동생이고, 피고 최○○, 최△△는 황○○에 대한 살인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원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피고 뉴시스', '피고 연합뉴스' 라고만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에 대한 살인사건을 보도한 언론

기관이다.

나. 살인사건의 발생

대한송유관공사의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은 2005. 5. 31. 00: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1리 740 소재 공터에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세워 두고 위 승합차 안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황○○와 언쟁을 하던 중 황○○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남자들 이야기 하는데 그 문제는 내 인생을 참견하는 것이다.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자는 것에 격분하여 위 차량 뒷자석에 있던 넥타이로 황○○의 목을 감은 후 힘껏 당겨 5분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황○○를 살해하고, 위 승합차량에 황○○의 사체를 싣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소재 37번 지방도에 도착하여 도로에서 약 4미터 떨어진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였다.

다. 이○○의 자수 및 보도자료의 배포 등

(1) 이○○은 황○○를 살해, 유기한 이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며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다가, 2005. 6. 1. 18:30경 원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살해, 유기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당시 수사관계자에 대하여 황○○와 2004. 8.경부터 개인적으로 만나 오던 사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원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은 2005.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배부하였고, 위 수사팀이 2005. 6. 2. 경 작성한 수사보고서(갑 6호증)와 부검의뢰서(갑 7호증)에는 이○○과 황○○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검거일시장소 : 2005. 6. 1. 22:10경

- 피의자 : 경기 ○○시 ○○구 ○동 거주, 회사원 이○○(37세, 남)

- 피해자 : 서울 ○○구 ○○동 거주, 회사원 황○○(22세, 여)

- 개요 : 2005. 5. 31. 00: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소재 6번 국도상 자신 소유의 싼타모 승합차량 내에서, 약 10개월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피해자(같은 회사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경기 양평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이야기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자는 것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운행하던 위 차량을 도로옆에 정차시키고 차량 뒷자석에 있던 자신의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곳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같은면 신복리 소재 37번 지방도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임.

라.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

(1) 피고 뉴시스의 보도

피고 뉴시스 소속 박○○ 기자는 동료기자로부터 입수한 경찰의 내부자료를 기초로 ‘내연녀 살해 30대, 죄책감 자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2005. 6. 2. 11:30경 인터넷상에 게재하였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일 직장 내 여직원을 목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이모씨(34)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국도 차량 안에서 직장동료인 황모씨(22. 여)가 남자친구가 생겨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 목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유부남인 이씨와 숨진 황씨는 직장내 동료로 약 10개월간 사귀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껴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일 원주경찰서에 자수했다.’

(2) 피고 연합뉴스의 보도

피고 연합뉴스는 2005. 6. 2. 10:55경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였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일 직장 내 여직원을 목졸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7. 경기도 안산시)씨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구 소재 모 기업 과장인 이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0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6번 국도 위 차량 안에서 직장 동료 황모(22. 여)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격분, 목졸라 살해한 뒤 3km 떨어진 도로변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부남인 이씨는 숨진 황씨와 같은 직장 내에서 알고 지내면서 지난 10개월여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씨는 범행 하루 뒤인 지난 1일 원주경찰서에 자수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부

(1) 판단기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한 법적 이익으로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은 최소한 죽은 후에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진정으로 보장받는 것이므로, 사자의 인격적 범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사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다만 재산상속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개시되는 이상 그 유족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사자의 인격적 범익이 침해됨으로써 그 유족의 명예, 명예감정,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자의 인격적 범익의 침해와는 별도로 유족 자신의 인격적 범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 최○○, 최△△의 경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최○○, 최△△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부검의뢰서 등에 이○○과 황○○ 사이를 내연관계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수사보고서 등은 수사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적인 업무서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작성행위를 공연하다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하여 황○○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으로 그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범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6. 1. 배부한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이○○과 황○○의 관계에 대하여 약 10개월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사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이 유부남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부로 황○○의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범익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뉴시스, 연합뉴스의 경우

위 피고들의 소속 기자들이 이○○의 살인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상에 각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들은 이○○과 황○○의 관계에 대하여 10개월전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였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고, 나아가 피고 뉴시스의 이 사건 제1 기사는 '내연녀'(내연관계는 남녀가 혼인을 했거나 또는 그 뜻을 가지고 한집에 살기는 하나,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다)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로 황○○의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범익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피고 뉴시스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 기사가 살인사건을 다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위 기사에서 황○○를 ‘황모씨’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황○○를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위 기사에서 적시하는 ‘황모씨’가 원고들의 가족인 황○○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기사에서 원고들이 직접 적시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 이 사건 제1, 2 기사에서 이○○과 황○○의 관계에 대하여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부 및 이 사건 제1, 2 기사의 작성,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 대한민국, 최○○, 최△△는 이 사건 보도자료는 자수한 이○○을 상대로 충분한 수사를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의 기각만을 구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위법성조각항변이라 선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항변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① 일반론

언론매체 등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보도자료 및 이 사건 제1, 2 기사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것이고,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의 수사 및 보도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그 살해 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과 황○○의 관계에 대하여 적시한 부분도 그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② 피고 대한민국, 최○○, 최△△, 연합뉴스

이 사건 보도자료 및 이 사건 제2 기사 중 원고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과 황○○가

10개월전부터 사귀어 왔다'는 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는 갑 4호증, 을 가1 내지 6호증, 을 나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가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수사기관에서 황○○와의 관계에 대하여 2004. 8.경부터 개인적으로 만나온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은 매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황○○의 남자친구 또는 직장 동료로 보이는 고동운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황○○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살해현장인 양평방면으로 갈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 및 보도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그 살해 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살인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 경위의 발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살인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계자가 10개월전부터 황○○와 사귀어 왔다는 이○○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믿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부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고, 피고 연합뉴스가 수사기관이 배부한 위 보도자료를 신뢰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2 기사를 작성, 보도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역시 동일한 이유로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연합뉴스가 작성한 이 사건 제2 기사와 그 보도시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초로 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뉴시스

피고 뉴시스는 위와 같이 상당성이 인정되는 보도자료 및 기사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황○○를 이○○의 '내연녀' 라고 적시하였는데, 을 나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경찰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수사과정에서의 내부분서를 기초로 하여 기사의 제목을 '내연녀'로 표현한 이 사건 제1 기사의 작성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취재 및 기사 작성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제1 기사가 인터넷상에 게재됨으로써 황○○의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뉴시스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기사의 작성, 게재경위 및 그 내용, 원고들과 황○○의 관계, 피고 뉴시스의 언론매체로서의 지위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고 황△△, 유○○는

각 3,000,000원, 원고 황○○, 황◇◇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뉴스스는 이 사건 제1 기사를 작성, 게재한 불법행위자 박○○ 기자의 사용자로서, 원고 황△△, 유○○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원고 황○○, 황◇◇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기사의 게재일인 2005. 6.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6.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뉴스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뉴스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최○○, 최△△, 연합뉴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

허구적인 내용이 퍼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의 경우에는 픽션드라마보다 명예훼손 책임이 가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자 판결 (2005가합79818)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박○○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00만 원의 손해배

상금과 함께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제작, 방영한 드라마 <제5공화국> 제36회분(2005. 8. 27.) “여간첩 수지 김 조작 사건”에서 당시 안기부 특별보좌관이었던 원고 박○○이 안기부 재직 당시 발생한 ‘수지 김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록 그 형식이 다소의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그 드라마가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일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그 내용이 이미 존재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픽션드라마보다 그 명예훼손책임을 가중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방송은 안기부에 의하여 윤○○의 살인사건이 간첩사건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작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협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협조는 위 조작사건을 통하여 노태우의 대권도전을 위한 개헌정국의 타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숨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살인의 희생자를 간첩으로 몬 정치공작행위에 협조하는 등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여부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여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쳐야 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79818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현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2. 고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TV 제작본부

3. 이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드라마국

4. 신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드라마국

5. 임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드라마국 제5공화국팀

6. 김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드라마국 제5공화국팀

7. 유 ○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 드라마국 제5공화국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 영 일

변 론 종 결 : 2007. 5. 16.

판 결 선 고 : 2007. 6. 20.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7.부터 2007.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토요일 오후 9:40경 드라마 시작 직전에,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뉴스보도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

나. 만약 위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기간 안에 위 가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의, 화면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뉴스보도 제목과 같은 크기의 글씨로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2 '정정보도 요구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내용을 원래의 뉴스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라고 한다)에 의한 일명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이하 '수지 김 사건'이라고 한다)' 발생 당시 안기부장 제2특별보좌관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은 2005. 4. 23.부터 2005. 9. 11.까지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40분경 총 41회에 걸쳐 '제5공화국'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를 방영한 방송사인데, 이 사건 드라마는 피고 유○○가 극본을 쓰고 피고 김○○가 연출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제작본부장, 드라마국장 등의 직책으로 그 제작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드라마 36회에서 문제되는 방송내용

피고 문화방송은 2005. 8. 27.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사건 드라마 36회분을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방송분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장면들은 다음과 같다.

(1) 장면 27(안기부장실) : 장세동 이학봉 박○○(안기부장 특별보좌관)이 얘기중

- 박○○ : 기자회견은 8일 아침 9시로 잡았습니다. 미국 일본 등 싱가포르에 있는 각국 주재기자들한테 다 연락을 취했답니다.

- 장세동 : 잘됐구만. 이번 사건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됐어.

이차장, 김□□에 대해서는 알아봤어?

- 이학봉 : 충북 충주 출신인데, 1남 6녀중 둘째 딸이랍니다. 현재 아버지는 죽고, 오빠와 어머니, 여동생들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 장세동 : (듣고 있다)

- 이학봉 : 서울로 올라와서는 공장에서 일도 하고 버스안내양도 한 모양인데, 나중엔 술집에를 나갔고 일본에서 호스티스생활도 좀 한 모양입니다.

암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돈 벌려고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 같습니다.

- 장세동 : 그러면 일본에 있을 때 조총련하고 연결된 거 아냐?

- 이학봉 :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홍콩으로 갈 때는 홍콩인하고 위장결혼을 해서 나간 것으로 밝혀졌습시다.

- 장세동 : (고개 끄덕) 대충 그림이 나오는구만! 박보좌관, 기자회견 차질 없도록 해.

- 박○○ : 예. 모든 조치가 완벽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 장면 29(안기부장실) : 장세동, 방안을 서성대고 있고 이학봉과 박○○은 침통하게 앉아 있다.

- 이학봉 : 이거 어찌지요? 벌써 각하게 보고를 올렸는데.

- 장세동 : 외무부 자식들, 도대체 무슨 일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사기꾼의 거짓말에 놀아서 안기부를 발각 뒤집어놓는 게 말이 되난 말이야!

- 박○○ : 부장님, 당장은 기자회견이 문젍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합니다.

- 장세동 : 취소시켜야지, 별 수 없잖아!

- 이학봉 : 각하게 먼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세동 : (고민) 아 참, 미치겠구만!

(3) 장면 34(안기부장실) : 장세동, 이학봉과 박○○에게 지시를 내린다.

- 장세동 : 기자회견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 이학봉 :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장세동 : 각하의 허락이 떨어졌어. 지금부터 공작을 진행할 테니까, 박보좌관은 나가서 국제1국장 들어오라고 해.

- 박○○ : 예. 알겠습니다. (나가고)
- 이학봉 : 장선배, 정말 괜찮겠습니까?
- 장세동 : 위기는 뒤집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
- 이학봉 : 그러면 망명이 아니라 납북으로 한다 말이지요?
- 장세동 : 미모의 여간첩 수지 김 납북미수사건, 어때?
- 이학봉 : (고개 끄덕이며) 듣고 보이 그럴 듯하네요.
- 장세동 : 북한에서 가만있지 않을 거야. 해외공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자네도 날 도와야겠어!
- 이학봉 : 예. 알겠습니다.

(노크소리)

- 장세동 : 들어와.

(4) 장면 43(노태우의 집 서재/밤) : 노태우, 서류봉투 안에 들었던 문건을 꺼내 살피고 있다.

- 박○○ :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틀로 진행될 겁니다. 보시라고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

- 노태우 : (문건을 보며) 음...! 이런 음모를 꾸미느라고 나를 빼놨구만!
(문건을 봉투 속에 넣고) 그런데 이래도 되겠나? 뒷탈이 없겠느냐 말이다.

- 박○○ : 현재 상황을 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원래 안기부는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 노태우 :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납북시킬라꼬 했다는 거 아이가?

- 박○○ : 장실장이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여간첩 마타하리가 프랑스 정보국의 조작으로 독일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이 간첩이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사회적인 파장은 금강산담 못지 않을 겁니다.

- 노태우 : 하지만도... 생사함을 간첩으로 만든다이!... 이기 들통이나마 결국은 마 정권에 족쇄가 되는 기야. 내사 마, 이래 막 나가도 되나 싶다!

- 박○○ : 형님, 이미 결정난 일입니다. 형님께서도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 노태우 : 뒷탈이 없어야 할کن데 마!...

(5) 장면 58(한정식집) : 노태우와 박○○,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중,

- 노태우 : 요세 장세동이를 세간에서 남산의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면서?
- 박○○ : 예, 뭐 그런 소문이 있나 봅니다.
- 노태우 : 장세동이 이 문디 자숙! 마 식욕이 툇 떨어지네. (순가락 놔버린다)
수지김 사건이다 뭐다 해서 지가 정국을 뒤흔드는 것 같아 아주 기고만장 해 있는 눈치야.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하마 각하의 신임이 더 커질끼고...
이 자숙한테 마 물을 한번 먹이뿌야 될끼데...!
- 박○○ : 장부장이 없었다면 개헌정국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 형님의 대권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려니 생각하시고 맘을 편히 가지십시오.
- 노태우 : 음...! (벼른다)

(6) 장면 60(안기부장실) : 장세동, 이학봉 박○○ 정주년 등을 앞에 놓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

- 장세동 :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 및 복귀가 문제점을 거론치 않고, 국내 정치문제, 88올림픽 등의 행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관심이 희박해졌을 때 방입관리를 하기로 결정한다.

다. '수지 김 사건'의 진상

(1) 윤○○은 1987. 1. 3. 홍콩에서 그의 처 김□□(일명 수지 김)을 살해한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하여 월북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이후 미국 및 한국대사관을 거쳐 안기부로 신병이 인도되었다.

(2)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은 안기부 직원의 첩보를 통하여 윤○○의 월북기도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기부 해외공작국장에게 지시하여 1987. 1. 8. 방콕에서 윤○○으로 하여금 '동거하던 북한공작원 김□□과 조충런계 공작원에 의하여 납북될 뻔하였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게하고, 1987. 1. 9. 윤○○을 입국시켜 김포공항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하였다.

(3) 윤○○은 기자회견 후 안기부 대공수사국에 인계되어 신문을 받던 중 김□□을 살해한 사실과 월북기도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공수사국장은 위 자백사실을 장세동에게 보고하였으나, 장세동은 대공수사국장에게 지시하여 '북한공작원 김□□이 윤○○을 납북하려 하였으나 윤○○의 거부로 실패하였고, 북한은 민간인 납북에 따른 책임을 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김□□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김□□ 살해 사건을 은폐하였다.

(4) 장세동은 1987. 4.경 윤○○을 석방할 때까지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윤○○을 세

되하도록 지시하고, 석방 후에도 안기부 대공수사국 직원들로 하여금 윤○○을 관리, 감시하게 하였다.

(5) 이후 김□□의 유족들은 2000. 3. 9. 윤○○을 살인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법 검찰청은 2001.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을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에게 징역 18년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윤○○에게 징역 15년 6월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6) 김□□의 유족들은 200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14.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총 4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의하여 제작,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안기부 재직 당시 발생한 ‘수지 김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문화방송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2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허구가 결합된 이른바 픽션의 장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사실을 담고 있지도 않으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은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금원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일반적으로 특정인에 관한 드라마가 방송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에서 묘사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드라마의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록 그 형식이 다소의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그 드라마가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일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그 내용이 이미 존재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픽션드라마보다 그 명예훼손책임이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이 사건 드라마의 성격을 사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작가의 상상력이 추가된 팩션(faction = fact + fiction)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드라마가 제5공화국 당시에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그에 관여된 실존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이상 논픽션의 성격을 상당부분 가진 드라마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방송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방송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시청자가 그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문제의 장면들을 전체적, 종합적으로(문제되는 장면을 분리하여 각 장면의 명예훼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함은 부적절해보인다)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은 안기부에 의하여 윤○○의 살인사건이 간첩사건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작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협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협조는 위 조작사건을 통하여 노태우의 대권도전을 위한 개헌정국의 타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숨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살인의 희생자를 간첩으로 몬 정치공작행위에 협조하는 등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보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 있거나, 그 증명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언론매체의 보도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이유는 없고,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의 제작, 방영에는 기본적으로 허구를 전제로 한 일반 드라마에 비하여 가능한 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드라마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정한 기준이 일응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드라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드라마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성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마의 전개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여부의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익성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단순한 흥미를 넘어 시청자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선도하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고가 '수지 김 사건'의 발생 무렵 안기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제5공화국 당시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수지 김 사건'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자가 위 드라마의 전개를 위하여 원고와 '수지 김 사건'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필요성 측면도 아울러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방송은 언론매체의 보도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한 기준인 공익성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진실성 및 상당성

① 진실성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방송내용을 진실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상당성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 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

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드라마를 그대로 방송하였다면 방송사 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앞에서 든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당시 안기부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수지 김 사건’은 그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안기부의 전 부처가 총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상당성의 근거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드라마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의 법리를 감안하면 위 각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오히려,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한 유 OO는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당시 안기부에서 지위로 보아 ‘수지 김 사건’을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사건 방송의 대본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은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의 내용 및 방영시간, 그 표현방법,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의도 및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정정보도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 문화방송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크기, 내용 및 방송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이 방영된 시간 및 그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토요일 오후 9:40경 드라마 시작 직전에,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뉴스보도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에서 인용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문화방송이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피고 문화방송이 위 기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문화방송은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방영일인 2005.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 정정보도문

[제목] 알려드립니다.

[내용]

저희 문화방송이 2005. 8. 27. 「제5공화국」 제36부 「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에서 박○○ 당시 안기부장 특보가 위 조작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에 관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방영한 내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 1〉 정정보도 요구문

[제목] 정정보도문

[내용]

저희 문화방송은 2005. 8. 27.에 방영된「제5공화국」제36부「여간첩 수지 김 조작사건」에서 박○○ 당시 안기부장 2특보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조작 사건에 관여하고 가담한 것처럼 보일수 있도록 드라마형식을 빌어 방영한 것은 작가의 추리와 상상력에 의한 것일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고 제작진이 그 부분을 드라마로 구성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6. 7. 14.자 판결 (2005가소449079)

대구지방법원 2007. 6. 21.자 판결 (2006나11409)

대법원 2007. 10. 11.자 판결 (2007다52744)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훈 대법관)는 2007년 10월 11일 김○○가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인터넷 잡지에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이단성 종교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혐오시설”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은 귀신들린 사람이다”라는 원고의 발언이 게재되자, 원고는 자신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고

자신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원고 및 ○○병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위자료로 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사가 특정 인물이나 종교 단체에 대하여 이단(異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곁들여 보도하지 아니한 이상 종교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원고는 지역사회에 이름과 사회적 지위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초상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기사의 내용이 공중 또는 위 인터넷 잡지의 주된 독자층인 기독교 신도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기사의 표현 정도나 방법도 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5가소449079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광 덕 환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서울 종로구 효제동 245-3 정윤빌딩 비01

대표이사 남 광 현

2. 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영 수, 정 일 배

변 론 종 결 : 2006. 5. 19.

판 결 선 고 : 2006. 7. 1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교회와 신앙’이라는 인터넷 잡지사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

회사 한국교회문화사의 소속 기자인 피고 정○○이 2005. 10. 20. 위 인터넷 잡지에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이 이단성 종교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혐오시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하고, 2005. 11. 16.에는 “기독교 방송 출연 목사들 귀신들렸다”라는 제목 하에 원고의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하고 원고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원고 및 ○○병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범,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정○○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5. 10. 20.자 기사의 경우 이는 ○○병원 건립을 극력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분쟁상황이 이미 여러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상황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네이버 ○○타운’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초기화면을 그대로 게재하였고, 2005. 11. 16.자 기사는 원고가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그에 대한 일부 비평을 추가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기사의 내용이 공중 또는 위 인터넷 잡지의 주된 독자층인 기독교 신도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위 기사의 표현 정도나 방법도 위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그 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손 대 식

2심 판 결 문

사 건 : 2006나1140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 덕 한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서울 종로구 효제동 245-3 정운빌딩

대표이사 남 광 현

2. 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일 배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소449079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5. 31.

판 결 선 고 : 2007. 6. 21.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5,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남산동 2466-92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2005. 4. 2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 5층에서 10층까지 의료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개원하고자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인근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위 병원이 노인치매병원치료시설로서 장례식장, 영안실 등의 혐오시설로 사용되어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저지하고자 2007. 10. 14. 위 병원의 출입문 부근에 모여 병원 입점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는 기독교 교회 신문·잡지의 발행 및 판매업, 교회 교육 및 복음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교회와 신앙이라는 인터넷잡지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정○○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의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피고 정○○은 2005. 10. 20.자로 원고 운영의 위 병원과 인근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이단성 포교 전진기지 병원설립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여 이를 위 교회와 신앙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이단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교회(담임 이○○ 씨)의 한 핵심신도가 …중략…에 ○○병원을 설립하고 포교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혀 지역주민과 커다란 마찰을 빚고 있다.

(2) ○○교회(담임 이○○ 씨)는 <교회와신앙>과 <현대종교> 등에 의해 이단성 문제가 제기됐던 단체다. 신도들이 담임인 이○○씨를 주님, 그리스도로 호칭하며 추종하는가 하면 예장통합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위트니스 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었다.

(3) 문제의 ○○병원이 들어서는 인근의 주민들은 교계언론에서 이단성이 지적된 단체 관계자가 자신들의 생활권 내에 병원을 세우는 것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병원이 …중략… ○○교회 측의 이단적 사상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4) 이 같은 우려는 ○○병원의 소유주이자 병원장인 김○○ 씨가 근래에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표면화됐다.

(5) “○○아파트 주민들은 …○○병원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개설했다. 카페의 메인화면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타운 아파트 앞마당에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단성 종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혐오시설인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기 위한 모임입니다”라고 개설취지를 밝히고 있다. 주민들이 ○○병원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병원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치매병원으로 세워지고 장례시설까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의 반발이 지역의 생활 이해관계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6) ○○아파트의 주민 B씨는 “이단성 있는 단체의 한 신도가 우리의 보금자리인 ○○타운 입구에 ○○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집단 포교지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교회가 교인들이 앞으로 당할 엄청난 고난에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라. 또한 피고 정○○은 2005. 11. 16. ‘기독교방송 출연 목사들 귀신들렸다’는 제목으로 원고가 발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사화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진을 위 기사에 게재하였는데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원고 이외의 사람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를 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였으나, 원고의 얼굴과 상반신은 모자이크처리나 동일성 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기사의 좌측 상단 부분에 위치시켜 사진을 게재하였고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대구 중구에 세워진 ○○병원의 김○○ 병원장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은 귀신들린 사람들이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회 핵심 신도이기도 한 김○○ 병원장의 돌출 발언은 ○○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방영하는 방송을 지역 주민이 들으면

서 알려지게 됐다.

(2) 김 병원장은 ...중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 내가 TV에 이렇게 보면 기독교 방송...야, 거기 나오는 목사들 보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설교 잘 하고 유능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3) 김병원장의 발언에 대하여 병원 인근에 사는 ○○타운 주민들 중 특히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 중의 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할 의사이자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을 귀신들렸다고 하다니 상식 밖의 일이다”고 비난했다.

(4) ○○○○○충연협회(대표회장 신○○ 목사)의 한 관계자는 “김병원장의 발언은 ○○교회 측이 다른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회 측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 판단의 전제

우리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참조).

3. 피고들의 2005. 10. 20.자 기사 작성 및 게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위 2005. 10. 20.자 기사 중 피고들이 원고가 출석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한 것

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사실은 ○○교회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는데 있어 별다른 지원을 받은 바 없음에도 소외 김△△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타운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초기화면에 게재되어 있던 …이단인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혐오시설인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위 카페의 초기화면에서 …치매병원인 ○○병원…이라고 표현하여 이 사건 병원이 치매병원인 것처럼 주장한 초기화면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원고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위 기사가 작성·게재된 이후인 2005. 11. 25.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기사에서는 ○○교회의 이단 여부와 관련하여 <교회와신앙>, <현대종교> 등에 의하여 이단성이 제기된 단체 등으로 표현했을 뿐이므로 이러한 기사 작성·게재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다음으로 “…이단성 종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는 부분은 주민들의 주장을 소개한 의혹보도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도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회의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으며, 원고는 위 교회의 핵심신도이므로 위와 같은 의혹보도가 위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혐오시설인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 것…”, “…치매병원인 ○○병원…”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는 인터넷 카페의 초기화면을 캡처하여 위 기사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캡처화면 아래에 “남산 병원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개설한 네이버카페”라고 부가설명을 붙였으므로 마치 위 부분을 사실인양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올라 위 기사 작성·게재 이전에 이미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사·작성 게재는 위법성이 없다.

다. 판단

(1)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단체로 묘사한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단(異端)이라 함은 ①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②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를 의미할 뿐이므로,¹⁾ 언론사가 특정 인물이나 종교단체에 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물이나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곁들여 보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만으로는 종교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들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와 신앙>, <현대종교> 등에 의하여 이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위 기사 중 이단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담임목사인 이○○를 주님, 그리스도로 호칭하여 추종한다는 점을 적시한 사실, 원고가 2005. 11. 1.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들은 귀신들린 사람들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2005. 8. 30. ○○교회 메시지에서 “그래 내가 이래 일을 하나씩 하면서도 야,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영혼이, 생명이 내 곁으로 와 가지고, 껍데기는 저지만, 사실은 목사가 여기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 병원 슬로건을 내가 늘 말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평소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다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야 우리 인제 목사님 한 분만 기쁘게 하고 목사님 한 분만 만족케 하면 인생에 여한이 없다.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분의 마음을 사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애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인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사님 때문어요. 목사님 때문에...어떤 데 가도 우리는 자나깨나 목사님 기쁘게 하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목사님 기뻐하실 일만 하는 거야. 일이야 좀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일은 하다가 또 엎어질 수도 있고 한테 문제는 그 분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지. 우리 온 초점이 그 분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한 내용을 위 기사에서 소개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원고나 ○○교회의 신앙활동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기존 기독교단체에서 추구하는 신앙활동과 다르다는 취지로 원고가 출석하는 ○○

1) 표준국어대사전, 2000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심재기, 발행처 국립국어연구원

교회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을 뿐 이단이라고 단정지은 것도 아닌 데다가, ○○교회에서의 설교 중에는 위 교회의 목사인 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듯한 표현까지 등장한다고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거가 된 원고의 위 2005. 8. 30.자 설교내용도 곁들여 보도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 별달리 원고나 원고가 출석하는 ○○교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출석하는 교회의 이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피고들의 기사 작성·게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단인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라는 인터넷카페의 초기화면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한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인물이나 종교단체에 관하여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단인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지원을 받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이단인 종교단체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그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단인 종교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원을 받는 듯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것은 그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 피고 정○○이 “이단성 종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인터넷카페의 초기화면을 그대로 캡처하여 기사에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캡처 화면 아래에는 “○○병원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개설한 네이버카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20:00에 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사실, 2005. 8. 30. 화요일, 원고가 교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제가 그래서 인제 ○○아카데미(○○병원 10층에 위치한 교육장소이다)가 어떤 곳인가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고 발언한 사실, 2005. 9. 6. 화요일에는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가 우리 직원들, 제일 밑에 직원부터 제가, 지하 휴게실에 있는 직원부터...직원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 표현하고 사는가 하면, 목사님 항상 우리를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키웠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사는데 목사님 표현하는기라”고 발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캡처화면 아래에 “○○병원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개설한 네이버카페”라는 부가설명을 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곧바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매주 화요일 위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회 내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2005. 8. 30., 2005. 9. 6. 위와 같이 발언한 이상 이 사건 병원이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것으로 의혹이 생길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단인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캡처화면을 게재하여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의 작성·게재가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혐오시설인 ○○병원, 치매병원인 ○○병원이라는 취지의 캡처화면을 그대로 게재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정○○이 위 카페의 초기화면에서 “혐오시설 ○○병원 결사반대, 이단성 종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혐오시설인 ○○병원을 …치매병원인 ○○병원…”이라고 표현하여 이 사건 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면서 마치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인 것처럼 주장한 부분을 그대로 캡처하여 게재한 사실 및 위 캡처화면 아래에 “○○병원 입점을 반대하기 위해 주민들이 개설한 네이버카페”라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는 ○○병원이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서 장례시설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보도한 것으로서 그 보도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을 곧바로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혹제기에 의하여 분쟁이 있다는 정도를 보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의 작성·게재 이전인 2005. 9. 20. 대구매일신문, 2005. 9. 22. 조선닷컴에서 인근주민들의 위와 같은 의혹 및 이로 인한 분쟁을 기사화하였던 바 있었던 사실, 실제로 인근주민들이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위 기사의 보도 이전에 이 사건 병원 주변에서 개원을 저지하려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도가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을 새로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언론매체에 의하여 소개된 내용을 재차 보도한 것으로서 그 의혹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상황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사의 작성·게재가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혐오시설’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이는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표현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사실과 결합하여서만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치매 병원이라는 구체적 사실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피고들의 2005. 11. 16.자 기사 작성·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가 위 1의 라항의 (2)의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회의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일 뿐인데 원고의 진의와는 다르게 왜곡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2) 피고들이 원고의 사진을 원고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위 기사에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이는 원고가 그 진술내용을 녹음해 둔 것을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므로 이미 널리 공표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

(2) 초상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위 기사의 작성·게재 직전에 이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둘러싼 인근주민과 이 사건 병원 측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핵심에 서 있던 사람이고, 위 분쟁은 조선닷컴, 대구매일신문을 통하여 기사화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대구 MBC 라디오에도 출연하여 지역주민과 토론을 벌이는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사에서 원고의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다. 판단

(1) 원고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김 병원장은 2005. 11. 1. ...중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 내가 TV에 이렇게 보면 기독교 방송...야, 거기 나오는 목사들 보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설교 잘 하고 유능한 목사님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게재한 사실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발언이 보도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2005. 9. 20. 대구매일신문, 2005. 9. 22. 조선닷컴에 의하여 그 인터뷰 내용이 기사의 일부로 보도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5. 9. 27. 대구 MBC 라디오 <김재경의 여론광장>에 출연하여 지역주민들과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및 원고는 위 발언을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이를 청취할 수 있게끔 허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인의 신앙고백이나 종교적 의견표명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을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누구나 이를 청취할 수 있게끔 허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 기사가 원고의 전체 설교 중 위 발언을 떼어내어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전체적인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위 발언 및 위 기사 작성·게재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지역언론을 통하여 그 이름과 사회적 지위가 알려졌던 점,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사의 작성·게재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 16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2005. 11. 16.자 기사에서 원고의 위 (1)항과 같은 발언을 소개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였던 사실 및 원고는 위 사진 게재 당시에 이미 지역사회에 그 이름과 사회적 지위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던 사실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과연 위 기사의 작성·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사의 작성·게재 당시 원고는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으므로 ○○교회의 이단성을 문제삼았던 피고들로서는 ○○교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원고를 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보도 당시 이미 지역사회에 이름과 사회적 지위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 위 사진의 취득경로 자체도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곁들인 기사의 내용도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의 작성·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 최희정

판사 강기남

3심 판결문

사 건 : 2007다5274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 덕 환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대표이사 남 광 현

2. 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정일배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 판결

판 결 선 고 : 2007. 10. 11.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소액 사건에 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 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주 심 대법관 이 흥 훈

대법관 안 대 희

□

**원고의 대북접촉 사실이나 알리바이의 의문점 등의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자 판결 (2005다55510)

사실개요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7년 6월 29일 전 육군 중사 김○○과 그의 가족

들이 '김훈 중위 타살의혹사건'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당시 김훈의 사망 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 그에 관하여 수차례 보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또는 적어도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던 군인들이나 원고 주변의 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 중사'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될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 소속 기자가 김훈의 사망 이후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자들을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김훈의 사인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조사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대북접촉 사실이나 알리바이의 의문점 등의 사정만을 들어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김○○과 원고의 가족들은 시사저널이 지난 1998년 12월 17일자 『“관문점 경기 한국군 일부, 북측과 몰래 접촉』 제하의 기사를 포함 총 4건의 기사에서 원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북한군의 지령을 받았거나, 이적행위가 탄로나자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제12집 187~203면, 2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212~221면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5다5551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1. 김 ○ ○

2. 김 ◇ ◇

3. 김 □ □

4.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 승 복, 이 임 성, 이 현 범, 장 중 식, 최 재 근, 고 재 규,
윤 문 수, 박 재 훈, 윤 영 수, 황 덕 남, 박 용 식, 박 소 연

피고, 상고인 : 재단법인 예음문화재단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8-1

대표자 이사 임 영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 용 환, 최 승 수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5. 8. 30. 선고 2004나65338 판결

판 결 선 고 : 2007. 6. 29.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김○○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김아무개 중사’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기사의 내용 중에 ‘김훈과 같은 소대의 부소대장’, ‘특전사 출신’ 등 원고 김○○의 군대내 직책, 출신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당시 김훈의 사망 사건이 국민의 관심사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그에 관하여 수차례 보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 또는 적어도 원고 김○○과 같이 근무하였던 군인들이나 원고 김○○의 주변 사람들로서는 ‘김아무개 중사’가 원고 김○○을 지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 김○○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의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범죄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혐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의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도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인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보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보도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보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1998. 2. 2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내 241 감시초소(Guard Post) 지하 3번 병커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의 사인(死因)에 대하여 자살이라고 발표한 군수사기관에 의한 1차 수사 및 2차 수사 결과에 대하여 유족들 및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실, 한편 1998년 10월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

성된 '김훈 육군 중위 및 김▲▲ 해군 하사 사망 진상과악 소위원회'는 1998. 12. 3. 김훈이 소대장으로 있던 소대의 전역병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위 소대의 부소대장인 원고 김○○이 북한군과 접촉하거나 북한군 초소에 다녀오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원고 김○○이 1998. 12. 4.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사실로 구속된 사실, 피고는 1998. 12. 8. '시사저널 추적 확인/김훈 중위 의문사와 깊은 관련... 월북 등 이적행위 해온 부소대장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등의 제목 아래 김훈의 사인은 권총에 의한 타살이고, 원고 김○○이 북한군의 지령을 받거나 이적행위가 탄로나자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제477호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기사는 김훈의 사인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 김○○의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 및 김훈 사망 당일의 알리바이 진술의 모순점 등을 들어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즈음 국방부는 군과 민간의 전문수사기관으로 편성된 특별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6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조사, 17개 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총기발사시험 등 각종 실험 및 시험, 법의학토론 개최 등을 거쳐 김훈의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사항 및 1차 수사 중 초동수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을 심층적으로 재조사하고 타살가능성 및 자살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자살이라는 최종 결론에 이른 사실, 한편 위 3차 수사과정에서 원고 김○○의 김훈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원고 김○○이 북한군의 지령을 받거나 이적행위가 탄로나자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보도로 인하여 원고 김○○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될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 소속 기자인 정○○이 김훈의 사망 이후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자들을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김훈의 사인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조사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김○○의 대북접촉 사실이나 알리바이의 의문점 등의 사정만을 들어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원고 김○○이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용 담
대법관 박 시 환
주 심 대법관 박 일 환
대법관 김 능 환

□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7. 7.자 판결 (2005가합14302)

서울고등법원 2007. 7. 25.자 판결 (2006나80294) (확정)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25일 신생아 김○○와 친권자 부 김△△, 모 오○○이 한국방송공사와 담당PD,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와 소속 홍보팀장, 제이알엔(프로그램 외주제작사)과 담당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2005년 10월 4일 KBS 「병원 24시」 프로그램에서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라는 제목으로 세쌍둥이 미숙아와 그들의 부모 그리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을 주요 출연진으로 하여 약 보름간에 걸쳐서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로 구성된 내용을 방영하였다.

한편 원고 오○○도 세쌍둥이를 출산하였으나 원고 김○○을 제외한 2명이 죽어서 주위에 그러한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므로 자신과 김○○에 대한 촬영은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피고 제이알엔(프로그램 외주제작사)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를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제이알엔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오△△로서는 병원 24시의 프로듀서로서 병원 24시를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오△△과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로 인한 위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 제이알엔, 박○○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재판부는 외주제작사와 소속 PD에게만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프로그램 소재를 제공한 피고 건국대학교와 소속 홍보팀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의 소재를 제공하고 피고 박○○ 등으로 하여금 소외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부부 소생의 세쌍둥이 미숙아를 촬영하도록 협조한 일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오□□에게 피고 박○○의 개별적인 촬영행위에 적극 개입·관여하여 같은 피고가 그 촬영과정에서 피촬영자에 대하여 미리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제지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PD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엄연히 피고 제이알엔 측이고 피고 공사 측은 단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승인, 제작 관련 지시, 검수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피고 공사 측에게 제작자에 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검수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하는 등의 어떤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원고 김○○, 오○○가 촬영된 장면만 나올 뿐 신생아의 아버지인 원고 김△△는 방송되지 않았으며 김△△의 초상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5가합14302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 ○
2. 오 ○ ○
3. 김 △ △
원고 김○○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 △ △, 모 오 ○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인 수

피 고 : 1.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대표자 이사 김 경 희
2. 오 □ □
3.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연주
4. 오 △ △
5. 주식회사 제이알엔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8-39, 202호
6. 박 ○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동부제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복규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이해수
피고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변 론 종 결 : 2006. 4. 28.

판 결 선 고 : 2006. 7. 7.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 박○○은 각자 원고 김○○, 오○○에게 각 3,000,0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200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 오○○의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오□□, 한국방송공사, 오△△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 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 오○○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 김○○, 오○○와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오□□, 한국방송공사, 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김△△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원고 오○○에게 70,00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12, 13, 15 내지 18, 을나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김○○은 원고 김△△, 오○○의 아들로서, 2005. 8. 2. 소외 건국대학교병원(이하 '소외 병원' 이라 한다)에서 태어나 2005. 9. 말경까지 위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을 받았다.

(2)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건대' 라고 한다)는 소외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오□□은 소외 병원의 홍보팀장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 라고 한다)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주 화요일 밤 12시에 '병원 24시' 라는 프로그램(이하 '병원 24시' 라고 한다)을 방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오△△은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의 프로듀서(연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이하 '피고 제이알엔' 이라고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박○○은 피고 제이알엔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 중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의 제작에 있어 사진촬영 및 연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

(1) 피고 공사는 2005. 7. 1. 피고 제이알엔으로부터 계약 당일부턴 다음 개편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병원 24시를 편당 18,264,000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을 피고 제이알엔과 체결하였다.

(2) 피고 오□□은 2005. 9. 15.경 소외 안○○이 임신 7개월 만에 세쌍둥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소외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피고 제이알엔 측에 병원 24시의 소재로 안○○과 세쌍둥이 미숙아 이야기가 적절한지 문의하였다.

(3) 이에 피고 제이알엔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오□□ 등의

협조 아래 피고 박○○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5. 9. 30.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과 그녀의 남편인 소외 김◇◇, 이들 부부 소생의 세쌍둥이 미숙아에 대하여 촬영하도록 하였다.

(4) 피고 박○○은 그 과정에서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 김○○, 오○○에 대하여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 장면이 담긴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05. 10. 4. 피고 공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다. 원고 김○○, 오○○에 대한 촬영 및 방영 내용

(1) 피고 박○○은 2005. 9. 중순경 소외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원고 김○○의 친권자인 원고 김△△, 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한손으로 원고 김○○의 얼굴을 감싸 쥐듯이 받치고, 다른 한손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장면(이하 '제1 장면'이라 한다) 및 원고 김○○이 수면상태에 빠져드는 장면(이하 '제2 장면'이라 한다)을 촬영하였고, 원고 오○○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원고 오○○가 원고 김○○을 안은 채 젖병을 물리고 있는 장면(이하 '제3 장면'이라 하고, 위 제1, 2 장면과 통틀어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장면'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

(2) 제1 장면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24분 24초에서 30초까지 사이에, 제2 장면은 24분 42초에서 53초까지 사이에 각 방영되었는데, 방영 당시 자장가와 함께 '오늘도 몇 번이나 힘든 고비를 넘나들며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싸우는 중환자실의 작은 아기들, 포근한 밤은 엄마의 뱃속처럼 따뜻하다.'는 내레이션(narration)이 삽입되었다. 제3장면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44분 6초에서 13초, 19초에서 25초, 31초에서 35초 사이에 각 방영되었는데, 이는 안○○이 원고 오○○를 부러워하는 장면으로서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에 엄마 ○○씨는 눈을 떼지 못한다.'는 내레이션이 삽입되어 있다. 이 장면에서는 원고 오○○가 안고 있는 아기의 머리 윗부분만 노출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아기가 원고 김○○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하다.

2. 원고들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이 사건 각 장면은 그 촬영이나 방영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김○○을 안○○ 부부 소생의 세쌍둥이 미숙아 중 1명으로 오인시켰을 뿐 아니라, 원고 오○○를 안○○부부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시켰다. 또한, 원고 김○○을 미숙아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 중인 건강상태가 불량한 아이로 인식되도록 오도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친자관계 등에 관련된 명예가 심히

훼손되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장면 내지 그 각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과정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갑6-12, 13, 15 내지 18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CD감정결과만으로는, 제1, 2 장면이 원고 김○○을 안○○ 부부 소생의 세쌍둥이 미숙아 중 1명으로 오인시켰다거나, 제3 장면이 원고 오○○를 안○○ 부부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은 얼굴과 몸에 반창고와 튜브 등이 부착되어 있는 안○○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와는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서 위 세쌍둥이 미숙아와는 쉽게 구분되는 사실이 엿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장면의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 김○○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중인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김○○이나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에 무슨 부정적 영향이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명예훼손의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김○○, 오○○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제이알엔, 박○○의 불법행위책임

(가) 이 사건 각 장면의 초상권 침해 여부

① 초상권의 의미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

② 초상권의 침해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은 원고 김○○의 친권자인 원고 김△△, 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1, 2 장면을, 원고 오○○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제3 장면을 각 촬영함으로써 원고 김○○, 오○○의 초상권에 포함된 촬영거절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제이알엔, 박○○은 이 사건 각 장면이 비록 원고 김○○, 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도, 그 장면이 담긴 이 사건 프로그램 자체가 출산 장려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출산 장려 등의 공익적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위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제이알엔은 피고 박○○의 사용자로서 각자 피해자인 원고 김○○, 오○○에게 위 원고들의 초상권(촬영거절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목적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의 주로 공익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장면의 방영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 내용 역시 그 자체로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원고 김○○, 오○○에게 각 3,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 건대, 오□□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원고 김○○, 오○○는, 피고 오□□은 소외 병원의 홍보팀장으로서 병원 24시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소재를 제공한 만큼, 마땅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다른 아기들이 무단 촬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피고 박준신에 의해 위 원고들에 대한 무단 촬영이 감행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마땅히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 건대도 피고 오□□의 사용자로서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의 소재를 제공하고 피고 박○○ 등으로 하여금 소외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부부 소생의 세쌍둥이 미숙아를 촬영하도록 협조한 일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오□□에게 피고 박○○의 개별적인 촬영행위에 적극 개입·관여하여 같은 피고가 그 촬영과정에서 피촬영자에 대하여 미리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제지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 오□□에게 어떤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피고 및 피고 건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공사, 오△△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원고 김○○, 오○○는, 피고 공사 측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수주자인 피고 제이알엔측과 위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위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각 장면을 무단촬영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된 이상, 공동 제작자 측인 피고 공사나 피고 오△△도 실제 그 무단촬영을 행한 피고 제이알엔 측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제이알엔이 피고 공사와 맺은 앞서 본 외주제작 계약상 피고 제이알엔은 피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의 기획을 결정하고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피고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제작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피고 공사에 인도하여 피고 공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피고 공사는 수시로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 현장에 입회하여 프로그램의 제작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의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는 엄연히 피고 제이알엔 측이고 피고 공사 측은 단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승인, 제작 관련 지시, 검수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이 점에서 위 원고들의 공동 제작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한 피고 공사 측에게 제작자에 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검수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하는 등의 어떤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 공사 및 피고 오동석에 대해 공동 제작자로서 피고 제이알엔 측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김△△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그 위자료를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 오○○가 촬영된 이 사건 각 장면만이 나올 뿐이고, 나아가 그 프로그램에 원고 김△△이 촬영된 장면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 김○○, 오○○의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경험칙상 위 원고들과 원고 김정환의 관계를 아는 사람도 그들의 가족, 친지 등 제한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김○○, 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로써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정신적 고통이 원고 김△△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자신의 초상권 침해나 다른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제이알엔, 박○○은 각자 원고 김○○, 오○○에게 앞서 인정한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12.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06. 7.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 김○○, 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 오○○의 피고 건대, 오□□, 공사, 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수식
판사 김현섭
판사 주선아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나8029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김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오○○

2. 오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인 수

원고, 항소인 :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 인 수

피고, 피항소인 : 1.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대표자 이사 김 경 희

2. 오 □ □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부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 복 규

3.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4. 오 △ △

위 피고 3,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5. 주식회사 제이알엔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8-39, 202호

대표이사 전형태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박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유 창 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기 중

제 1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14302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5. 23.

판 결 선 고 : 2007. 7. 25.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김○○, 오○○의 피고 한국방송공사, 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 박○○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김○○, 오○○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 박○○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피고 한국방송공사, 오△△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각 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2007.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김○○, 오○○의 피고 한국방송공사, 오△△, 주식회사 제이알엔, 박○○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김△△의 항소, 피고 박○○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김○○, 오○○와 피고 한국방송공사, 오△△, 주식회사 제이알엔, 박○○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4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김○○, 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김△△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5,000만 원, 원고 오○○에게 2,500만 원, 원고 김△△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 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1호증의 2, 3,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김민희의 당심에서의 서면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오○○는 2005. 8. 2. 건국대학교병원(이하 '건대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 29주 만에 원고 김○○ 등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출생 직후 사망하고, 원고 김○○만이 생존하여 2005. 9. 말경까지 위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을 받았다. 원고 김△△은 원고 오○○의 남편이자 원고 김○○의 아버지이다.

(2)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건대'라 한다)는 건대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오□□은 건대 병원의 홍보팀장이다.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케이비에스'라 한다)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주 화요일 자정에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이하 '병원 24시'라 한다)을 방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오△△은 피고 케이비에스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의 프로듀서(연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제이알엔(이하 '피고 제이알엔'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박준식은 피고 제이알엔의 직원으로서 병원 24시 중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 편(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에 있어 촬영 및 연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

(1) 피고 케이비에스는 2005. 7. 1. 피고 제이알엔과 사이에 위 피고로부터 병원 24시를 편당 18,264,000원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프로그램의 기획은 사전에 피고 케이비에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피고 케이비에스와 협의하여 시행한다(제4조 제2항). 피고 케이비에스는 수시로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입회하여 병원 24시의 제작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본문).

② 피고 제이알엔은 제작이 완료된 후 병원 24시를 피고 케이비에스가 요구하는 규격을

준수하여 피고 케이비에스에 인도하고 검수 완료 후 수령확인서를 교부받는다(제6조 제1항). 피고 케이비에스가 검수 후 제4조에 정한 내용의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피고 제이알엔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5항 본문).

③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지상파, 위성, 유선, 디엠비 등) 등의 국내, 국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피고 케이비에스에 귀속된다(제8조 제1항).

④ 피고 케이비에스는 납품된 병원 24시를 방송 등에 사용하면서 필요시에는 피고 케이비에스가 직접 수정, 삭제 및 기타 편집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⑤ 피고 제이알엔은 병원 24시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병원 24시와 관련하여 피고 제이알엔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12조).

(2) 피고 오□□은 2005. 9. 15.경 안○○이 임신 7개월 만에 세쌍둥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건대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피고 제이알엔 측에 병원 24시의 소재로 안○○과 세쌍둥이 미숙아 이야기가 적절한지 문의하였다.

(3) 이에 피고 제이알엔은 “안○○ 부부와 그들의 세쌍둥이 미숙아 및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을 주요 출연진으로 하여, 위 세쌍둥이 미숙아의 삶에 대한 본능과 그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젊은 부부 및 의료진의 노력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기획의도하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오□□ 등의 협조 아래 피고 박○○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5. 9. 30.까지 사이에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과 그녀의 남편인 김◇◇, 이들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 등에 대해 촬영을 하도록 하였다.

(4) 피고 박○○은 그 과정에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 김○○, 오○○에 대하여도 일부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 장면이 담긴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05. 10. 4. 자정 피고 케이비에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5)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안○○이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 및 안○○ 부부의 생활모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김○○, 오○○에 대한 촬영 경위 및 이 사건 장면의 내용

(1) 피고 박○○은 2005. 9. 중순경 건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원고 김△△으로부터 “원고 오○○도 세쌍둥이를 출산하였으나 원고 김○○을 제외한 2명이 죽었는데 주위에 그러한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촬영은 삼가달라.”라는 요청을 받는

한편, 피고 건대 측으로부터도 다른 신생아 등의 촬영은 삼가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피고 건대 측에 알리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한 손으로 원고 김○○의 얼굴을 감싸 쥐듯이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장면(이하 '제1장면'이라 한다), 원고 김○○이 수면상태에 빠져드는 장면(이하 '제2장면'이라 한다) 및 원고 오○○가 원고 김○○을 안은 채 젓병을 물리고 있는 장면(이하 '제3장면'이라 하고, 제1, 2장면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장면'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

(2) 제1장면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24분 24 내지 30초까지 사이에, 제2장면은 24분 42 내지 53초까지 사이에 각 방영되었는데, 방영 당시 자장가와 함께 “오늘도 몇 번이나 힘든 고비를 넘나들며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싸우는 중환자실의 작은 아기들, 포근한 밤은 엄마의 뱃속처럼 따뜻하다.”라는 내레이션이 삽입되었다. 제3장면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44분 6 내지 13, 19 내지 25, 31 내지 35초 사이에 각 방영되었는데, 여기에는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에 엄마 ○○ 씨는 눈을 떼지 못한다.”라는 내레이션과 안○○의 “아이 진짜 부러워. 부러워요. 저만큼만 커도 안아줄 수 있는데. 빨리 커, 빨리.”라는 대사 및 김◇◇의 “저 아기가 한 달 먼저 나왔는데.”라는 대사가 삽입되어 있다. 제3장면에서는 원고 오○○가 안고 있는 아기의 머리 윗부분만 노출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아기가 원고 김○○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하다.

2. 명예훼손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촬영이나 방영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면을 통해서, ① 원고 김○○이 안○○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 중 1명인 것으로 오인시키고, 원고 오○○가 자진해서 출연하여 연기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한편, 원고 오○○가 안○○ 부부와 친·인척관계가 있거나 안○○ 부부의 세쌍둥이가 원고 오○○ 부부의 자녀인 것처럼 오인시키고, ② 또한, 원고 김○○이 미숙아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 중이고, 원고 오○○가 미숙아의 모친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바, 그로 인해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장면 내지 그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방영과정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

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안○○이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고, 그로부터 약 보름간에 걸쳐 위 미숙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 및 안○○ 부부의 생활모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간호사가 한 손으로 원고 김○○의 얼굴을 감싸 쥐듯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제1장면은 방영시간이 6초에 불과하고, 위 원고가 수면에 빠져드는 제2장면 또한 그 방영시간이 11초에 불과하며, 이에 삽입된 내레이션을 통해 원고 김○○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중임은 알 수 있지만, 얼굴과 몸에 반창고와 튜브 등이 부착되어 있는 안○○의 세쌍둥이와는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서 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③ 원고 오○○가 아기(위 아기가 원고 김○○인지 여부는 식별할 수 없다)를 안은 채 젖병을 물리고 있는 제3장면은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에 엄마 ○○ 씨는 눈을 떼지 못한다.’라는 내레이션이 삽입되어 있는 등 안○○이 원고 오○○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장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장면을 통해 원고 김○○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 중이고, 원고 오○○가 미숙아를 출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방영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장면이 일반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 김○○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요양과정을 거쳐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원고 오○○가 자신이 출산한 미숙아에게 직접 우유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미숙아의 건강상태가 좋아져 세쌍둥이 미숙아의 어머니인 안○○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고찰할 때, 이 사건 장면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더욱이 원고들의 위 ‘가항의 ①’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초상권 침해 여부

가. 원고 김○○, 오○○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케이비에스, 오△△, 제이알엔, 박○○에 대한 청구

(가) 책임의 발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은 원고 김○○의 친권자인 원고 오○○, 김△△의 동의 없이 제1, 2장면을, 원고 오○○의 동의 없이 제3장면을 각 촬영하여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 김○○, 오○○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박○○과 그 사용자인 피고 제이알엔은 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 김○○, 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케이비에스는 피고 제이알엔의 제작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는 등 병원 24시의 제작에 관여할 수 있고, 제작이 완료된 병원 24시를 검수하여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제이알엔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 24시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병원 24시에 대한 최종적인 편집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 오△△로서는 병원 24시의 프로듀서로서 병원 24시를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따라서 이 사건 제작계약관계가 민법 소정의 통상의 도급관계에 불과하다는 피고 케이비에스, 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면 병원 24시와 관련하여 피고 제이알엔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피고 제이알엔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케이비에스 및 피고 제이알엔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를 정해 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영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오△△과 그 사용자인 피고 케이비에스는 이로 인한 위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피고 제이알엔, 박○○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 제이알엔, 박○○은, 이 사건 장면으로 비록 원고 김○○, 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이 담긴 이 사건 프로그램 자체가 출산 장려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익목적에 지향하여 제작·방영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 중에 위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위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박○○은, 제3장면 촬영시 원고 오○○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박○○은 다시, 제3장면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매우 짧게 방영된 데다가 주인공인 안○○이 응시하는 시선에 따라 우연히 포착된 지엽적인 부분이었고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장면이었으며, 이 사건 장면의 촬영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평가를 의도하거나 부정적 평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원고 오○○ 등에 대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

(다) 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영 목적이 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등 공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장면이 비교적 단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촬영에 앞서 원고 김△△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담당한 피고 박○○에게 원고들이 처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장면의 촬영을 거절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고 김○○, 오○○에 대하여 각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케이비에스, 오△△, 제이알엔, 박○○은 각자 원고 김○○, 오○○에게 각 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12. 1.(피고 케이비에스, 오△△의 경우) 또는 2005. 12. 17.(피고 제이알엔, 박○○의 경우)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7.(피고 제이알엔, 박○○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0만 원에 관하여) 또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7. 25.까지(피고 케이비에스, 오△△에 대하여는 7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피고 제이알엔, 박○○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인 400만 원에 관하여)는 민법 소정

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건대, 오□□에 대한 청구

(가) 원고 김○○, 오○○의 주장

피고 오□□은 건대 병원의 홍보팀장으로서 병원 24시 제작진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소재를 제공한 만큼, 마땅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다른 아기들이 무단 촬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피고 박○○에 의해 위 원고들에 대한 무단 촬영이 감행되도록 내버려둔 잘못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 건대도 피고 오□□의 사용자로서 역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재를 제공하고 피고 박○○ 등으로 하여금 건대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 부부의 세쌍둥이 미숙아를 촬영하도록 협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박○○에 대하여 다른 신생아 등의 촬영을 삼가도록 지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피고 건대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장면의 촬영에 앞서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하였다) 피고 박○○의 개별적인 촬영행위에 적극 개입·관여하여 같은 피고가 그 촬영과정에서 피촬영자에 대하여 미리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제지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김○○, 오○○의 피고 건대, 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김△△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김△△의 주장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김△△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에게 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 오○○가 촬영된 이 사건 장면만이 나올 뿐이고, 원고 김△△이 촬영된 장면은 없다. 또한, 원고 김○○, 오○○의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경험칙상 위 원고들과 원고 김△△의 관계를 아는 사람도 그들의 가족, 친지 등 제한된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 김○○, 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로써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정신적 고통이 원고 김△△에게까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김○○, 오○○의 피고 케이비에스, 오△△, 제이알엔, 박○○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건대, 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 오○○의 피고 케이비에스, 오△△, 제이알엔, 박○○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케이비에스, 오△△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지급을, 피고 제이알엔, 박○○에 대하여는 위 금원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각 명하고,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에스, 오△△, 제이알엔, 박○○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원고 김△△의 항소, 피고 박○○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조 용 구

판 사 김 진 현

판 사 이 우 철

□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2.자 판결 (2006가합51497)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8월 22일 이○○이 주식회사 중앙엠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즉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의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에는 언론이 사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그 주체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원고와 정○ 사이의 내연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하는 여성중앙 2006년 5월호 『“중견탤런트 J씨, 27살 연하 내연녀와 친자·양육권 소송에 휘말린 충격적인 사연”』 제하로 원고와 탤런트 정○ 사이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원고가 기사 게재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게재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6년 5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6서울조정174)을 하여 조정결과 담당중재부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51497 손해배상(기)
2006가합75479(병합) 정정보도등
원 고 : 이 ○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 봉 수
피 고 : 주식회사 중앙엠앤비
서울 중구 순화동 2-6 중앙문화센터빌딩1층
대표이사 김 원 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병 규

변 론 종 결 : 2007. 7. 18.

판 결 선 고 : 2007. 8. 22.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여성중앙 2006년 6월호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게재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기사게재

피고는 피고 발행의 월간지인 여성중앙 2006년 5월호에 “중견탤런트 J씨, 27살 연하 내연녀와 친자·양육권 소송에 휘말린 충격적인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 탤런트 정○(본명 : 정◇◇, 이하 정○이라 한다) 사이의 사생활에 관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취재과정 및 기사게재의 경위

(1) 피고 소속 기자 김□□은 2006. 4. 10. 취재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탤런트 정○과의 관계 및 현재의 심정 등에 대해 말해줄 것을 요구한 끝에 약 1시간 20분간의 통화를 통해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나, 원고는 다른 월간지에서 자신에 관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니 피고 발행의 여성중앙에는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2) 며칠 후 김□□이 다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자, 원고는 ‘정○과는 전혀 접촉하지 말고 원고가 말한 이야기로만 기사를 작성하되, 기사 작성 후 원고에게 기사를 보여주고 허락을 받은 다음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사의 게재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 정○의 변호사를 통해 정○의 입장을 취재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위와 같이 여성중앙에 게재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은 원고에게 이미 전화통화로 어느 정도 취재가 되었으니 원고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기사를 게재하겠다고만 말한 채 원고의 요구대로 기사 작성 후 원고에게 보여주거나 원고의 허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정○의 반론부분에는 원고에게 정○ 이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된 부분, 정○과 그 부인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정○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언급된 부분, 정○의 배신에 격분한 원고가 정○의 집을 찾아가고 하루에 100통 가까이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프라이버시권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즉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의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자기정보통제권이라 한다)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에는 언론이 사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그 주체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원고와 정○ 사이의 내연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원고가 기사 게재를 허락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의 동의가 없는 것과 같다) 일방적으로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원인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여성조선’ 등 다른 매체에도 게재된 바 있는 점, 이 사건 기사는 공인인 정○의 부도덕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게재된 것인 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이 영문 이니셜로 처리되고 구체적인 나이도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사의 게재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다른 월간지인 ‘여성조선’, ‘우먼센스’의 2006년 5월호에 실린 기사들은 위 기사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의 허락을 받아 게재되었고,¹⁾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가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는 정○의 구체적인 반론 부분²⁾이 빠져 있거나 최소화되어 있었던 점(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② 비록 정○이 탤런트로서 공인이기는 하지만 그의 내연관계와 같은 사생활이 알려짐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그 반대 당사자인 원고의 경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사가 게재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그 아들이 정○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05드단5044호 인지등 청구사건에서 2005. 9. 30. ‘원고의 아들이 정○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정○은 원고에게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06. 4. 2. 일요신문에 위 내용이 기사로 게재된 데 이어 이 사건 기사가 다시 게재됨으로써 원고 및 그 주위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에 관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에 관하여 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위 기사의 게재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가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작지 않은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정○의 반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대체로 원고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여 작성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

1) 특히 ‘주부생활’의 경우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예 기사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기사에 실린 반론부분의 내용 중 앞서 인정사실에서 지적한 일부 부분은 기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인 것으로 보인다.

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있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 인정여부

가.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는 그 대부분이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정○으로부터 당한 피해 등을 그대로 적시한 내용이고, 끝부분에 반대 당사자인 정○의 반론이 비교적 작은 분량으로 덧붙여진 다음, “알면 알수록 복잡한 수수께끼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 진실은 하나일텐데, 정답은 오리무중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보았을 때, 위 기사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정○의 반론 부분은 위 기사 전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정○의 입장과 반론을 일부 실어준 것에 불과할 뿐 그 반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반론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기사 내용상 원고와 A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의원'이라는 집단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자 판결 (2006가합74575)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8월 29일 김○○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동아일보는 2006년 5월 24일 「지씨, 興의원 사무실에 취업 청탁」이라는 제목으로 지○○이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측을 찾아다니며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재판부는 “위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지○○이 원고의 지역구 사무실에 취업을 청탁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지○○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지급한 것처럼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위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 의원이라는 집단 표시를 함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위 A 의원이라는 집단 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취업을 청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기사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사 건 : 2006가합74575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 ○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변 론 종 결 : 2007. 7. 25.

판 결 선 고 : 2007. 8. 29.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피고가 발행하는 동아일보 사회면 우측 상단부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이 사건 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본문은 이 사건 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위 기일에 위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위 정정보도를 하는 날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6. 5. 24.자 제1면 및 제3면에 다음과 같은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1면 기사>

제목 : 지씨, 興의원 사무실에 취업 청탁

합수부 “정수기 회사 취직 - 닷새만에 해고” 진술확보

해당의원실 “알선해 준 일 없어”

지씨 구속 ... 난동 박씨 영장기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흥기를 휘두른 지○○(50) 씨가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측을 찾아다니며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지씨는 열린우리당 김○○(인천서-강화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2차례 찾아가 “내야 할 벌금이 많은데 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의 진○○ 보좌관은 “지씨에게 ‘알아보겠다’고만 말했다”면서 “이후 지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인천의 한 구의회 의원은 이날 “보름 전 지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A, B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명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뒤를 봐줘 정수기 업체인 C사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광고를 보고 C사의 한 대리점을 찾아가 임시 판매원으로 취직했으나 신원증명서류를 내지 않아 닷새 만에 해고됐

다는 지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지씨를 면접하기는 했지만 부적격자로 판단해 입사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씨와 한동안 함께 살았던 김모(54) 씨는 이날 “지씨가 ‘내가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과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합수부는 23일 지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모(54)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3면 기사〉

제목 : “의원 2명이 20만-30만원씩 용돈” 자랑

“열린우리당 당원 … 선거운동도 했다”

“내 뒤 봐주는 사람 많아” 주변에 얘기

정수기 회사 “면접 탈락 … 청탁 없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흥기를 휘두른 지○○(50) 씨는 평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나를 돌봐주고 있다”고 주변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왔다.

지씨는 또 전화로 “열린우리당 당원이며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며 민원해결을 요구하기도 했고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을 찾아가 취업을 부탁하기도 했다.

▽ 정치인과 친분? = 인천의 한 구의원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씨가 범행하기 보름 전 쯤 지씨의 오랜 친구인 최모(50) 씨와 함께 지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씨는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 많다”며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 의원과 서울지역 B의원을 거명했다.

지씨는 “의원들에게 20만-30만원씩 용돈을 받는다”며 “한꺼번에 2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C정수기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일리를 주겠느냐. 다 의원들이 소개해주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씨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김모(62) 씨도 “○○이 3월 초췌 양복을 빼입고 집에 들어와 무슨일이냐고 물었더니 ‘C사에 취직했다’면서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천해주 취직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올 1, 2월 지씨와 함께 생활한 또 다른 김모(54) 씨는 “2월 ○○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내가 열린우리당 당원이다. 선거운동도 나서서 한 사람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달 초에 한 보좌관이 ○○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면서 “이 편지를 편지함에 넣어

두었는데 최근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 취업 부탁 =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지씨가 두 차례 사무실을 찾아왔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취업을 부탁했지만 실제 일자리를 알선해 주진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김○○ 의원실의 진○○ 보좌관은 “지씨가 열린우리당 중앙당 법률지원단에 전화를 걸었다”면서 “법률지원단이 우리측에 그를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진 보좌관은 “지씨는 처음에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면서 “그는 이후 보호감호소에서 교도관을 때려 벌금을 내야 한다며 취업을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경 두 차례 진 보좌관을 찾았고 2, 3차례 전화로 취직을 부탁했다. 그는 3월경 ‘C사의 간부사원으로 특채가 됐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진 보좌관은 설명했다.

▽ 취업청탁의 진실은? = C사 대리점에 임시판매원으로 취직했다가 닷새만에 해고됐다는 지씨의 검찰 진술과 관련해 C사 측은 “지난달 초 지씨가 사업설명회를 3일간 들었다”면서 “지씨를 면접한 사실은 있지만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C사 관계자는 “국회의원 측의 취업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씨와 함께 살았던 김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인천 서구청 앞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을 C사에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 정수기 회사의 광고모델을 하기도 했다. 합수부는 지씨가 주변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열린우리당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자랑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어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원고가 지○○의 취업청탁에 따라 그를 정수기 업체에 취업시켜 주고 그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여부

위 각 기사를 살펴보면, 위 각 기사 중 지○○이 원고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취업 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원고의 실명이 분명하게 적시된 반면, 지○○이 열린우리당 국회의

원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정수기 업체에 취업하였다는 부분에서는 그 국회의원 실명이 적시되지 않고 ‘A, B 의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위 각 기사에는 원고가 지○○의 취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보좌관 진○○ 및 위 정수기 업체의 관계자의 반론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피고는 위 각 기사가 게재된 다음날인 2006. 5. 25.자 후속기사에서 “지씨가 실제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 지역 사무실. 그가 인천의 한 구의원 등에게 실명을 거론한 A, B의원과 달리 그곳은 김○○(인천 서-강화 갑) 의원의 사무실이다”라고 보도함으로써(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위 A, B의원과 원고가 동일한 인물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위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해 보면, 위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지○○이 원고의 지역구 사무실에 취업을 청탁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지○○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지급한 것처럼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위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인천지역 A 의원이라는 집단 표시를 함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위 A 의원이라는 집단 표시 속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취업을 청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기사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 지〉 정정보도요구문

본지는 2006. 5. 24.자 1면에 “지씨 與의원 사무실에 취업청탁” 제하의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흥기를 휘두른 지○○에게 취업

을 알선하였고, 3면에 “의원 만날 때마다 20~30만 원 용돈 자랑” 제하의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김○○과 지○○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회의원 김○○과 지○○은 만난 적이 없고 용돈을 준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청호나이스와는 관련이 없어 취적을 알선한 바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피고들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를 통해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자 판결 (2006가합93415)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8월 29일 이○○이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정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피고 헤럴드미디어는 2006년 8월 30일 4면에 「정·관 로비창구 핵심 3인 겨냥하는 검의 칼끝」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에서 위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서,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 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작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그 보도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당시 위 로비의혹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점,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보도의 의도가 그다지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93415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이 오 영

피 고 :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서울 중구 정동 1-17

대표이사 홍 정 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 세 현

변 론 종 결 : 2007. 7. 25.

판 결 선 고 : 2007. 8. 29.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0.부터 200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헤럴드경제’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4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만일 피고가 제2항 기재 기일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헤럴드경제’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부분은 14급 명조체 활자로 3회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제2항 기재 기일에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기사 보도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헤럴드경제’ 2006. 8. 30.자 4면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다른 대부분의 언론기사와는 달리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었고, 원고가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핵심브로커 중의 한 명으로서 수사대상에 떠오른 인물들의 뒤에 숨어 이들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 취재 및 보도 경위

(1) 피고 소속 기자 박○○은 2006. 8. 20.경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로비의혹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계자인 모 검사실에서 “상품권 발행업체의 인허가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된 브로커가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전해 듣고, 2006. 8. 28.경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사 기자로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내용의 일부를 확보하였는데,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원고가 사행성 게임비리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피고 소속 기자인 김○○, 박○○ 등은 위 사건과 관련된 취재과정에서 성인게임 개발업자인 박◇◇, 한국컴퓨터산업 중앙회 회장 황○○,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보좌관인 정○○ 등을 취재하면서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로비의혹의 배후에 숨겨진 브로커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누구로부터도 그 브로커가 원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듣지는 못하였고(정○○이 박○○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원고의 실명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소문에 불과할 뿐 그 브로커의 정확한 신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안다미로 사장 김□□은 만나지도 못하였다.

다. 보도 이후의 정황

위 보도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결과 원고는 위 보도의 내용과 같이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배후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〇〇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닌,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후속취재에서 위 로비의혹과 원고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위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실명이 그대로 적시된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위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의 입장에서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취재 및 보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 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작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그 보도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당시 위 로비의혹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점, 피고가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보도의 의도가 그다지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정정보도

또한 피고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주문과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정정보도의 횟수는 1회로 하고, 정정보도의 게재 지면은 4면

으로 하며, 정정보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매일 100만 원으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사는 2006. 8. 30. 헤럴드경제를 통하여 “정·관 로비창구 핵심 3인 겨냥하는 檢의 칼끝” 및 “이○○씨 얼굴 없는 브로커 ... 수십억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이○○씨가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핵심브로커 중의 한 명으로 떠올랐으며, 수사대상에 떠오른 인물들의 뒤에 숨어 이들을 배후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씨는 게임업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정·관계 인사와 교류하지도 않았고, 김□□씨와는 알지도 못하며, 상품권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건어 정·관계에 로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이와 다르게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정정합니다.

〈별지 2〉 보도내용

정·관 로비창구 핵심 3인 겨냥하는 檢의 칼끝

이○○씨 얼굴 없는 브로커 ... 수십억 비자금 조성 혐의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품권 업체 안다미로의 대표 김□□씨를 비롯해 '얼굴 없는 브로커'로 알려진 이○○씨, 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E모씨 등 3인을 '정·관계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한 인물들로 보고 이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이사 재직시 경품용 상품권업체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이씨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나섰다.

▶ ‘얼굴 없는 브로커’ 이○○ = 이씨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세간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24일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업체 대표들의 무더기 출금 조치가 이어질 당시,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서 핵심 브로커 중 한 사람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씨가 수십억 원을 모아 로비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 상품권 업체 대표들은 그러나 “이씨의 실명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할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다.

이씨는 이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브로커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며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관계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될 정도면 정치권과 관가에 그의 이름 석 자를 아는 이가 분명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업체나 게임업체 인사들조차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때문에 다른 브로커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 그들과의 친분을 쌓은 다음 로비를 펼치는 ‘일반적’인 브로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대상에 떠오른 인물들의 뒤에 숨어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평이 희화적이고 중자적으로 표현한 것일뿐, 독자들에게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5.자 판결 (2007가합4733)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9월 5일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와 소속 시사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동아일보가 2007년 1월 4일 “나대로 선생”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통하여 마치 원고가 특정 대선주자인 이명박만을 선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만평은 작가가 이명박과 원고의 이니셜이 동일한 점에 착안하여 ‘문화방송(MBC)이 자신과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이명박만 선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전혀 엉뚱한 핑계거리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여당 및 그 대선주자들의 처지를 회화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이 사건 만평이 단지 이니셜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원고와 이명박을 결부시킨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생뚱맞아 보이지만, 만평을 보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만평이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이명박만을 선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4733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수

담당변호사 송 상 교

피 고 : 1. 이 ○ ○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김 학 준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석 영

변 론 종 결 : 2007. 8. 22.

판 결 선 고 : 2007. 9. 5.

주 문 :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일간신문 동아일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같은 별지 말미에 적은 방법에 맞추어 게재하라. 피고 회사가 위 기한까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 피고 이○○는 아래 만평을 그린 시사만화가이고, 피고 회사는 그 만평을 게재한 신문사이다.

이 ‘나대로 선생’이라는 제목의 별지2와 같은 2007. 1. 4.자 동아일보 만평(이하 이 사건 만평이라 한다)을 통하여 마치 원고가 특정 대선주자인 이명박만을 선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일반론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한 두 컷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3. 판단

위와 같은 관점에다가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만평이 게재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김근태, 정동영 등 여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이명박을 비롯한 야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을 제1호증의 기재), ② 피고 이○○는 평소 자신의 다른 시사만화에서도 특정인물이나 단체의 두문자 또는 이니셜을 이용해 언어유희를 하는 기법을 즐겨 사용해왔던 점(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③ 당시 원고가 야당의 특정 대선주자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보도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이 사건 만평에서 원고가 이명박만을 선전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여당측 인사인 것으로 묘사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만평은 작가가 이명박과 원고의 이니셜이 동일한 점에 착안하여 "문화방송(MBC)이 자신과 이니셜이 같다는 이유로 이명박만 선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전혀 엉뚱한 핑계거리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여당 및 그 대선주자들의 처지를 희화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이 사건 만평이 단지 이니셜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원고와 이명박을 결부시킨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생뚱맞아 보이지만, 만평을 보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만평이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이명박만을 선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만평에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별지 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보도내용(만평) 생략 - 편집자 주

□

보도내용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위법성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 12. 1.자 판결 (2006나7242)

대 법 원 2007. 9. 6.자 판결 (2007다2268)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7년 9월 6일 부산 모 병원장이자 정신과 의사인 박○○이 한국방송공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원고 병원이 김○○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입원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의 신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원고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 가운데 ‘강제입원’ 내지 ‘강제수용’,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 ‘एं터리’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김○○의 입장에서 보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김○○에게 장기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운영상 문제점,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가 지난 2005년 7월 7일 KBS 2TV 「뉴스타임」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술 깨보니 정신병원』 제하의 방송과 같은 날 KBS 1TV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제하의 방송을 통해 원고 병원이 김○○(이 사건의 제보

자)을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영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및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350~357면 참조).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나724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박 ○ ○

소 송 대 리 인 : 법무법인 삼양

담 당 변 호 사 : 김 진 기

피고, 피항소인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신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가합18545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11. 15.

판 결 선 고 : 2006. 12. 1.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5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2, 12,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부산 금정구 ○○동 ○○○ 소재 ○○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는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강○○은 피고 방송사 소속 취재부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람이다.

• 피고 강○○은 2005. 7. 7. 20:00에 방영하는 KBS 2TV “뉴스타임”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약 1분 32초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술깨보니 정신병원

•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한 40대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이 40대는 그 동안 눈이 거의 실명지경에 이르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피고 강○○(화면 아래쪽에 “1999년 4월 김○○ 씨 술 취해 쓰러진 뒤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인계”라는 자막 표시) : 48살 김○○ 씨는 지난 99년 4월 24일 밤 9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김씨가 눈을 뜬 곳은 부산 ○○동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황한 김씨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 원고 병원 관계자[화면 아래쪽에 “병원관계자 (입원동의를)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라는 자막 표시] :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하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 피고 강○○ :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지가 있다는 김씨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김○○(화면 아래쪽에 “4년 동안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자막 표시) : 보호자 없는 사람은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곳이 정신병원인지, 세계 어떤 나라가..... 있는지.....

• 피고 강○○ : 구청은 매달 80만 원 가량의 병원비만 지불했을 뿐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려환자는 일단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경찰관계자(화면 아래쪽에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됐습니다”라는 자막 표시) :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되었습니다.

• 피고 강○○ : 건설근로자였던 김 씨는 4년 동안의 정신병동 생활 이후 말초신경 장애와

실명으로 장애인 이 되었습니다. KBS뉴스 강○○입니다.

• 또한 피고 강○○은 같은 날 21:00에 방영하는 KBS-1TV “뉴스 9”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앵커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원고는, 피고 강○○이 다음날인 2005. 7. 8. 06:00에 방영하는 KBS 1TV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도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될 뿐이다).

•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병원으로서는 행려환자인 김○○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김○○을 치료·수용하였던 것인데, 피고 강○○이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원고 병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이 김○○을 4년간 강제수용하였고, 그동안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과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0원과 원고 병원의 3년간의 홍보비용 111,558,900원의 합계 411,55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방송보도에 있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2,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6, 갑16호증의 1 내지 8, 갑17호증의 9, 10, 갑18호증, 갑20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위 김○○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8. 8.경부터 부산 연제구 ○○○동 ○○○-○○ 소재 ○○○의 집에 세들어 살았는데, 그의 형인 김○○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 김○○은 1999. 4. 24, 21:37경 부산 연제구 ○○○동 ○○○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연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파출소로 옮겨진 후, 행려환자로 인정되어 같은 날 22:20경 위 파출소로부터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고, 그 후 원고 병원은 1999. 5. 19.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김○○의 보호의무자인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 원고 병원이 김○○을 인계받을 당시 김○○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연산경찰서가 김○○을 원고 병원에 인계할 당시 교부한 '행려환자 인계서'에도, 김○○의 성명란에 '자칭(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직업, 본적, 주소란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견일시 및 당시개황란에는 '행려환자로 보이고 연고도 이름도 몰라 인계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김○○은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1999. 4. 25, 07:20경에 깨어나 그곳이 원고 병원인 것을 알고, 원고 병원 간호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왜 자신이 병원에 있는냐고 하면서 내보내 달라고 하였다.

- 김○○은 1999. 4. 26.에는 원고 병원 간호사에게 '내 이름은 김○○이 아니라 김○○이고요, 43세입니다. 누나 집에 지금 연락해 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김○○이 알려준 김○○의 누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김○○의 누나와 통화를 하였는데, 김○○의 누나는 집

에 급한 사정이 있어 데리러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그 이후로도 김○○은 계속하여 자신의 누나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 면회를 오라고 하였으나, 그의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기도 하였고,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그의 누나는 데리러 갈 형편이 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면회도 오지 아니하였다.

• 한편으로, 원고 병원은 김○○에게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김○○에 대해 알코올 금단증상에 대한 치료와 만성알코올 의존환자에게 동반되는 반사회적 성격 및 편집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며, 김○○의 입원 후 매 6개월 마다 그의 잔존증상 치료를 위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부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그곳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김○○을 입원치료하였다.

• 원고 병원은 김○○의 입원 기간 중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이름란에는 원고 병원에 인계될 당시 '행려환자 인계서'에 기재된 이름인 '김○○'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연제구청에서 의료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임의로 부여한 관리번호를 각 기재하여 김○○을 관리해 왔다.

• 김○○은 2001. 7. 말경부터 다리 마비감을 호소하면서 보행장애를 보여, 2002. 2.경부터 부산의료원 등에서 외진을 받았고, 2002. 2. 15.부터 같은 달 26.경까지는 말초신경장애로 부산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 4. 7.경부터는 시력장애로 인해 부산의료원 등에서 외진을 받았다.

• 김○○은 2004. 3. 27. 원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갔다가 2004. 4. 2. 원고 병원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동안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에서 나갈 수 없었다.

• 김○○은 2005. 4. 18.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할 당시 김○○은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로 2급의 지체장애 상태였다.

• 김○○은 원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05. 6. 30. 피고 방송사 부산방송총국에서 피고 강○○을 만나, 그가 1999. 4. 24. 21:00경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신병원이었고, 그의 이름도 아닌 엉터리 이름으로 4년 동안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 이에 피고 강○○은 원고 병원, 관할 경찰서, 김○○이 입원 전 거주하던 집의 주인인 ○○○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하였는데, 그 취재과정에서 원고 병원은 피고 강○○에게 김○○이 행려(무연고)환자로서 원고 병원에 인계된 경위와 인적 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행려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

해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 직전인 2005. 7. 5.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장기·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주지역의 모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관할 자치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후인 2005. 7. 8. 김○○을 원고 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 원고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에서 문제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현행 정신보건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 한편으로, 김○○은 이 사건 방송 후 부산지방법검찰청에 원고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검찰청은 2005. 10. 10.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는, 김○○이 원고 병원에 ‘강제입원’ 또는 ‘강제수용’ 되었고,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boy’가 될 수 있다는 앵커의 말을 방송하면서, 김○○이 술 취해 쓰러진 뒤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인계되었다는 자막과 함께 그와 같은 취재기자의 말에 이어서 김○○이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하였다는 취재기자의 말을 방송하는 한편, 김○○은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한다는 원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방송한 후,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지가 있다는 김○○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취재기자의 말을 방송하였다.

이러한 방송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방송내용은,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김○○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되고 그 후 보호자가 없어서 원고 병원에서 임의적으로 퇴원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원고 병원 관계자가 김○○의 치료는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도 포함되어, 원고 병원이 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방송 내용 가운데 ‘강제입원’이나 ‘강제수용’ 및 ‘영화 속의 올드boy’이라는 표현은, 김○○의 입장에서 보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되고

그 후 김○○이 말하는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누나가 면회를 오지 않아 구청장 이외에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는, 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서, 김○○이 원고 병원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취재기자의 말을 방송하였다.

이러한 방송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방송내용은,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채 입원되었다는 것으로서, 구청과 경찰의 책임도 함께 언급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다는 취재기자의 말과 김○○의 치료는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원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방송한 후에 한 것으로서, 김○○의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것이 전적으로 원고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방송내용 가운데 ‘엉터리’라는 표현은,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원고 병원에서 ‘김○○’라는 다른 이름과 의료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구청에서 임의로 부여한 관리번호에 의하여 관리된 것은 사실이고, 김○○이 원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자신의 본래 이름과 누나의 전화번호를 말하여 그 간호사가 김○○의 누나와 통화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김○○의 정확한 신원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하면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는 입원을 금지하고, 시도지사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직전인 2005. 7. 7.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치료한 정신병원 원장을 고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은, 김○○의 사례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 보호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그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원인 추가에 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2006. 7. 13.자 청구원인 추가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강○○이 2005. 7. 11. KBS ○○○ “○○○○”의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 방송과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원인에 위 2005. 7. 11.자 방송을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준비서면과 갑2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2005. 7. 11.자 방송은 피고 강○○이 아닌 ○○○ 기자가 별도의 취재를 하여 이를 방송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과 보도 형식, 취재 대상 등 여러 가지 면을 달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추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고 의 영
 판 사 문 상 배
 판 사 이 환 승

3심 판결문

사 건 : 2007다226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돈 희

피고, 피상고인 :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정 연 주

2. 강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 호 진, 이 호 중, 이 신, 정 창 섭, 박 헌 홍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7242 판결

판 결 선 고 : 2007. 9. 6.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여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의 요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김○○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보호자가 없

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병원에 4년 동안 강제 입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관리되지 않았으며, 건설근로자였던 김○○이 입원 기간 중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실제로 김○○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병원에 계속 입원되어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김○○'라는 이름과 구청에서 의료보험적용을 위하여 부여한 관리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입원기간 중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가 생긴 것은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 이 사건 방송 중에는 원고 병원 관계자가 '김○○의 입원치료를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구청과 경찰 측의 책임도 함께 언급되어 있는 사실, 한편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제반 권리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방송 직전 일부 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위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병원장을 고발하고 관찰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원고 병원이 김○○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입원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의 신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원고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 가운데 '강제입원' 내지 '강제수용', '떨쩍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속의 울드보이', 'एंटी리'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김○○의 입장에서 보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김○○에게 장기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에 관한 정신보건법의 운영상 문제점,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언론의 진실보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정신보건법과 주민등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 수 안
대법관 고 현 철
주 심 대법관 양 승 태
대법관 김 지 형

□

사찰이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 9. 19.자 판결 (2006가단4557) (확정)

사실개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원신 판사는 2007년 9월 19일 공무원 엄○○과 처 유◇◇가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피고 안동문화방송은 2006년 4월 24일 7:30경 ‘안동MBC 뉴스투데이’와 같은 날 21:40경 ‘안동MBC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농지전용 맘대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무허가 집을 짓고 조경도 불법으로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그 후 이러한 방송내용이 안동MBC 홈페이지 ‘뉴스리스트’ 등에 게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시 소재 사찰)이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현장이 외부의 자가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영역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현장이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취재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더욱이 원고 엄○○은 공무원이고 원고 유◇◇는 그 처이므로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더 많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단4557 손해배상(기)

원 고 : 1. 엄 ○ ○

2. 유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덕기

피 고 : 1.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

안동시 태화동 709-1

대표이사 이 상 근

2. 이 ○ ○

안동시 태화동 709-1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동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변 론 종 결 : 2007. 8. 22.

판 결 선 고 : 2007. 9. 19.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엄○○에게 15,000,000원, 원고 유◇◇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엄○○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고, 원고 유◇◇는 원고 엄○○의 처로서

영주시 고현동 90 전 4,340㎡(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있는 '천운사'라는 사찰의 경영자다.

(2) 피고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안동MBC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는 안동MBC 뉴스에 방송된 별지 방송내용 기재 기사를 취재·작성한 기자다.

나. 보도 경위

(1) 피고 이○○는 2006. 4. 20.경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현장이 불법전용되어 있고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2) 이에 피고 이○○는 2006. 4. 21.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들이 건물을 짓고 축대를 쌓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연못을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이 부재중이라서 원고 엄○○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였다.

(3) 그런 다음, 관할 행정기관인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관계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원고 엄○○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데, 원고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였으며, 영주시는 2006. 3. 24.경 원고들에게 원상복구명령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 엄○○은 자리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다.

다. 보도 내용

피고 회사는 2006. 4. 24. 7:30경 '안동MBC 뉴스투데이'와 같은 날 21:40경 '안동MBC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농지전용 맘대로>라는 제목으로 별지 방송내용의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였고, 그 후 이러한 방송내용이 안동MBC 홈페이지 '뉴스리스트' 등에 게시되었다.

라. 보도 후 사정

그 후 영주시는 2006. 4. 28.경 추가로 원고 유◇◇에게 이 사건 현장 등에 무단히 주차장, 연못 등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1 내지 6, 7-3, 7-13, 을 2-1 내지 10,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가.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들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방송하였으나, 앵커나 기자가 ‘영주시 공무원’, ‘영주시청 농촌지도사’라고 말하였고, 방송화면으로 이 사건 현장 및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현관을 보여 주었는데,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공무원이 원고 염○○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가 원고 염○○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가 원고 염○○의 처인 원고 유◇◇를 지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유◇◇가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 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 보도는 ‘영주시청 공무원인 원고 염○○이 농지에 무허가 집을 짓고, 마당에 조경수를 심고, 축대를 쌓고, 연못도 파서 불법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염○○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3. 위법성 조각

가. 위법성 조각의 요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

나. 공공성 여부

이 사건 보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다. 진실성 여부

(1) 원고 엄○○은, 이 사건 현장 중 약 700평에는 연맥을 심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비닐 하우스가 있어 이 사건 현장 전체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들은 전체를 전용한 것으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내용 어디에도 원고 엄○○이 이 사건 현장 전체를 전용하였다고 언급한 부분은 없을 뿐 만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전체가 전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도 하지 않았다. 설령 시청자들로 하여금 전체가 전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의 상당부분이 전용되었다는 주요부분은 사실이다.

(2) 원고 엄○○은, 이 사건 현장에 식재된 조경수는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인데, 원고들이 거액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내용 어디에도 거액을 들여 구입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3) 원고 엄○○은, 300여평의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다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보도 내용의 문맥상 조경수가 300평에 다 심겨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마당에 조경수가 심겨져 있다는 주요부분은 사실이다.

(4) 원고 엄○○은, 정원에 관상용 연못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도 내용의 문맥상 관상용 연못을 조성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못을 파 놓았다는 주요부분은 사실이다.

(5) 원고 엄○○은, 이 사건 현장에 약 30평의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였을 뿐인데 60평 정도의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고현동 137에 건축되어 있는 달마사 건축물과 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서를 화면으로 내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 주택, 천운사 및 창고가 설치되어 있다는 주요부분은 사실이고, 이 건물들의 총면적은 169.07㎡에 이르러(갑 3), 60평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 이 정도의 차이는 무방하다. 또한 이 사건 방송화면 어디에도 달마사 건축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고현동 137에 관한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명령서를 방송화면으로 내 보내면서 피고 이○○은 이웃주민의 농지불법전용도 언급하고 있어 이 화면이 원고 엄○○에 대한 것으로 내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방송을 보는 사람이 원고 엄○○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여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도 복구명령서가 이미 나간 상태로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무방하다.

(6) 결국, 이 사건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상 ‘공무원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이 주요부분이고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4. 명예훼손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이○○가 ① 원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였고, 원고들의 진술은 청취하지 않았으며, 취재과정에서 엄○○의 모에게 편파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② 이 사건 보도 이후에 이를 항의하는 원고 유◇◇에게 ‘제 정신이 아니구만’이라는 말을 하였고, ③ 원고 엄○○의 직장 상사에게 원고들이 과거에 이혼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재혼한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②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주장자체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③에 관하여는 갑 4호증, 7호증의 1, 2, 1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의미

사생활의 비밀이란 외부의 자가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영역을 의미하고, 사생활의 자유란 개인이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고 이○○가 ① ○○ 2006. 4. 21. 원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하였고, ○○ 원고들의 진술은 청취하지 않았으며, 취재과정에서 원고 엄○○의 모에게 편파적인 언사를 사용하였고, ② 이 사건 보도 이후에 이를 항의하는 유◇◇에게 ‘제 정신이 아니구만’이라는 말을 하였고, ③ 원고 엄○○의 직장 상사에게 원고들이 과거에 이혼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재혼한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④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

그러나, ① 내지 ④의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

(가) 다만, ① 중 ○○ 및 ④의 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현장이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

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건 현장이 외부의 자가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① 중 ○○ 및 ④의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현장이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을 취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취재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더욱이 원고 엄○○은 공무원이고 원고 유◇◇는 그 처이므로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수인하여야 할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취재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중 ○○ 및 ④의 행위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③에 관하여는, 갑 4호증, 7호증의 1, 2, 12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이 원 신

방송내용

■ 화면 - 앵커를 보여주고, 앵커 뒤의 배경으로 이 사건 현장의 정지화면과 함께 큰 제목으로 '농지전용 맘대로', 작은 제목으로 '농지불법전용'이라는 자막이 나옴.

● 앵커 : 영주시의 한 공무원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무허가 집을 짓고 조경도 불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시의 원상복구 조치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화면 - 이 사건 현장 전체를 보여주다가, 건물, 마당, 종, 조경수, 축대, 못을 차례로 보여줌.

● 기자 : 영주시 고현동의 한 외딴 마을. 60평짜리 가건물이 들어서 있고, 300평 남짓한 마당에는 보기 좋은 조경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아두고 거대한 연못도 파 놓았습니다.

■ 화면 - 기자가 원고 엄○○의 어머니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여줌.

● 원고 엄○○의 어머니 : 그냥 이래 꾸며서 보기 좋게 살라고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는 거여.

- 화면 - 이 사건 현장 전체를 보여주다가, 건물 밖 여러 곳을 보여줌.
- 기자 : 이곳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던 밭이었지만, 농지를 임대받은 집주인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름 아닌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영주시청 농촌지도사입니다.
- 화면 -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여줌.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 하기 전에 '내 농가주택 짓겠습니다' 하면 다 해주거든. 안타까워.
- 화면 - 다시 이 사건 현장 전체, 건물, 축대 등을 차례로 보여주다가, 영주시 영주시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현판을 보여주고, 영주시 고현동 137에 관한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클로즈 업 시킨 후(다만 명령의 대상자에 관한 인적사항은 화면에서 보여주지 않음), 다시 이 사건 현장을 보여 줌.
- 기자 : 영주시는 이 공무원과 이웃주민의 농지불법전용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비로소 비위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주시는 수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복구하라며 이 직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끝] □

**보도가 명예훼손적 사실을 일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상당성이
있으므로 보도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0.자 판결 (2007가합1826)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10일 시민의신문 전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가 시민의 신문 편집국장, 노조위원장, 광고부국장,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의 신문 2006년 11월 11일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정론지이고 싶습니다” 이○○ 성추

행사건 그 후 60일』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채○○ 등을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2006년 12월 18일 「성폭력 가해자의 전형 쫓는 이 전 대표』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작성·보도하였고, 2006년 12월 25일 「이○○ 전 사장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 설□□(편집국장)이 쓴 사설이 게재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던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었고, 그 이외에도 ‘2005 희망포럼’ 운영위원장, ‘동아시아 시민사회 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사회단체의 중요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인물이었던 점, 위 각 보도는 이처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성추행을 저질러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서도 다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식지분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추천하려고 하는 등 위 신문사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며, 위 보도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1826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피 고 : 1. 설 □ □

2. 이 △ △

3. 김 ◇ ◇

4. 최 ○ ○

5. 이 △ △

6. 이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인 섭, 강 문 대

변 론 종 결 : 2007. 9. 19.

판 결 선 고 : 2007. 10. 10.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경부터 2006. 9. 30.까지 ‘시민의 신문’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재직 한 사람이고, 원고가 성추행 논란으로 위 신문사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피고 설□□은 위 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이△△는 노조위원장, 피고 김◇◇는 광고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신문사의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며, 피고 최○○, 이△△, 이◇◇은 아래 기사를 작성한 특별취재팀의 구성원들이다.

나. 피고들은 특별취재팀의 명의로 2006. 11. 11.자 위 신문 제3면에 원고가 채○○ 등을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별지1 기재 기사를, 2006. 12. 18.자 위 신문 제3면에 같은 취지의 별지2 기재 각 기사를 각 작성, 보도하였고, 특히 2006. 12. 18.자 위 각 기사 옆에는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을 적시한 채○○ 작성의 별지3 기재 진술서 전문을 함께 게재하였다.¹⁾

또한 2006. 12. 25.자 위 신문에는 피고 설□□이 쓴 ‘이○○ 전 사장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별지4 기재 사설이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이후 주주총회에서 피고들이 내세운 대표이사 선임안에 반대하자, 원고에 대한 보복 및 압박의 의사로 위와 같이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특히 채○○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채○○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그 내용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가 작성한 위 진술서 전문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보도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7. 9. 28.자 참고서면 등을 통해 위 주장 이외에 다른 지엽적인 주장도 하고 있으나, 변론과정 전체를 통해 나타난 원고의 주된 주장은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있으

1) 위 진술서 내에서 채○○ 및 관련자들의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여 게재하였다.

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위 보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일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위 보도는 “원고가 채○○를 비롯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각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보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공익성

원고는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로서 공익적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던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었고, 그 외에도 ‘2005 희망포럼’ 운영위원장, ‘동아시아 시민사회 포럼’ 공동대표 등 여러 사회단체의 중요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인물이었던 점(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위 각 보도는 이처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던 원고가 성추행을 저질러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서도 다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식지분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를 추천하려고 하는 등 위 신문사에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이었던 점²⁾ 등을 종합하면, 위 보도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신문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한 시점을 전후하여 위 각 기사들이 보도된 점 등에 주목하여 위 각 보도행위에 원고를 압박하기 위한 사익적인 목적이 일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진실성 및 상당성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4. 7.경 위 신문사 업무국 소속 직원인 정 모씨로부터 원고가 자신의 손을 잡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당하자, 2004. 11. 10. 위 신문사 노동조합 측에 “회사 경영진이 수년간에 걸쳐 여성조합원들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며 당사자와 노조에 대해 공식사과를 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었다.

② 그 후 원고는 또다시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한 시민단체의 간사였던 채○○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5. 채○○로부터 원고가 모든 공적인 지위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원고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증명에는 원고의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이 적시된 위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러자, 원고는 2006. 9. 13.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직 및 관련 단체의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③ 이후 원고의 사퇴로 인한 경영공백 등으로 위 신문사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자, 피고 설□□, 이△△, 김◇◇를 포함한 위 신문사의 직원들은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인 남○○을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위 신문사의 일부 직원들은 원고가 위 신문사의 경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④ 그러나, 2006. 12. 14. 개최된 위 신문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는 다른 주주들로부터 위 임받은 것을 포함해 약 40% 상당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표이사 선임안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위 비상경영위원회 측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부 주주들과 원고 사이에 위 신문사의 경영실패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언쟁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이 계속되다가 결국 주

2) 그 구체적인 보도경위는 아래 인정사실 참조.

주총회는 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⑤ 한편, 2006. 9. 14자 ‘오마이뉴스’³⁾에는 원고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잘 한다고 격려한 것인데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고 내가 여 간사와 진위 여부를 놓고 싸울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사퇴했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또한 2006. 12. 15자 ‘뷰스엔뉴스’에는 원고가 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할 말이 많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감안해 침묵하고 있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 “원래 성 관련 문제는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사실을 못 밝히면서 상황만 부끄러운 일로 번지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을 사퇴한 것이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인정근거 :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채○○ 등을 위 진술서 등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성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진술서가 채○○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원고의 반론 등을 통해 그 실제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각 인터뷰 기사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성추행 사실을 명백하게 부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 모씨 및 채○○로부터 원고가 자신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당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 신문사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매체에는 “나는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는 등 마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뉘앙스의 원고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점,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직 사퇴 이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위 신문사의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식지분을 이용해 위 신문사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표이사 임명안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직접 다른 대표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점 등의 사정들이 엮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채○○를 비롯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각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3) ‘오마이뉴스’ 및 ‘뷰스엔뉴스’는 인터넷 신문이다.

따라서, 위 각 보도행위는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채○○ 사이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위 진술서를 그대로 게재한 것은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면서 다시 위 신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들로서는 채○○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성추행 사실의 신빙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채○○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도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이 중 훈

〈별지 1~4〉 보도내용 생략 - 편집자 주

□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범죄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31.자 판결 (2006나6200)

대법원 2007. 7. 12.자 판결 (2006다656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자 판결 (2007나20029) (파기환송심)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대구 모 정신

과 의원을 운영하는 장○○이 주식회사 연합뉴스 외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 정기지도 점검에서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닌 병원 직원을 시켜 약을 조제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고 이 사실이 식약청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 언론사들에 의해 기사화 되자, 원고의 의원 이름이 보도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다른 적발 의원의 이름은 거명치 않은 채 원고의 의원 실명만 공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으며 식약청이 원고를 적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적용으로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7년 7월 12일 “원심은 피고들이 마약류취급자로서 원고의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 또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1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335~339면 참조).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나620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장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강 래 혁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장 영 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세움

담당변호사 송경준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 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3. 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이 상 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 영 대

4.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박 진 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용 욱

5.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전 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채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단170004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7. 20.

판 결 선 고 : 2006. 8. 31.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3쪽 16행 ‘조제한’을 ‘조제한’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경 선
판사 김 민 수
판사 강 수 정

3심 판결문

사 건 : 2006다65620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장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별
담당변호사 강 래 혁

피고, 피상고인 : 1.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진 영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 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3. 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이 상 훈

4.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박 진 열

5.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전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영 길, 임 동 채, 함 승 완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나6200 판결

판 결 선 고 : 2007. 7. 12.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대구 ○○구 ○○동에 있는 '장□□□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 10. 19.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에서 마약류취급자인 원고가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을 시켜 약을 조제하였다고 적발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 4. 8. 위 정기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대구 장□□□ 정신과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한 혐의로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위와 같은 기사를 각 전재(轉載)하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마약류취급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마약류취급의 적절성을 통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등 위반업소들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보도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소위 전재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또는 그 기사를 기초로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있거나, 그 증명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1725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들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원고 운영의 병원 등 위반업소들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보도하였거나,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소위 전채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또는 그 기사를 기초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사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마약류취급자로서 원고의 범죄를 보도함에 있어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 또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홍 훈
주 심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대법관 안 대 희

파기환송심 판 결 문

사 건 : 2007나20029 손해배상(기)

원 고, 항 소 인 : 장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별

담당변호사 강 래 혁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주

담당변호사 박 양 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진 영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 중구 정동 1-16

대표이사 김 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3. 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이 상 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 영 대

4.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박 진 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스

담당변호사 이 용 욱

5.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대표이사 전 재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동 채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단170004 판결

환 송 전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나6200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9. 20.

판 결 선 고 : 2007. 10. 25.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각 금 2,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은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는 2005. 6. 24.부터,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2005. 9.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는 2005. 9.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은 2005. 9. 13.부터,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는 2005. 6. 23.부터 각 2007. 10. 2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을마 제1호증과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구 ○○동 ○○○-○○ ○○빌딩 4층에서 “장□□□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 10. 19.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을 시켜 약을 조제하게 하였다는 의무사항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 4. 8. 2004년도 마약류취급자 정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위 보도·해명자료에 원고를 포함한 위반업소 명단을 첨부하였다.

라. 피고들의 각 기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피고 연합뉴스'라 한다) 소속 기자인 소외 류○○은 위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해명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연합뉴스는 류○○이 작성한 기사를 2005. 4. 8. “제약회사, 병원, 약국, 마약류 취급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뉴스로 게재·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들의 마약류 취급에 구멍이 뚫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 6천 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8개 업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위반유형별로는 ▲마약류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50건 ▲실재고량과 장부상 차이 43건 ▲마약류 저장장소 이외의 장소 보관 31건 ▲허위장부 기재 20건 ▲취급자 아닌 자의 취급 5건 ▲처방전 없이 투약 3건 등이었다. (중략) 대구 장□□□ 정신과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한 혐의로, 충남 ○○○○약국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이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해명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2005. 4. 8. “병·의원들 마약관리 곳곳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뉴스로 게재·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내 제약회사와 병·의원 등에서 취급되는 마약류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한해동안 제약회사와 병·의원, 약국 등 3,6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점검결과 338개 업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급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이 중 133개 업소는 마약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50개소는 유효기간 경과제품을 사용했으며, 43개소는 실재고량과 장부상 기록에 차이가 있었다. 또 31개소는 마약류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보관했으며, 20개소는 허위장부를 기재했고, 5개소는 취급할 수 없는 자가 취급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처방전 없이 투약하는 사례도 3건이 있었다. (중략) 이밖에 대구 장□□□ 정신과의원 등은 무자격자가 마약류를 조제했으며, 충남 ○○○○약국 등은 유효기

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3) 한편,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겨레플러스(이하 ‘피고 한겨레플러스’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아이닷컴(이하 ‘피고 한국아이닷컴’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피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피고 연합뉴스와 사이에 체결한 “연합뉴스 제공 및 사용계약”에 따라 그대로 전재(轉載)·보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해명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를 굳이 실명으로 보도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고, 원고와 같은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를 한 다른 업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가 운영하는 ‘대구 장□□ 정신과의원’만을 실명으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마약류취급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실시한 마약류취급자 정기지도점검결과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작성, 공개한 보도·해명자료에 나타난 객관적인 내용만을 기사로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 개인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명칭만을 보도한 것이므로 위 각 기사의 게재 및 보도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다음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한겨레플러스, 한국아이닷컴은, 언론사가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재보도함에 있어서 그 통신사가 명성 있는 통신사이고, 언론사가 그 기사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도하였으며, 현실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그 기사의 재보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및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게재 및 보도한 각 기사는 위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취재, 보도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이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17257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4년 실시한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결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작성, 공개한 보도·해명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보도된 것으로 원고도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것과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이를 자인하고 있고, 그 기사 내용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도·해명자료를 별다른 논평 없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마약류 제조 등의 적정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윤리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에 속하는 의약품에 의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보도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평범한 정신과 의사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의사에게 국민의료 및 보건지도를 담당하는 자로서 엄격한 자격요건하에 예외적으로 마약류 취급이 허용된 점에서 일정한 공적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대중들로부터 저명성을 획득한 유명인물이라거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사실이 일반 국민의 지대한 관심의 대

상이 되는 사안이라거나 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정도로 공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그 범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도 일반 국민이 피고들이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굳이 실명을 보도하는 등으로 관련된 인물의 신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의무위반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 피고들이 의도하는 공익적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저지른 범죄를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한겨레플러스, 한국아이닷컴은, 위 피고들이 게재·보도한 기사는 통신사인 피고 연합뉴스와의 전제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기사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용보도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언론사가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재보도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언론사의 명예훼손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언론사가 자신의 조직과 인력 및 자력만으로는 기사내용의 진위에 대한 조사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고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위 법리가 전제보도한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사의 내용에 사인(私人)의 실명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그 사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기사에 실명이 표시된 '대구 장□□□ 정신과의원'의 운영자인 원고가 위 각 기사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사회적 신분, 연령, 교육 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보도한 구체적 경위,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표현방법,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들이 적시한 것은 원고 개인의 실명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

료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신문은 각 금 2,000,000원, 피고 디지털조선일보, 한겨레플러스, 한국아이닷컴은 각 금 1,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연합뉴스는 2005. 6. 24.,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는 2005. 9. 30., 피고 한겨레플러스는 2005. 9. 11., 피고 한국아이닷컴은 2005. 9. 13., 피고 파이낸셜뉴스신문은 2005. 6.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준비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철
판사 이은혜
판사 송유립

□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그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된 경우 사장은 보도 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한 자는 작성자로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자 판결 (2005가단355539)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자 판결 (2006나103531)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31일 한국방송공사 전 직원 조○○이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정연주, 조△△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 각자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한국방송공사가 언론사들에게 한국방송공사의 세금관련 소송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전직 직원이었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피고 조△△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사실상 작성자로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김□(부사장), 윤◇◇(정책기획센터장)의 경우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대하여 결재 등 여하한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1심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인신공격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5가단355539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경 용

피 고 : 1. 정 연 주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사장실

2. 김 □

3. 윤 ◇ ◇

4. 조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변론종결 : 2006. 9. 27.

판결선고 : 2006. 10. 25.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5. 9. 7.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위 청구원인 2의 나. (1)항에 대하여

문언, 문맥, 인상(印象)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인신 공격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청구원인 2의 나. (2) 내지 (4)항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았으나, 그보다 위 보도자료의 내용과 주안점, 위 자료를 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 변론에 나타난 작성경위 등을 고려한다면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손 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1. 내지 3.이 위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조차 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중섭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나10353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 피항소인 : 1. 정 연 주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한국방송공사 사장실

2. 김 □

3. 윤 ◇ ◇

4. 조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오 수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가단355539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8. 22.

판 결 선 고 : 2007. 10. 31.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정연주, 조△△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7.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김□, 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정연주, 조△△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 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김□, 윤◇◇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18호증, 을 제1, 3 내지 7, 14, 17, 23 내지 31, 36,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73. 6. 11.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1. 23. 기획예산국 제도개선부에 전보된 이래 정책기획센터 등을 거치면서 2004. 3. 31. 정년퇴직하기까지 주로 공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2) 피고 정연주는 아래의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 당시 공사의 사장, 피고 김□은 부사장, 피고 윤◇◇는 정책기획센터장, 피고 조△△는 정책기획센터 산하 세무기획 프로젝트팀의 팀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세금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1) 공사의 세금 납부

공사는 종래,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총매출세액에서 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분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고 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고(다만, 광고방송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방송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함으로써 광고방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는 이유로 총수입액 중 광고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만을 공제하였다), 법인세는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이외에 수신료 수입까지 사업수익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 납부하여 왔다.

(2) 민사소송

(가) 공사는 1993년경 당시 공사 편성운영본부 편성실 부주간으로서 제작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로부터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세금 납부가 잘못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변호사 경○○(이후 법무법인 소명의 대표변호사가 되었다, 이하 위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세금소송 대리인'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 11. 5. 서울지방법원(94가합97445)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1989. 7.경부터 1994. 4.경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7.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절차 그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인세 등의 납부절차에 있어서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1998. 8. 21.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7나43552)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공사가 1998. 9. 29. 대법원(98다47184)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0. 2. 25.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부분에 관하여는, 공사가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사의 방송 중 수신료 수입에 의한 일반방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광고료 수입에 의한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사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광고방송분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 매입세액 중에서 광고료와 수신료를 모두 합친 총수입에 대한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을 할 수는 없고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만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공사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법인세 등 관련부분에 관하여는, 공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방송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및 교향악단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행정소송

(가) 공사는 원고를 1994. 2. 3. 기획예산국 제도개선부 부주간(세무개선)으로 전보한 데 이어 1998. 4. 21.에는 정책기획실 송무관리위원으로 전보하여, 원고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공사의 세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인 1999. 8.경 세금소송 대리인으로부터 공사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환수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자, 이를 토대로 1999. 9. 22. 세금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1996년도 2기분 및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6년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기안을 하여 공사 사장으로 부터 결재를 받았다.

(다) 공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안에 터잡아 1999. 9. 29.부터 세금소송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환급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소송내역' 기재와 같다(이하 위 행정소송을 통틀어 '세금소송'이라 한다).

(라) 세금소송 대리인이 공사 실무담당자인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세금소송에서 주장한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광고업이라는 과세사업 하나만을 영위할 뿐 달리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사의 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사가 수익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법인세에 관하여는,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수신료 수입을 익금에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공사는 법인세법상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 하나만을 영위할 뿐 달리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의 손금 전부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공사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손금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손금만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레) 세금소송 중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6959 등 일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주문에서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① 공사

가 제공하는 방송 중 수신료 수입만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방송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공사의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상 영위하는 광고업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② 공사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한 세액만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될 수 있다(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은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의 계산에서 오류가 있어 위법하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사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배) 세금소송 중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4458 등 일부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도 제1심 법원은 역시 주문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내지 법인세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① 공사는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업과 함께 수익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공사가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 하나만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를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공사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달리 각 사업연도에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만을 특정하여 계산할 증빙서류도 없다. ③ 따라서 법인세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사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처분 등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조정권고를 통한 해결의 모색

(가) 공사는 세금소송의 제1심 판결이 대부분 선고된 이후인 2004. 10.경부터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세금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2005. 3.경 세금소송 대리인에게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세금소송 대리인은 법인세 취소소송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수신료를 수익사업의 매출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남게 되어 장차 이를 징수하는 데 법적 장애가

생긴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 공사는 2005. 6. 23. 세금소송 대리인에게 현재의 세금소송 진행경과를 볼 때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적인 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세금소송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부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다) 공사는 2005. 7. 11. 세금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의 경과로 보아 판결 주문상 승소하더라도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세금을 부과할 터인데 이는 공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서 2005. 7. 15.까지 조정기일 지정신청을 완료하고 조정에 참여할지 여부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세금소송 대리인은 또다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태) 공사는 2005. 7. 19. 세금소송 대리인에게 공사의 사내변호사인 이○을 세금소송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통보한 뒤, 2005. 8. 24. 이○으로 하여금 세금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요청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세금소송 대리인에게, 2005. 8. 29. 법무법인 새얼 소속의 변호사 김○○을 공동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인 세금소송에 대한 조정업무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2005. 9. 13. 세금소송의 위임계약을 모두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동아일보의 보도

(1) 동아일보는 2005. 9. 6.자 신문 제1면에 '공사 이상한 수신료 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이래 2005. 9. 8.까지 3일간, 공사가 조정권고를 통하여 세금소송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세금소송 대리인이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가운데 1,500여억 원을 포기하는 것',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 '수신료는 헌법재판소에서 특별부담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만큼 수익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을 다시 할 수가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2) 한편, 동아일보는 2005. 9. 7.자 신문에 '임금협상중인 경영진으로선 500억 빨리 받게 실익일 것'이라는 제목하에 '별지2 원고 관련 동아일보 기사'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취재자와 원고 사이의 일문일답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1) 피고 조△△는 공사 시청자센터 산하 홍보팀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반박하고 세금소송 관련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별지3 이 사건 보도자료’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공사 홍보팀은 2005. 9. 7. 이 사건 보도자료를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는 한편,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서울신문은 2005. 9. 13. 동아일보가 세금소송 관련 분쟁 해결방식과 관련하여 세금소송 대리인과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그 밖의 다른 언론사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마. 조정권고를 통한 분쟁의 해결

공사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세금소송 항소심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1996 내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약 459억 원을 감액경정하자, 영등포세무서장과 사이에, 앞으로 법인세는 공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질의하고 위 세무서장이 이에 대하여 회신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계산에 있어 공사의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사유에 따른 매입세액과 공사가 수신료 징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으로 하기로(1996년부터 2005년까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도 이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합의한 뒤, 2006. 1. 5. 당시 계속 중이던 세금소송 15건 중 다른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상급심의 판결을 받기로 한 1건(‘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소송내역’ 중 순번 8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의 소(같은 별지 순번 2, 3, 5, 6, 7, 9 내지 17사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자인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 충분한데도 굳이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공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그 직원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가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형평·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동아일보는 원고가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세금소송의 전 실무담당 직원으로서 공사가 세금소송의 제1심에서 2,000여억 원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서도 항소심에서 조정권고를 통해 506억 원만을 돌려받고 향후 국세청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요청을 한 것은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울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거기에는 공사의 경영진이 임금협상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보도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보도자료는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가 정년퇴직에 임하여 공사에 세금소송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봉계약형태로 자신을 재고용하고 그 승소 확정시에는 환급세액의 일정률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성과보상에 대한 기대와 미련 때문에, 세금소송 대리인과 함께, 조정권고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다거나 앞으로 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발하여 세금소송 관련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배신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에 대한 입증은 없는 한, 피고 정연주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세금소송의 분쟁 해결 그 자체는 공사 전체의 지대한 관심사였을 터이고, 더욱이 유력 일간지인 동아일보가 공사의 세금소송 관련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이상 공사 자신이 이를 반박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며, 공사의 위임규정(갑 제2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가 홍보팀장의 위임전결사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재고용 방안에 대하여 피고 정연주가 결재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공사의 대표자 사장으로서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하여 결재나 승인 등의 방식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피고 조△△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사실상 작성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 김□, 윤◇◇도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상 결재권자로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 내지 23,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하여 결재 등 여하한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

(1) 공익성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하거나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신료를 그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납부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자료가 주로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원고나 세금소송 대리인의 논리를 비판하고 공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인 이상, 그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2)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

(가) 피고 정연주, 조△△는, '조정이 이루어지면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앞으로 공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단순히 세금소송 대리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원고가 세금소송 대리인과 함께 만들어낸 논리로서 원고가 피고 조△△ 등에게 공공연하게 그러한 논리를 펼쳐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금소송이 원고의 착안에서 시작되었고, 세금소송 대리인이 세금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를 거쳐 주장을 정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과 을 제8, 11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세금소송 대리인만이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원고가 정년퇴직에 임하여, 처음에는 현직 때의 연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거나 연봉을 다소 낮추는 대신 세금소송의 승소 확정시 환급세액의 1.5%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 조△△와의 협상 끝에 연봉 6,000만 원에 승소 확정시 환급세액의 0.7%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재고용에 합의한 바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가 2004. 4. 2. 피고 조△△의 기안으로, 원고의 전문성과 재직 동안 기여도를 참작해서 기본연봉 6,000만 원에 인센티브로서 세금소송으로 인한 환급세액의 0.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4. 4. 1.부터 2006. 3. 31.까지 2년간 원고를 재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장인 피고 정연주가 이를 결재하기까지 하였으나, 이후 세무소송팀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위와 같은 원고의 재고용방안이 백지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와 같은 재고용방안이 원고의 요구로 마련되었거나 이에 앞서 원고가 현직 때의 연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든지 세금소송의 승소 확정시 환급세액의 1.5%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은 그 작성자 내지 진술자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위 피고들은, 원고가 세금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동아일보에 제보하여 공사의 세금소송 관련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공사 산하 순천방송국 소속 직원인 오○○으로 하여금 사내 전자게시판에 조정권고를 통한 분쟁 해결방식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게 하였으며, 시민단체를 부추기고 국세청이나 검찰청 등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조정권고를 통한 분쟁의 해결에 극심하게 반발함으로써 세금소송 관련 분쟁의 해결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아일보 보도 당시에는 이미 공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세금소송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공사는 동아일보 보도에 앞서 이미 사내변호사를 통하여 세금소송의 항소심에 조정요청의견서를 제출해 두고 있었으므로 동아일보 보도로 인하여 세금소송의 조정권고를 통한 해결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가 성과보상에 대한 기대와 미련 때문에 터무니없는 논리로 법원의 조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원고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

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언론기관인 공사가 원고에 대한 확인취제를 거치지
도 아니한 채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나 공사가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정연주, 조△△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작성·배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
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원고의 연령 및 경력,
원고와 위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보도자료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이 사건 보도
자료의 작성 경위 및 배포 범위, 세금소송의 진행 및 해결과정(특히 일부 세금소송의 제1심
판결 이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는 그와 다른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고, 가사 제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
는 바이므로,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한 과세관청과의 협의로 새로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등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미 납부된 법인세 등의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세금소
송 관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공사의 방침이 부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정연주, 조△△는 각자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5. 9. 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07. 10.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피고 김□, 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
정 금원에 관한 원고의 피고 정연주, 조△△에 대한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
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김□, 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
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진현
판사 이우철

〈별지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소송내역 생략 - 편집자 주

〈별지 2〉 원고 관련 동아일보 기사

‘임금협상중인 경영진으로선 500억 빨리 받는 게 실익일 것’

KBS가 수신료에 부과된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조정신청을 낸 데 대해 전직 KBS 국장급 정책위원이었던 조○○ 씨는 “임금협상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는 1992년부터 지난해 3월 퇴직할 때까지 12년간 KBS의 세무담당업무와 관련소송 실무를 전담해 와 이 소송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

다음은 조 씨와의 일문일답.

- KBS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완전한 승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그동안 소송과 관련한 실무도 담당했는데 판결문 제일 앞장에 나온 ‘주문’에 적힌 내용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판결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문에 얼마 얼마(금액)를 취소했다고 나와 있으면 그 금액대로 이해하면 된다.”

- KBS의 승소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는 반론이 있는데….

“세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12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행정소송에서 무언가를 취소하라는 것은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판결문에 취소라고 나와 있으면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면 판결문을 그렇게 쓰겠지.”

- KBS는 왜 1심에서의 2,000여억 원 승소에 대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나.

“승소 금액이 바뀔 수 있거나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정금액과의 차이를 줄여야 조정의 근거가 서질 않겠나.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 KBS는 소송 건수를 언급하면서 16건 소송에서 ‘7승 9패’ 라고 하는데….

“건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긴 소송의 판결문 주문에 나타난 액수를 합하면 대부분 승소한 것이다.”

- KBS의 조정 ‘의견서’에는 ‘506억 원을 받고 1,500억 원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단정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데….

“조정을 통해 506억 원을 돌려받고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에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지금 1,500억 원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법인세와 부가세를 국세청 주장대로 내겠다는 것이다. 1심에서 국세청조차 분명한 과세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조정을 통해서 국세청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은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울 기회마저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KBS가 조정이 아닌 판결을 받아야 앞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마련되는 것이다.”

- KBS가 조정이 아닌 판결을 꼭 받아봐야 한다는 근거는 ...

“KBS가 앞으로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조정을 통해 그 기회를 포기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게 되고 KBS가 소송에서 질 것인데도 조정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된다. 어느 쪽도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 KBS가 조정을 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지난해 적자가 600억 원이고 지금 임금협상 중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2,000억 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경영진에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임금협상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500억 원이 나중의 2,000억 원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끝)

〈별지 3〉 이 사건 보도자료

세무소송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KBS의 입장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KBS 세무소송내용과 관련 KBS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주장과 내용이 편향, 왜곡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KBS관련 세무소송내용에 대한 KBS 입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KBS는 사건 위임자를 적극 대변하고 분쟁해결에 매진해야 할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수입료에 집착하여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동을 하고 있는 수입변호사와 평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불모로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는 전(前) KBS 직원 조OO 씨 그리고 사실과 다른 두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을 토대로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사에 대해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1. 세금문제와 수신료를 연관시키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KBS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광고부문만이 과세대상일 뿐, 수신료부문은 세금과 무관합니다. 즉, KBS의 법인세는 “광고수입”에서 “광고수입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변호사와 언론에 보도된 전직 KBS 직원인 조OO 씨의 주장은 “수신료 수입을 받아서 지출한 비용까지도 광고수입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KBS가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 하나만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를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KBS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16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결같이 수임변호사와 조OO 씨의 주장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정 땀 수신료 징수근거가 없어진다거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KBS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억 원을 매년 시청자 수신료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위 두 사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2. 2,000억 원 포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략)...

3. 수임변호사와 조OO 씨는 지금이라도 자숙해야 합니다.

...(중략)...

KBS는 터무니없는 논리에 이끌려 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작년부터 수임변호사와 협의해 왔으나, 수임변호사와 조OO 씨는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반발해 왔습니다.

조OO 씨는 KBS에 재직할 당시 수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그 공로로 국장급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OO 씨는 수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다가 2004. 3.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소송업무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연봉계약형태로 재고용하고 최종 승소시에는 환급액의 일정률을 성과보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는 회사의 중대한 업무를 특정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조OO씨의 성과보상요구 또한 이례적인 것으로서 공기업인 KBS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워 재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OO씨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수임변호사의 사무실을 드나들며 소송업무를 계속하였고, 만약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으로 KBS가 이득을 보게 된다면 KBS를 상대로 일정한 성과보상을 요구하겠다는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조OO씨가 억지 논리를 근거로 계속 소송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기대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략)...

이와 같이 KBS가 두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자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세워 법원의 조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변호사와 조○○ 씨는 무리하게 세금소송을 제기하다가 KBS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자숙해야 합니다.

4. 세금분쟁과 KBS의 경영상황을 연관시키려는 발상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조○○ 씨는 정년퇴직 당시 무리한 재고용조건을 요구하다가 재고용을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여의치 않자 법원의 조정신청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대외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금분쟁을 임금협상이나 수신료인상 등과 연관시켜 KBS 임직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발상은 순수한 의도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KBS는 이 세무소송이 당초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소송만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제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2004. 2.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작년 10월경부터는 법원에 조정신청하는 방안을 수입변호사와 협의해 왔으나, 두 사람의 반발 때문에 지금까지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KBS는 두 사람의 억지 논리와 무리한 보상요구에 휘둘려 세금분쟁 해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담당변호사를 변경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끝) □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사진이나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6.자 판결 (2007가합13887) (확정)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6일 케이티 노동조합과 지○○이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문화방송은 2005년 7월 3일 9시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케이티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케이티가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원고 조합 총회를 앞두고 케이티 노사협력팀이 만든 비밀문서에는 직원들을 그 성향에 따라 강성과 온건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파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케이티의 전직 지점장들은 선거나 임금협상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았다. 케이티는 노조활동이 활발한 조합원들은 섬 등 오지로 보내어 특별관리하였다.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케이티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 지〇〇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케이티의 대표자와 악수하는 사진을 ‘임금협상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원고 지〇〇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신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화면을 보도 내용 중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케이티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각 사용하여 방송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케이티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지〇〇의 초상권이라는 개인적인 이익과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13887 손해배상(기)

원 고 : 1.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조합장 지 ○ ○

2. 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 치 환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2. 신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최 재 경

변 론 종 결 : 2007. 10. 30.

판 결 선 고 : 2007. 11. 6.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방영되는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서 운영하는 엠비씨(MBC) 텔레비전 방송의 21:00 뉴스프로그램 “뉴스 데스크”의 끝부분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 지○○은 2002. 12.경 실시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직원들로 구성된 원고 케이티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제8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3. 1. 1. 원고 조합의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 조합과 케이티가 2004. 12. 17.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자, 동아일보, 한국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등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도하였는데, 한겨레 신문도 2005. 1. 7.자 신문에 원고 조합과 케이티를 신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찬성의견과 함께 ‘케이티의 강도 높은 노조 길들이기로 원고 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원고 조합과 케이티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동시에 게재하면서 2003. 8.경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케이티의 대표자와 악수하는 사진(이하 ‘제1 화면’이라 한다)을 같이 실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의 기자인 박영희는 케이티가그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조합원총회 종합대책'(을1호증의 1, 2002. 3.경 실시된 원고 조합 총회를 앞두고 케이티가 작성한 서류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을 그 성향에 따라 강성과 온건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파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과 '2003년도 기관별 승진현황'(을5호증의 6, 이 사건 선거 직후 이루어진 케이티 승진인사에 대한 분석 자료로, 각 지점별 원고 지○○의 득표율이 명시되어 있다) 및 '면담직원'(을1호증의 3,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한 직원들의 명단이다)이라는 각 문건을 입수하였고, 원고 조합의 전·현직 조합원과, 케이티의 전·현직 임원들 등을 인터뷰하였는데, 케이티의 전직 지점장은 "임금찬반 투표시 노조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현 조합원들 중 일부는 '케이티는 노조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유로 섬 등 오지로 직원들을 발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피고 방송사는 2005. 7. 3. 9시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케이티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위 각 인터뷰와 함께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케이티가 노조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원고 조합 총회를 앞두고 케이티 노사협력팀이 만든 비밀문서에는 직원들을 그 성향에 따라 강성과 온건 등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파악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케이티의 전직 지점장들은 선거나 임금협상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털어놓았다. 케이티는 노조활동이 활발한 조합원들은 섬 등 오지로 보내어 특별관리하였다.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나 케이티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고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제1 화면'(아래에 그 출처로 '케이티 홈페이지'라고 표시하였다)을 위 보도 내용 중 '임금협상시 노조 지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을 대표하여 신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화면(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면이다, 이하 '제2 화면'이라 한다)을 위 보도 내용 중 '회사의 노조활동 개입은 명백한 현행법위반이나 케이티는 지난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는 부분의 배경화면으로 각 사용하여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피고 신□□은 피고 방송사의 보도국장으로서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편집권한을 갖는 자이다.

마. 인터넷 신문 '레이버 투데이(Labor Today)'는 2005. 10. 27. '케이티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 선거에도 케이티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케이티가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원고들도 케이티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이 부당하게 노무관리를 한 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그러한 케이티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1, 2 화면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케이티의 부당한 노무관리에 공모하거나 협조하는 등으로 개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지○○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2) 따라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피고 방송사는 별지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보도는 케이티가 그 직원들의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원고 지○○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보도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케이티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위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케이티가 부당한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들의 위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닌 점, 제1 화면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이미 한계레 신문이 원고 조합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을 보도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화면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였던 점, 제2화면은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그 자체로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로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는 케이티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케이티가 부당하게 참여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도 케이티의 위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는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 지○○의 허락 없이 제1, 2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는 케이티의 부당한 노무관리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지○○의 초상권이라는 개인적인 이익과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2 화면은 원고 조합을 대표한 원고 지○○이 케이티의 대표자와 악수를 하거나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장면으로 제1 화면은 이 사건 보도 전에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것인 점, 제2 화면은 원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개된 것으로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중 케이티와 원고 조합이 신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피고들은 제1 화면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였던 점, 케이티가 부당하게 참여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 지○○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들이 제1, 2 화면을 이 사건 보도에 사용하여 원고 지○○의 얼굴을 공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지○○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경우 즉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들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임대호
 판사 강은주

〈별지〉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 부터 별도의 보충취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자 판결 (2007가합42100)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엮OO이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와 발행·편집인, 편집장,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한국일보는 원고 국회의원이 특별사면, 세무 조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OOO 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원고는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은 이 보도가 공적 인물인 원고의 수취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 및 관련자의 진술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위 회장으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받았거나 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탁한 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위 회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취재를 하였다는 등의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42100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염 동 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범 수

피 고 : 1.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 □ □

2. 이 □ □

3. 이 □ □

4. 김 △ △

5. 박 ○ ○

6. 강 ◇ ◇

7. 고 ○ ○

8. 박 ○ ○

9. 최 ○ ○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8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변 론 종 결 : 2007. 11. 14.

판 결 선 고 : 2007. 12. 5.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27.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지인 한국일보 2006. 5. 16.자 신문의 1, 8면에 원고에 관한 별지 기재 각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피고 이□□은 한국일보의 발행·편집인이고, 피고 이□□는 편집장이며, 피고 김△△, 박○○, 강◇◇, 고○○, 박○○, 최○○은 위 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¹⁾이다.

나. 위 보도를 즈음하여 ○○○(○○) 그룹 회장 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내사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2005. 1.말경 원고를 처음 만났을 때 '○○○ 그룹을 앞으로 잘 지켜봐 달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말을 하면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원고에게 선물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생산하는 '○○○ 저주파 자극기'라는 미용기구 약 4억 1,328만 원 상당을 ○○○○로부터 납품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 피고 김△△, 박○○, 강◇◇은 별지 기재 1면 기사를, 피고 박○○, 최○○은 별지 기재 8면 상당 기사를, 피고 고○○, 박○○은 별지 기재 8면 하단 기사를 각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주○○가 위 보도 이전에 원고에게 특별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원고는 2007. 7.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주○○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²⁾은 2005. 2.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1 소재 금영빌딩 901호 피고인의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경선 선거대책본부장이며 ○○○ 그룹 회장 주○○를 위해 활동하는 윤○○로부터 피고인의 당내 경선 운동에 사용하라는 뜻으로 선거 사무장을 맡고 있던 김원국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 번호 : 338-04-650651)로 200만 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³⁾

• 피고인은 2005.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일보 빌딩 12층 ‘○○’ 일식집에서, ○○○ 그룹 회장 주○○로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네트워크(주) 등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 그룹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포괄적 청탁을 받고,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위 주○○와 수차례 전화하는 과정에서 동인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발(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32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여 ○○○개발(주)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락한 후, 그와 관련하여

2005.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 일식집에서, 위 주○○로부터 서양화가 오승윤이 그린 서양화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⁴⁾

2005.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특별보좌관으로 행세하고 다니는 윤석루로부터 “가깝게 지내고 있는 광주 ‘국제 퍼제이프’ 부두목 조규석이 대표이사로 있는 ○○○에서 ‘○○ 저주파 자극기’ 라는 미용 기구를 ○○○네트워크(주)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그 품질이 떨어지고 이미 같은 종류의 상품이 납품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니 주○○ 회장에게 부탁해서 위 조규석의 납품이 성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사이에 위 주○○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2) 피고인 원고를 말하는데, 이하 같다.

3)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

동인으로부터 ○○○개발(주)의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동인에게 “○○○○는 아주 가까운 저의 특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위 ‘○○○ 저주파 자극기’를 ○○○ 네트워크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주○○로 하여금 같은 해 6.경부터 10.경까지 ○○○네트워크(주)에서 ‘○○○ 저주파 자극기’ 7,859대를 납품받고, 그 대금 4억 1,328만 원(영업이익 1억 3,184만 원 상당)을 ○○○○○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5)

마. 한편, 원고는 2007. 10. 25. 위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699호), 이에 대해 원고 및 검사가 항소하여(원고는 유죄가 인정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 1심 판결에서는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주○○로부터 위 그림 1점을 교부받고 주○○로 하여금 ○○○○가 생산하는 위 제품들을 납품받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그것이 세무조사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기사 중 “주○○ ○○○(○○) 그룹 전 회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염동연 중도개혁통합신당의원 등 전·현직 의원 3명과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시민사회단체 저명인사, 언론사 간부 등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과 ○○측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구속 수감 중인 주○○ ○○ 전 회장으로부터 2004-2005년 ○○에서 억대의 금품 로비를 받은 거물급 인사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주씨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은 염동연 통합신당 의원,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전 국회 부의장),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3명이다”, “주씨는 이들에게 국제청 세무조사 및 검찰내사 무마, 다단계사업보호, 사면·복권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이상 1면 기사), “전달된 자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종합일간지 기자출신인 전 청와대 행정관 강모씨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5) 변호사법 위반의 점

알려졌고, 다른 정치인들도 1인당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면 상단 기사)”,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국회의원 염동연씨,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억대의 금품이 건네졌다는 부분에서는 특별사면 로비, 세무조사 무마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8면 하단 기사)”는 부분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각 기사에서는 “원고가 특별사면, 세무조사 무마 등의 구체적인 청탁 명목으로 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주○○는 검찰조사에서 원고에게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부탁에 따라 ○○○가 생산하는 위 제품을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 주○○가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교부하였다거나 수사과정에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에 대한 위 1심 형사판결에서는 위 그림 1점 등이 세무조사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로 미루어 보아 주○○는 검찰조사에서도 세무조사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위 그림 1점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보도의 내용은 원고가 교부받은 금품의 내용 및 액수, 그 명목 등에 있어서 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보도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써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보도가 공적 인물인 원고의 수뢰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 및 관련자의 진술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주○○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교부받았거나 주○○로 하여금 자신이 부탁한 제품을 납품받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주○○가 원고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등 신빙성 높은 취재자료에 따라 위 보도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 이외에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충취재를 하였다는 등의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마지막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가 주○○로부터 받은 금품의 내용 및 명목에 관하여 명확한 확인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막연한 전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과장된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상당 부분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금액과 명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의 금품을 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진실에 부합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던 점, 위 보도 중 진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원고가 주○○로부터 받은 금품의 액수와 명목인데, 이에 관해서는 기사의 제목 부분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내용 부분에서만 다루어진 점, 위 보도에서 원고가 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고, 이에 관하여 주○○의 진술이 나와 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만 보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07. 7. 27.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

언론기관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한 경과 보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자 판결 (2007가합35157) (확정)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12일 박○○ 외 1인이 주식회사 뉴시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진행과정은 어떠한지는 취지의 단순한 경과 보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마치 그 혐의내용이 분명한 진실인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도록 확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덧붙이게 될 경우, 그와 같은 보도는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실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들은 경찰관으로부터 간통사실을 들었고, 원고들 스스로 처음에 자인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간통사실을 자백한 바 없고, 피고들도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원고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속적으로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피고들의 입장에서 간통으로 인한 구속 및 재판과정을 보도하면서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 이외의 다른 사실을 추가하여 반복적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피고 뉴시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와 파란 미디어의 홈페이지에 원고들이 간통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가합35157 손해배상(기)

원 고 : 1. 박 ○ ○

2.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동 택

피 고 : 1. 주식회사 뉴시스

대표이사 배 기 철, 나 진 원

2. 오 □ □

피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 동 영

변 론 종 결 : 2007. 10. 17.

판 결 선 고 : 2007. 12. 12.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200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50,000,000원, 원고 김△△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뉴시스(<http://www.newsis.com>) 및 파란 미디어(<http://media.paran.com>)의 각 홈페이지에 2005. 6. 20.과 같은 달 29. 및 같은 해 2005. 11. 29. 등 3회에 걸쳐 원고들이 간통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각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 오□□은 아래 각 기사를 작성한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그 기사들은 여러 다른 언론매체에 그대로 인용되어 다시 보도되기도 하였다.

< 2005. 6. 20.자 기사 >

유부녀 제자와 통정 대학교수, 함께 철창행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자신이 가르치던 유부녀 제자와 정을 통한 모 대학 교수 김모 씨(46세) 등 이 대학 편입학생 박모 씨(33. 여) 등 2명을 간통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4년 12월 23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세 들어 살던 포항 모 아파트에서 여제자 박씨와 불륜행각을 벌인 혐의다.

김 교수는 “여제자 박씨와 만나 그림을 그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모텔과 작업실을 전전, 관계를 맺어왔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아예 아파트 세를 얻어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5. 6. 29.자 기사>

간통혐의 함께 구속된 교수·여제자 끝없는 사랑

여제자와 간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미대교수가 ‘미술대전’ 심사를 맡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함께 구속된 여제자는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 - ○○과 ○○’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놓고 일부 학생들은 “문제의 교수가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여제자가 우수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9일 경주 모 대학 미술학부 일부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유부녀 여제자인 박모 씨(33.여)와 함께 간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모 교수(46)는 지난 5월 ○○미술대전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여제자 박씨와 만나 그림지도를 명분으로 모텔과 작업실 등을 전전,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왔고 지난 해 12월부터는 아예 포항 모 아파트에 세를 얻어 불륜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사과정에서 박씨의 작품을 적극 추천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공정치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술대전 관계자는 “심사위원 위촉은 규정대로 했으며, 비구상인 박씨의 작품도 수준 이상의 작품으로 수상자 선정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제32회 ○○○○ 미술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등 7개 부분에 총 405점이 접수됐다.

< 2005. 11. 29.자 기사 >

법원, 여제자와 간통 혐의 부인 교수 실형 선고

여제자와의 간통 혐의를 부인하던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6단독 박영호 판사는 29일 경주 모 대학 미술학부 김모 교수(45)와 여제자 박모 씨(33)에 대한 무고 및 간통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통죄가 없어지는 마당에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그러나 여러 정황상 간통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정상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와 박씨는 지난 2002년 이 대학 미술학부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나 작업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정을 통해 온 혐의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해 12월께 박씨 시댁 식구들에게 간통사실을 고백한 것은 시댁 식구들이 김 교수가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와 감금과 폭력을 행사, 이를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의 남편 정모 씨(36)와 시댁 식구들을 감금, 폭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김 교수가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여제자인 박씨의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자 학생들은 '김 교수가 박씨와 만나 그림지도 명목으로 모텔과 작업실 등을 전전하며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다'며 '이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나. 위 각 보도 당시 원고 박○○는 경주 소재 ○○대학교 미술학부의 대학원생이었고, 원고 김△△는 위 대학 미술학부에서 원고 박○○를 지도하고 있던 교수였는데, 원고들은 위 최초 보도가 있기 전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위 첫 보도 이후 2004. 12. 23. 09:30경 1회 간통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05. 11. 29. 1심에서 간통 및 무고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고단529호), 이에 각 항소하여 2006. 4. 27.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05노4494호), 그 판결은 그 무렵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3329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무죄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서로 간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간통 혐의로 인한 구속사실 등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각 보도를 함에 있어 원고들의 실명 및 소속 대학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에는 공익성이 있고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책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먼저, 위 각 보도에서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보도에서 원고들의 성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성씨, 나이 및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 특히 2005. 6. 29.자 및 2005. 11. 29.자 각 기사에서는 간통혐의로 구속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같은 해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 - ○○과 ○○’라는 제목으로 우수상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같은 미술대전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들이 경주 모 대학 미술학부 소속의 사제지간이라는 사실까지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경우 위 각 보도에 나온 ‘김모 교수’ 및 그의 여제자 ‘박모 씨’라는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위 각 기사에서는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훼손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보도를 통해, 원고들이 간통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원고 박○○가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 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위 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 김△△가 수사과정에서 “여제자 박씨 원고 박○○를 말한다.

와 만나 그림을 그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모텔과 작업실을 전전, 관계를 맺어왔고 지난 해 12월부터는 아예 아파트 세를 얻어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취지로 자백까지 한 것으로 사실적시를 함으로써, 원고들 사이의 간통사실이 거의 확정적인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1)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2)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

편의상 위 각 보도의 공익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먼저 하기로 한다.

위 각 보도 중 원고들이 간통 혐의로 구속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보도한 부분은 그 자체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과정을 받고 있고 그 진행과정은 어떠한다는 취지의 단순한 경과 보도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마치 그 혐의내용이 분명한 진실인 것인 양 오인될 수 있도록 확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내용을 덧붙이게 될 경우, 그와 같은 보도는 수사과정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실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각 보도를 다시 보면, 피고들은 2005. 6. 20.자 기사에서 원고 김△△가 수사과정에서 “여제자 박씨와 만나 그림을 그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모텔과 작업실을 전전, 관계를 맺어왔고 2004년 12월부터는 아예 아파트 세를 얻어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이어, 2005. 6. 29.자 기사에서도 “김 교수는 여제자 박씨와 만나 그림지도를 명분으로 모텔과 작업실 등을 전전,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왔고 지난 해 12월부터는 아예 포항 모 아파트에 세를 얻어 불륜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고, 2005. 11. 29.자 기사에서도 “김 교수가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여제자인 박씨의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자 학생들은 김 교수가 박씨와 만나 그림지도 명목으로 모텔과 작업실 등을 전전하며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보도하였다.

위 각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모텔과 작업실 등을 전전

하며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으로는, 원고 김△△가 원고 박○○의 전 남편인 정○○에게 수 차례에 걸친 간통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는 점, 원고 박○○가 평소 원고 김△△는 “△△씨”라고 불러 왔던 점, 원고 박○○의 핸드폰 단축키의 1번이 원고 김△△로 저장되어 있고, 원고 박○○의 자동차키에 원고 김△△의 아파트 열쇠가 함께 묶여 있었던 점(이상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참조) 등이 있으나, 한편, ① 원고 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줄곧 자신이 원고 박○○와 간통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해왔고, 위 사실확인서도 정○○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던 점(갑 제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결국 원고들에 대한 간통 혐의에 관하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 점, ③ 원고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로서 작업실 등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미술작업을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모텔과 작업실 등을 전전하며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고 원고들 스스로 처음에 간통사실을 자인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가 수사과정에서 간통사실을 자백한 바 없었던 점, ② 피고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2004. 12. 23.경 1회 간통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부부 이상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들의 입장에서 간통으로 인한 구속 및 재판과정을 보도하면서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 이외의 다른 사실을 추가하여 반복적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들은 2005. 6. 29.자 기사를 통해서 원고들이 일종의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마치 위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이었던 원고 김△△가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 박○○의 작품이 입상하게 된 것처럼 사실적시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원고 김△△가 위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이었고 원고 박○○의 작품이 위 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한 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도,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원고 김△△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 박○○의 작품이 상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함량미달의 작품이었다는 등의 다른 정황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사실적시 부분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결국, 위 각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보도로 인해 원고들이 간통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은 사정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 부분 훼손된 점, 위 각 보도에는 독자들의 단순한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 점,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 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보도만을 이유로 그가 위 대학교의 교수직에서 해임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2007. 5. 28.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하였던 점(을 제1호증의 기재)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박○○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1,000만 원, 원고 김△△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1,000만 원, 원고 김△△에게 1,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07. 5. 2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준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이종훈

□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성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 2007. 7. 20.자 판결 (2006가단79121)

대전지방법원 2007. 12. 13.자 판결 (2007나9762) (확정)

사실개요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13일 박○○이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 김○○은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의 기자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취재한 다음 “행정실장 폭행 시위”라는 제목 하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와 전교조 ○○지부 등은 오늘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 폭언과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의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과 관련해 ○○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한다며 가해자는 훈장을 받고 피해자는 징계를 당했다며 교육청측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인 교장의 홍조근정 포장을 즉각 회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등 7개항을 요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뉴스시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교육기관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공직사회개혁·노동3권 쟁취를 위한 충북지역 공대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6가단79121 손해배상(기)

원 고 : 1. 박 □ □

2. 김 □ □

3. 박 ◇ ◇

4. 박 △ △

5. 박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 의 상, 백 현, 오 기 환

피 고 : 1.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도룡동 4-5

대표이사 배 귀 섭

2. 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창 혁

변 론 종 결 : 2007. 7. 6.

판 결 선 고 : 2007. 7. 20.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 원고 박◇◇, 박△△, 박○○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김○○은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의 기자로서 2003. 9.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취재한 다음 “행정실장 폭행 시위”라는 제목 하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와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오늘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 교육행정직 여

성공무원 폭언과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천안 안서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의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한데다 가해자는 훈장을 받고 피해자는 징계를 당했다며 교육청측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인 교장의 홍조근정 포장을 즉각 회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등 7개항을 요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는 같은 날 오후 뉴스시간에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박□□과 고○○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들이 그 폭행사건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 없이 원고 박□□이 일방적인 가해자라거나 원고 박□□이 충남교육청과 공모하여 자신을 잘못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홍조근정 포장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원고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박□□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표된 어떤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당해 표현행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당해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원고 박□□과 고○○ 사이의 폭행사건에 있어 원고 박□□이 가해자이며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하게 훈장을 수여받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원고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당한 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그들의 활동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나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주최한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그 이외에 원고 박○○과 고○○ 사이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작성자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주장하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원고 박○○은 고○○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좀 더 완곡한 표현이 가능하였다거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박 혜 선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976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박 ○ ○

피고, 피항소인 : 1.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도룡동 4-5

대표이사 배귀섭

2. 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창 혁

제 1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6가단79121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11. 15.

판 결 선 고 : 2007. 12. 13.

주 문 :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박□□에게 10,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5,000,000원, 선정자 박◇◇, 선정자 박△△,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박□□은 천안시 안서동 소재 안서초등학교에서 2003. 8. 12.까지 교장으로 재직 하던 자이고, 선정자 김□□는 위 박□□의 처, 선정자 박◇◇, 선정자 박△△, 원고는 위 박□□의 자녀들이며, 피고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MBC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김○○은 피고 회사의 사회부 기자이다.

나. 선정자 박□□은 2003. 6. 3. 14:30경 안서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의 행정실장인 소외 고○○(여, 34세)이 스승의 날 지출된 다과비용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을 발 단으로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고○○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고○○에게 폭 행을 가하였고, 2003. 7. 1. 14:50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고○○이 기안한 고용직원 임금 지급건에 대한 결재를 반려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결재서류로 고○○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고○○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그 곳 책상에 고○○의 머리 부위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고○○의 어깨를 세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 린 후 발로 고○○의 다리를 수회 밟아 고○○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교육기관본부,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충남지부, 공직사회개혁·노동3권 쟁취를 위한 충북지역 공대위는 공동으로 2003. 9. 5. 11:00경 충청남도교육청 정문앞에서, 선정자 박□□이 안서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 하는 고○○에게 119 구급차에 실려갈 정도로 폭언과 폭행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였고, 충 청남도교육청은 위 박□□이 사직한 상태에서 위 고○○만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였으며, 폭행사건이 경찰에 계류중임에도 위 박□□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도리어 박○○에게 홍조근정포장까지 수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에 대한 홍조근정포장을 즉각 회수하고, 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등의 내용의 기자회견을 주최하였고, 학교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 폭언·폭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라. 피고 김○○은 같은 날 위 기자회견을 취재한 다음 “행정실장 폭행 시위”라는 제목 하에 “전국공무원노조 여성위원회와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오늘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 폭언과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천안 안서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장의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한데다 가해자는 훈장을 받고 피해자는 징계를 당했다며 교육청측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인 교장의 홍조근정 포장을 즉각 회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등 7개 항을 요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MBC 뉴스테크 프로그램의 ‘대전뉴스’ 시간에 이 사건 기사 중 “이들은 가해자인 교장의 홍조근정 포장을 즉각 회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등 7개 항을 요구했습니다.”부분을 제외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사 전부를 게재하였다.

마. 한편 선정자 박○○은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200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5. 3.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의 2, 갑 제5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박○○과 고○○ 사이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언론기관인 피고 회사 및 취재기자인 피고 김○○은 공정한 보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사건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의 노력도 없이 박○○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박○○이 일방적인 가해자라거나, 충청남도교육청과 공모하여 자신을 잘못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홍조근정 포장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박○○의 명예를 훼손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정자 박□□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선정자 박□□에게 10,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5,000,000원, 선정자 박◇◇, 선정자 박△△, 원고에게 각 2,000,000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정자 박□□이 안서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이른바 “공인”이며, 이 사건 보도내용은 초등학교 교장의 교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한 것으로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배포된 공지의 사실로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진실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아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 내지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에 비추어 원고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가사 피고들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보도는 박□□의 교직원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책임의 범위는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공표된 어떤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당해 표현행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당해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수사중이던 선정자 박□□ 및 고○○ 사이의 폭행사건에 관하여 박□□을 가해자로 지칭하고, 박□□에게 수여된 홍조근정포장을 즉각 회수하라는 등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의 주장을 그대로 여과없이 표현하여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위 폭행사건에서 박□□이 가해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의하여 부당하게 훈장을 수여받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함으로써 선정자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참조), 여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당한 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그들의 활동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나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육행정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주최한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교육기관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공직사회개혁·노동3권 쟁취를 위한 충북지역 공대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의 개최사실 및 그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선정자 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6. 3. 및 2003. 7. 1.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안서초등학교의 교육행정직 여직원인 고○○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③ 위와 같은 폭행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천안교육청은 위 박□□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선정자 박□□은 2003. 8. 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2003. 8. 12.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며, 퇴직이후 정부로부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

정훈장을 수여받았던 점, ④ 한편 고○○은 선정자 박□□과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 9. 16.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병준
판사 이형석
판사 이현주

선정자 목록

1. 박○○
대전 유성구 전민동 327-16
2. 박□□
천안시 다가동 신성아파트 3동 406호
3. 김□□
천안시 다가동 신성아파트 3동 406호
4. 박◇◇
서울 양천구 목5동 목동4단지아파트 410동 1207호
5. 박△△
천안시 다가동 신성아파트 3동 406호. 끝.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자 판결 (2007나7861) (확정)

창원지방법원 2007. 12. 14.자 판결 (2007나7878) (확정)

사실개요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 부장판사)는 이○○이 주식회사 경향닷컴(2007나7861)과 주식회사 스포츠서울(2007나7878)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 측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 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 자료의 입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 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 경향닷컴은 2003년 8월 29일 “1천 500만 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목하에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을 자르고 유기한 ‘엽기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도하였고, 피고 스포츠서울은 2003년 8월 29일 “빛독촉 친동생 살해 유기 40대 체포”라는 제목 하에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도하였다. 검찰은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경향닷컴과 피고 스포츠서울을 상대로 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는 피고 경향닷컴(2006가소45979)과 피고 스포츠서울(2006가소45962)에게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786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이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경향닷컴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칸)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건물 15층

대표이사 조성환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7. 7. 2. 선고 2006가소45979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11. 30.

판 결 선 고 : 2007. 12. 1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7. 25. 피살된 망 이△△의 형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범죄혐의 및 긴급체포

(1) 망 이△△은 2003. 7. 25. 22:40경부터 다음 날 00:40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또는 창녕군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망치와 같은 둔기로 머리를 수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체는 2003. 8. 7. 10:10경 경남 창녕군 등지리 소재 경상주유소 앞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

(2) 위 사건신고를 접수한 창녕경찰서의 담당경찰관들은 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의 청바지와 양말만을 보고 자신의 동생이 틀림없다고 하면서도 사체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여 원고를 용의자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이△△의 이 사건 사고 전후 전화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 등의 당일 행적 및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원고의 차량에 있던 운동화 등을 압수하였다. 조사 및 감식 결과 이△△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승용차에 있던 운동화에서 이△△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3) 위 담당경찰관들은 원고에 대하여 살인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자 다른 증거들로 미루어 원고가 살인하였다고 판단하고, 2003. 8. 28. 06:23경 창녕경찰서에서 원고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내용

(1) 경남지방경찰청은 2003. 8. 28. 창녕경찰서로부터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검거보고(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접수되자, 당시 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이△△이 부친 이희찬으로부터 상속받은 1,5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한 것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망치와 같은 둔기로 이△△의 머리 좌우측 측두부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살해한 이△△을 불상의 장소에서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 모두를 절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시 불상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소재 구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논 언덕에 이△△의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는 요지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원고 및 이△△의 주소, 직업, 나이, 관계, 실명 등이 적혀 있었고, 수사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결과로서 원고의 차량속에 있던 운동화에 대한 감정결과, 범행후의 원고의 행동 및 진술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연합뉴스에서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연합뉴스와 기사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게재 또는 참고해오고 있던 피고는 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2003. 8. 29. "1천 500만 원 빚에 친동생 '엽기살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카드빚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40대가 빚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의 손가락을 자르고 유기한 '엽기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29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 1,5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이모씨(45. 김해시 내동)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5일 새벽 동생(39)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유기한 혐의다. 이씨는 2년여 전 숨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금 4천 500만 원 중 동생몫인 1천 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동생의 독촉을 받아오던중 사건 당일 경기도에 사는 동생을 양산으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동생을 살해한 뒤 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체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를 모두 잘라냈으며 이달 초 동생이 가출한 뒤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씨는 사체 유기이후 동생이 아버지를 수급자로 하는 수천만 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체유기 장소 인근 주유소에 '사체를 찾아보라'는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이 우편물을 받은 주유소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카드빚 4천여만 원을 비롯한 주식 및 아파트 매입 등으로 1억 9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생활고 때문

에 동생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동생 보험금까지 노리다 탈미를 잡혔다.<창녕/연합>

라. 이 사건 보도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

(1)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2003. 7. 25.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석계동 소재 석계공원 묘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채무를 비롯하여 채무합계액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이△△에게 주어야 할 돈 1천여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비라 투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직경 약 3센티미터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측두부에 3회, 좌측 측두부에 1회 가랑 때려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소재 경성주유소 맞은편 구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논 언덕에서, 전향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실어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위 장소에 버려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03고합26)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였는바, 부산고등법원(2004노112)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5도5440)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증 거]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성씨, 나이, 주소, 이△△과의 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을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건 기사의 객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 만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는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방송,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사실확인을 위하여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으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직업,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보도의 형식과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07. 12.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홍만
판사 이영선
판사 박동복

2심 판결문

사 건 : 2007나787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이 ○ ○

피 고, 항 소 인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미디어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씨동 201호

대표이사 김 상 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

담당변호사 김 대 일, 정 용 주

소송복대리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한 중 훈

제 1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7. 7. 2. 선고 2006가소45962 판결

변 론 종 결 : 2007. 11. 30.

판 결 선 고 : 2007. 12. 1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3. 7. 25. 피살된 망 이△△의 형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범죄혐의 및 긴급체포

(1) 망 이△△은 2003. 7. 25. 22:40경부터 다음 날 00:40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또는 창녕군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망치와 같은 둔기로 머리를 수회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체는 2003. 8. 7. 10:10경 경남 창녕군 등지리 소재 경상주유소 앞 도로변에서 발견되었다.

(2) 위 사건 신고를 접수한 창녕경찰서의 담당경찰관들은 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의 청바지와 양말만을 보고 자신의 동생이 틀림없다고 하면서도 사체를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여 원고를 용의자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이△△의 이 사건 사고 전후 전화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고 등의 당일 행적 및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원고의 차량에 있던 운동화 등을 압수하였다. 조사 및 감식 결과 이△△이 살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승용차에 있던 운동화에서 이△△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3) 위 담당경찰관들은 원고에 대하여 살인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부인하자 다른 증거들로 미루어 원고가 이△△을 살인하였다고 판단하고, 2003. 8. 28. 06:23경 창녕경찰서에서 원고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내용

(1) 경남지방경찰청은 2003. 8. 28. 창녕경찰서로부터 '살인·사체유기 피의자 검거보고(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접수되자, 당시 기자들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를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서 이△△이 부친 이희찬으로부터 상속받은 1,5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한 것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망치와 같은 둔기로 이△△의 머리 좌우측 측두부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살해한 이△△을 불상의 장소에서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 모두를 절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시 불상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소재 구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논 언덕에 이△△의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는 요지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원고 및 이△△의 주소, 직업, 나이, 관계, 실명

등이 적혀 있었고, 수사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결과로서 원고의 차량속에 있던 운동화에 대한 감정결과, 범행후의 원고의 행동 및 진술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연합뉴스에서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한 후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고, 연합뉴스와 기사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연합뉴스의 기사를 게재 또는 참고해오고 있던 피고는 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2003. 8. 29. “빛독촉 친동생 살해 유기 40대 체포”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빛을 독촉하는 친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45. 김해시 내동)씨를 29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5일 동생(39)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천 500만 원을 사용한 뒤 갚지 않는다며 독촉하자 흥기로 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동생을 살해한 뒤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사체를 유기한데다 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체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를 모두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카드 이용대금 등 1억 9천여만 원의 빚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동생이 빛을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라. 이 사건 보도 이후 사건의 진행 경과

(1)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원고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2003. 7. 25.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석계동 소재 석계공원 묘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약 4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채무를 비롯하여 채무합계액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이△△에게 주어야 할 돈 1천여만 원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비라 투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직경 약 3센티미터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측두부에 3회, 좌측 측두부에 1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같은 날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소재 경성주유소 맞은편 구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좌측 눈 언덕에서, 전향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에 실어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 첫마디 10개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위 장소에 버려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03고합26)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였는바, 부산고등법원(2004노112)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5도5440)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 7호증,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비록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성씨, 나이, 주소, 이△△과의 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을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건 기사의 객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가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 만큼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피고는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방송,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연합뉴스와의 기사제공계약에 따라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기사 말미에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기사의 출처를 밝힌 사실, 당시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합뉴스는 이 사건 보도자료의 입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를 보면 원고가 동생인 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합뉴스가 경찰이 작성한 이 사건 보도자료를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피고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뿐만 아

나라 다른 언론기관으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직업, 피고가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보도의 형식과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07. 12.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홍만
판사 이영선
판사 박동복

□

**보도에서 굳이 기재할 필요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사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6.자 판결 (2005가합9609) (확정)

사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정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충청일보 외 3인이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가 공동으로 원고들을 모욕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한○○과 충청리뷰사가 공동하여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김○○이 자신은 작가로서 씨비아이뉴스에 게재한 기사는 문학적, 예술적 표현에 의한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임○○이 모욕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지 아니하였고, 공적인 인물로 그 표현이 충청일보사태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6회에 걸쳐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매번 계속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 방법 외에도 위법하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의 기사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피고 한○○이 자신이 기재한 기사는 모두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 게재된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자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합9609 손해배상(기)

원 고 : 1. 임 ○ ○

2. 조 ○

3. 주식회사 충청일보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대표자 청산인 황 병 일

4. ○○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재원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중

담당변호사 유 창 중, 전 용 희, 황 선 줄

피 고 : 1. 문 ○ ○

2. 김 ○ ○

3. 한 ○ ○

4.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2-3 우암빌딩 3층

대표이사 권 혁 상

5.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80 3층

대표이사 변 근 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영

담당변호사 홍 석 조

변 론 종 결 : 2007. 11. 14.

판 결 선 고 : 2007. 12. 26.

주 문 : 1. 가. 피고 문○○은 원고 조○에게 금 2,000,000원,

나. 피고 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는 각자 원고 임○○, 조○에게 금 7,000,000원,

다. 원고 임○○에게, 피고 한○○은 금 4,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충청리뷰사는 피고 한○○과 각자 위 금원 중 금 2,000,000원,

라.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는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11. 7.부터 2007.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임○○의 피고 문○○에 대한 청구, 원고 조○의 피고 한○○, 주식회사 충청리뷰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의 피고 김○○, 한○○에 대한 각 청구, 원고 ○○토건 주식회사의 피고 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임○○의 피고 김○○, 한○○,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조○의 피고 문○○, 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의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임○○와 피고 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임○○가, 원고 조○과 피고 한○○,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조○이,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와 피고 김○○,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가, 원고 ○○토건 주식회사와 피고 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토건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임○○와 피고 김○○, 한○○,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임○○가, 나머지는 피고 김○○, 한○○,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조○과 피고 문○○, 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조○이, 나머지는 피

고 문○○, 김○○,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와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 임○○에게, 피고 문○○, 김○○, 한○○은 각 금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는 각 금 20,000,000원, 원고 조○에게, 피고 문○○, 김○○, 한○○은 각 금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는 각 금 1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에게, 피고 김○○, 한○○은 각 금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는 금 10,000,000원, 원고 ○○토건 주식회사에게, 피고 김○○은 금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 주식회사 충청리뷰사는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13, 16, 35, 36, 37, 40, 41호 증, 을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충청일보(이하 '충청일보'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 원고 ○○토건 주식회사(이하 '○○토건'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하는 회사, 원고 임○○은 원고 충청일보 및 ○○토건의 이사, 원고 조○은 원고 충청일보의 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씨비아이뉴스(이하 '씨비아이뉴스'라 한다)는 자신의 홈페이지인 씨비아이뉴스(www.cbnews.co.kr)를 통하여 인터넷 뉴스 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충청리뷰사(이하 '충청리뷰사'라 한다)는 충청리뷰라는 정기간행물 출판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문○○은 원고 충청일보의 사회부 차장이었던 자, 피고 김○○은 충북대학교 교수, 피고 한○○은 피고 충청리뷰사의 이사로서 기자이다.

나. 피고 문○○의 원고 조○에 대한 명예훼손

(1) 원고 조○의 운보 김기창 화백 그림 반출 관련

피고 문○○은 2004. 10. 5. 14:00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소재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지역 언론초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문화방송 기자 이병선, 한빛일보 기자 손대성 등 10여명의 기자들에게 "원고 조○이 회사 직원을 시켜 원고 충청일보가 보관하던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 2점을 무단 반출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고 조○에 관한 성명서 모사전송

피고 문○○은 2004. 5. 13.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 소재 원고 충청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충청일보 분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 충청일보의 전무인 원고 조○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사주와 합의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조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조○ 전무가 ‘올해 말까지 회사를 정리하기로 사주와 합의했다’고 말하지 않나”라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청주시 소재 각 언론사에 위 성명서를 모사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의 원고 임○○, 조○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1) 2004. 11. 4.자 씨비아이뉴스 기사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는 공동하여 2004. 11. 4.자 씨비아이뉴스에 “아! 충청일보”라는 제목으로 “언론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자본의 망상으로 인하여 58년 전통의 충청일보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충청일보의 소유지배자들은 대오각성할 것을 권고하며 충청일보의 정상화와 민주화는 필연임을 명기하는 바이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잘못이 있는 사주와 편집국장 그리고 충청일보 간부진 등 역시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원고 임○○, 조○을 모욕하였다.

(2) 2004. 11. 15.자 씨비아이뉴스 기사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는 공동하여 2004. 11. 15.자 씨비아이뉴스에 “충청일보, 청산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랜 동안 소유지배구조의 모순에 견디다 못한 충청일보 직원들이 2004년 봄, 세 번째로 노조를 결성했다. 사측의 비정한 태도 때문에 노사협상은 결렬되었다. 벼랑에 몰린 노조는 어쩔 수 없이 신문제작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동조건을 열악함을 극복하고자 파업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 경영자들은 직장폐쇄라는 황당한 폐약을 저질렀다. 이것은 보복이다. 자본과 주주에 대항하는 노동자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멸시키겠다는 충청일보 경영진의 포악한 오기다”, “그(원고 임○○)는 신문을 자신의 명예 선양과 사업의 방패로 간주하고 이윤창출의 간접적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타협과 양보가 없는 무자비한 자세로 일관하여 의도될 파탄을 유도하였다”, “언론 사주라면 언론에 대한 철저한 자세와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언론을 통하여 자본을 사회로 환원하면서 사회적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최소한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주에게는 그런 언론관이 부재하다. 경영진 역시 그

령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원고 임○○, 조○○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 한○○의 원고 임○○에 대한 명예훼손

(1) 2004. 5. 15. 충청리뷰 기사

피고 한○○은 사실은 충청일보가 금융채무 금 105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청주 소재 본사 사옥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 금 75억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으며, 본사 사옥 매각 이후에도 충추와 단양에 시가 금 12억 원 상당의 사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15.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680 소재 피고 충청리뷰사 사무실에서 원고 임○○를 비방할 목적으로 충청리뷰에 “서울대 당(黨)의 총수 임○○, 신문 사주는 실패작○”이라는 제목 아래 “충청일보는 지금 재산이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깍뎂기’ 라는 눈총을 받아 왔다. 직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심적 위안을 안겼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옥과 부지도 ○○토건 소유로 넘어간 지 오래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04. 6. 29.자 씨비아이뉴스 기사

피고 한○○은 2004. 6. 29. 피고 충청리뷰사 사무실에서 원고 임○○를 비방할 목적으로 씨비아이뉴스에 “사단법인 충북협회, 퀴바디스!!”라는 제목 아래 “임회장의 장기체제에 대하여 그동안 몇 번의 구체적 반발이 있었다. 3, 4년 전엔 한 때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던 진천 출신 이병호 변호사를 주축으로 소위 ‘무혈 쿠데타’가 도모됐으나 임회장의 강력한 입지에 무산됐다”, “협회 일각에선 충북협회 건물의 임대차 관계, 임원진 구성, 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여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04. 9. 4.자 충청리뷰 기사

사실은 충청일보는 ○○토건에 본사 사옥을 매각하여 실제로 금융채무 금 75억 원을 변제하였고 ○○토건의 지급유예 결정에 따라 본사사옥에 대하여 임대료를 매월 금 2,000만 원 씩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한○○은 2004. 9. 4. 피고 충청리뷰사 사무실에서 원고 임○○를 비방할 목적으로 충청리뷰에 “14년 대리경영의 성과, 남은 건 빈깍뎂기”라는 제목 아래 “임○○ 회장은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충청일보의 재산인 현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으로 옮겼다. 때문에 충청일보는 매달 2,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임광측에 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04. 10. 7.자 씨비아이뉴스 및 2004. 10. 9.자 충청리뷰 기사

피고 한○○은 피고 충청리뷰사 사무실에서 2004. 10. 7.자 씨비아이뉴스, 2004. 10. 9.자 충

청리뷰에 각 원고 임○○를 비방할 목적으로 “충청일보 파업사태 ‘언론사냐 사기업이냐’”라는 제목 아래 “사창동의 본사 건물과 부지는 이미 ○○토건 소유가 됐다. 임회장이 신문사 부채를 변제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지와 건물을 가져간 것이다. 회사측은 부채 80억 원 정도를 변제했다고 밝히지만 막상 채무관계와 재산이전 과정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04. 10. 23. 충청리뷰 기사

피고 한○○은 2004. 10. 23. 피고 충청리뷰사 사무실에서 원고 임○○를 비방할 목적으로 충청리뷰에 “기로에 선 충청일보, 벼랑에 선 임○○ 회장”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자신만의 경영논리, 즉 임○○노믹스로 무장됐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현재로선 매각에 이은 제3자 인수도 쉽지 않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임○○ 회장 때문이다. 그는 절대 충청일보를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04. 10. 30.자 충청리뷰 기사

피고 한○○은 2004. 10. 30. 피고 충청리뷰사 사무실에서 원고 임○○을 비방할 목적으로 충청리뷰에 “충청일보 사태 장기화, 커지는 억측들, 임○○ 회장 ‘신문사 포기냐’, ‘더 집착이냐’” 및 “매각만이 살길이다○”라는 각 제목 아래 “오히려 임회장이 충청일보에 더 집착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회장의 몇몇 주변인들은 ‘절대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예 단정해 버린다”, “20년 1인 독주를 기록하고 있는 충북협회장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됐지만 임회장은 이 자리에 특히 애착을 보여왔다”, “특히 임회장 반대파들이 몇 차례 쿠데타적 거사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임회장이 충청일보와 충북협회장, 서울대총동문회장에 집착하는 이유를 효용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충청일보 매각은 3, 4년 전에도 구체적으로 논의됐음이 확인됐다. 대상은 ‘땅’이었다. LG화재가 충북본부로 사용할 사옥을 짓기로 하고 충청일보에 부지매입을 타진, 실무선에서 깊숙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 한○○, 충청리뷰사의 원고 임○○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한○○, 충청리뷰사는 공동하여 2005. 1. 8.자 충청리뷰에 원고 임○○를 비방할 목적으로 “D-DAY 1월 15일, 다가오는 두 가지 거사”라는 제목으로 “임○○ 충북협회장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임회장이 20여년간

재임하는데 따른 구성원들의 불만이 고조된데다, 최근 충청일보의 사태로 지역사회에서 임회장의 이미지가 극도로 추락하자 이런 분위기는 더 강해지는 추세다. 때문에 충북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차제에 확실하게 액션을 취하자는 주장이 많아졌고, 그 디-데이를 15일로 예정된 신년교례회로 정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 씨비아이뉴스의 원고 충청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씨비아이뉴스는 2004. 10. 6.자 씨비아이뉴스에 “충청일보, 중부매일 연합시론 사설 도용”이라는 제목으로 “충청일보와 중부매일이 연합뉴스의 연합시론을 본지 사설에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공연히 원고 충청일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은 원고 조○○을,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는 공동하여 원고 임○○, 조○○을, 피고 한○○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 충청리뷰사와 공동하여 원고 임○○을, 피고 씨비아이뉴스는 원고 충청일보를 위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모욕하거나 또는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문○○은 원고 조○○에게,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는 각자 원고 임○○, 조○○에게, 피고 한○○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 충청리뷰사와 각자 원고 임○○에게, 피고 씨비아이뉴스는 원고 충청일보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김○○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 김○○은 자신은 작가로서 모든 글을 작품으로 간주하여 집필하고 있는데, 위 제1의 다. (1), (2)항 기재 기사는 작가인 피고 김○○의 문학적, 예술적 표현에 의한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

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먼저 위 기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먼저 원고 임○○가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임○○가 공적인 인물이고, 그 표현이 충청일보사태라는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 김○○이 2004. 11. 4.부터 2005. 1. 17.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면서 피고 김○○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매번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특히 충청일보사측을 지칭하여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대들도 철철철 피를 흘릴 날이 올 것이다’, ‘충청일보 청산의 망상은 모리배들의 작란이다’, ‘괴뢰 노릇을 하는 모사꾼’, ‘토목자본을 섬기며, 돈의 찬가를 부르니’, ‘임광 삼십년 안에 흑 멸망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기억하고 계셔서 반드시 응징하리니 그대 자손들이 원한에 맺힌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으면서’, ‘그대가 섬기던 잡귀신 돈쇠에게’ 등의 저속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사단법인 충북협회 회원들에게까지 ‘아침으로 일가를 이룬 아침가들’, ‘낙오자들’, ‘정신이상자’, ‘판단착오자’, ‘더러운 사기꾼’,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등의 비하하려는 피고 김○○의 경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 임○○의 구체적인 행위나 생각을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원고 임○○가 충청일보의 사주로서 위장폐업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면서, 원고 임○○ 및 충청일보 경영진, 충북협회 소속인 회원들이 자신처럼 충북일보 사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 등만을 들어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 방법 외에도 위법하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들의 명예보호를 비교 형량해 볼 때, 글에는 수필, 논설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언론사에 게재하는 논설 등에서의 표현방식과 일반 소설 등 문학작품에서의 표현방식은 달라야 하는 점, 피고 김○○은 국문학박사로서 대학에서 국어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김○○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 글들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 김○○의 위 기사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한○○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 한○○은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기사는 모두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 게재된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 게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는 언론매체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가 있는바, 원고 임○○, 조○, 충청일보가 자신에 대한 기사가 허위이거나 이에 관하여 반론을 제기하려면 우선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임○○, 조○, 충청일보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임○○, 조○, 충청일보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언론매체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언론매체에 대하여 위 권익침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양 청구권은 그 요건 및 효과 등이 다른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양 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어야 하거나 또는 정정보도청구 또는 반론보도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우선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사들의 내용 및 게재동기와 경위, 그 표현방법,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피고 씨비아이뉴스 및 충청리뷰사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 임○○, 조○, 충청일보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위 피고들의 태도, 피고 김○○, 한○○의 직업 및 수입 정도, 위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이상 경과하여 위 원고들이나 위 피고들이 위 사건을 다시 들추어 내기 보다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시점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문○○은 원고 조○에게 금 2,000,000원,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는 각자 원고 임○○, 조○에게 금 7,000,000원, 원고 임○○에게, 피고 한○○은 금 4,000,000원, 피고 충청리뷰사는 피고 한○○과 각자 금 2,000,000원, 피고 씨비아이뉴스는 원고 충청일보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임○○, 조○, 충청일보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11. 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임○○, 조○의 피고 문○○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임○○, 조○의 사진 부착 관련

2004.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에 소재한 충청일보 사옥 본관과 노조 사무실간의 연락통로 계단 바닥에 원고 임○○, 조○ 외 2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노조 사무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밟고 지나다녔다.

(2) 원고 조○의 언론사 재직 관련

피고 문○○은 2004. 9. 30.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소재 원고 ○○토건 사옥에서 원고 충청일보의 대표이사 지○○이 있는 자리에서 “조○은 대주주와 충청일보를 맡아먹을 사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① 조○은 국민일보, 문화일보, 충청일보에 재직하면서 각종 비리로 자신의 잇속을 챙긴 인물이다. 조○은 한 건 챙겨 회사를 떠날 사람으로 회사파괴행위자이다. 반언론적인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조○의 비리전력은 다음과 같다. ② 국민일보 재직시 : 윤전기 도입과정에서 T. K. S. 윤전기 회사 국내대리점인 진 엔지니어링 대표로부터 자사 제품 선택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함. 추후 진 엔지니어링 대표가 국민일보 사장에게 보고하여 문제가 됨. ③ 문화일보 재직시 : 중고 윤전기 도입 과정에서 풀세트 구입 후 컬러 유니트는 별도 보관함. 이후 컬러면 부족을 이유로 컬러 유니트 추가 설치가 필요하자 별도 보관하던 컬러 유니트를 새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함. ④ 충청일보 재직시(1997년, 상무 시절) : 타워유니트 증설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있는 부품 일부가 누락되었음. ⑤ 충청일보 재직시 : 신문용지대를 경리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자신이 현금과 어음을 가지고 결제를 하고 있음. 조○ 전무가 결제를 하면 1주일 후에 용지회사 이사가 조○ 전무에게 찾아옴”이라는 허위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3) 원고 조○에 대한 대자보 부착 관련

2004. 10.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원고 충청일보 사옥 2층 화장실 입구에 “대표이사 사칭하다 개망신당한 조○은 집에 가라. 그 나이에 한 푼 더 벌겠다는 그 맘은 기특하나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다. 힘들겠다. 그림 절도에 출장비 착복에”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되

었다.

나. 판 단

(1) 사진 부착 관련

원고 임○○, 조○은 피고 문○○이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위 원고들을 모욕하였으므로 피고 문○○은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1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 피고 문○○이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의 사진을 부착하였다거나 피고 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을 부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언론사 재직 경력 관련

원고 조○은 피고 문○○이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문○○은 원고 조○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 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이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원고 충청일보의 대표이사인 지○○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문○○이 공연하게 위와 같은 유인물을 원고 충청일보 대표이사인 지○○에게 건네주어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충청일보의 사회부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문○○이 당시 내부보고용으로 원고 충청일보의 현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원고 임○○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임○○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에 당시 원고 충청일보 대표이사인 지○○으로부터 원고 임○○에게 꼭 전달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에게 위와 같은 유인물을 건네주었으며, 당시 위 장소에 지○○ 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원고 충청일보 대표이사인 지○○이 같은 회사의 이사인 원고 조○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유인물을 타에 배포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위 글은 단지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문○○이 원고 충청일보의 대표이사인 지○○에게 위와 같은 유인물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 조○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자보 부착 관련

원고 조○은 피고 문○○이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대자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문○○은 원고 조○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 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 문○○이 위와 같은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여 이를 부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 조○의 피고 충청리뷰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조○은 피고 충청리뷰사가 위 제1의 다.의 (1), (2)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충청리뷰사는 원고 조○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 충청일보의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충청일보의 주장

원고 충청일보는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가 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충청일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으므로,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는 각자 원고 충청일보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충청일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2, 35,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가 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가 원고 충청일보의 사주인 원고 임○○, 대표이사 지○○, 전무인 원고 조○을 각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가 원고 충청일보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위 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기사는 원고 충청일보의 사주 등을 비방하는 내용일 뿐 원고 충청일보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은 아니다), 원고 충청일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 임○○, 조○의 피고 김○○, 한○○,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임○○의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35,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1. 16.자 청주 KBS 긴급토론회

피고 김○○은 2004. 11. 16. 청주 KBS 공개홀에서 열린 “충청일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에서 “충청일보 사태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 “임○○ 대주주는 충청일보를 장식적 성격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폐간과 청산이라는 착각을 통해 전근대적 인식으로 가부장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임○○ 회장의 정신구조는 폐권주의, 성장발전주의, 관료지향의식, 적자생존론, 자민족중심주의, 우월주의다”라고 발언하였다.

(나) 2005. 1. 17.자 씨비아이뉴스 기사

피고 김○○은 2005. 1. 17.자 씨비아이뉴스에 “충북협회 신년교례회장의 무분별한 폭력사태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으로 일가를 이룬 아침가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낙오자들, 아직도 자신들의 세상인 줄 착각하는 정신이상자들,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는 도학자들, 젊은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판단착오자들, 개인적 이익이나 찾으러 다니는 더러운 사기꾼들,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삼류 장사꾼들, 세상을 거꾸로 돌려보려는 수구보수주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명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순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계획하여 작전을 짜 놓을 정도로 명석하였습니다. 몇 명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250명의 충북 출신 인사들은 분명히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환한 웃음과 고상한 덕담 속에 오가는 사교적인 분위기는 아직 자본과 권력이 한 패거리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은 원고 임○○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원고 임○○는 피고 씨비아이뉴스가 피고 김○○과 공동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임○○의 피고 씨비아이뉴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또한 원고 임○○는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는 원고 임○○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OO가 입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OO, 씨비아이뉴스가 위 (1)의 (내)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사의 '낙오자들, 정신이상자들, 도학자들, 판단착오자들, 사기꾼들, 장사꾼들, 수구보수주의자들' 또는 '몇 명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한 250명의 충북 출신 인사들'이라는 표시만으로 위 표시가 충북협회의 구성원 또는 원고 임OO를 지칭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기사 내용이 원고 임OO를 지칭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하는 글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임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김OO은 자신은 작가로서 모든 글을 작품으로 간주하여 집필하고 있는데, 위 (1)의 (가)항 기재 기사는 작가인 피고 김OO의 문학적, 예술적 표현에 의한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은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청일보 사태의 분석과 전망"이라는 글은, 충청일보가 노사분규로 인하여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치하고 있던 2004. 11. 16. 충청일보와 관련하여 KBS 청주방송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피고 김OO이 발제자로 참가하여 발표한 글로서, 그간의 충청일보 사태의 경과와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A4 용지 20페이지 가량의 분량에 해당하는 글인데 위 글 속에서 피고 김OO은 나름대로 충청일보의 사주나 경영진의 세계관, 언

론관이 충청일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평가를 하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 김○○이 충청일보 사태의 그 간의 경과에 관한 사실관계와 그 원인에 관한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김○○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임○○, 조○의 피고 한○○,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 10, 14,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에 관한 2004. 4. 28.자 충청리뷰 기사

피고 한○○은 2004. 4. 28.자 충청리뷰에 “충청일보 비상근 대표이사 체제 배경은?”이라는 제목으로 “조전무(원고 조○)는 ○○토건의 초창기에 일등공신으로 인식될 정도로 공사수주에 발군의 실적을 기록,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선 ○○토건의 영종도 골프장 조성에도 조전무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원고 임○○, 조○에 관한 2004. 5. 13.자, 2004. 9. 3.자 씨비아이뉴스 및 2005. 5. 15.자 충청리뷰 기사

피고 한○○은 2004. 5. 13.자 및 2004. 9. 3.자 씨비아이뉴스, 2004. 5. 15.자 충청리뷰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라”라는 제목으로 “조○ 전무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몇 차례 노조와 상의 없이 인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다른 의도는 없다. 앞으로는 직원 인사시 부서장의 추천과 간부들이 주축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인사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지난 2월 19일 취임한 조○ 전무이사는 5월 6일 사원총회에서 한 가지 특단의 발언을 한다. ‘나는 임회장(임○○)의 지시를 받고 올 연말까지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러나 지금 잘 되고 있어 임회장과 없던 일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원고 임○○에 관한 2004. 10. 7.자 씨비아이뉴스 기사

피고 한○○은 2004. 10. 7. 피고 충청리뷰사 사무실에서 원고 임○○를 비방할 목적으로 씨비아이뉴스에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30여년 외길을 걸어온 사람(민○○)에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수리하는 처사는 임○○ 회장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신문 발행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원고 임○○에 관한 2005. 1. 17.자 씨비아이뉴스 기사

피고 한○○은 2005. 1. 17.자 씨비아이뉴스에 “임○○ 회장, 이제 손떼라”라는 제목으로 “30년 외길을 걸어온 사람(민○○, 충청일보 논설위원)에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수리하는 처사는 임○○ 회장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판 단

(가) 위 (1)의 (가)항 기재 기사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조○은 피고 한○○,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는 공동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조○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위 기사 내용은 원고 조○의 공적을 치켜 세우는 것이지 원고 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기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의 (나)항 기재 기사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위 (1)의 (나)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은 2004. 5. 13.자 씨비아이뉴스 및 2004. 9. 3.자 씨비아이뉴스, 2004. 5. 15.자 충청리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임○○,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한○○은 원고 임○○, 조○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원고 임○○, 조○은 피고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가 피고 한○○이 위 나.의 (1) (나)항 기재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기사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 피고 한○○이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할 경우 원고 임○○, 조○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여야 할 것인데, 그 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게재하여 원고 임○○, 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는 피고 한○○과 각자 원고 임○○, 조○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 ③항 기재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사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임○○, 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 한○○은 위 (1)의 (내)항 기재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원고 충청일보의 직원인 김△△이 편집부장으로 인사가 난지 불과 1달 여만에 괴산 주재 기자로 인사조치가 되었던 사실, 김△△에 대한 인사는 비교적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조○ 등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 조○이 피고 한○○과 전화통화하면서 ‘노조와 상의 없이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교육책이었지 다른 의사는 없고 앞으로는 직원 인사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 충청일보 경리부 차장으로 비노조원인 이○○이 2004. 5월 초경 직원회의 석상에서 원고 조○이 ‘회사를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와서 회사 운영이 좋아져 문을 안 닫는다. 단 내가 이 회사를 떠나면 회사도 같이 문 닫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 조○ 역시 ‘임○○ 회장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10여년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일보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4월 경영실적이 1억 7천만 원의 흑자가 발생해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이 위 (1)의 (내)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당시 원고 충청일보 사태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위 (1)의 (내)항 기재 기사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위 (1)의 (내)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은 위 (1)의 (내)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한○○은 원고 임○○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한○○은 위 (1)의 (내)항 기재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충청일보의 논설위원 민○○이 사표를 제출할 당시 원고 충청일보의 사주측과 노동조합측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던 사실, 민○○이 실제로 30여년 동안 원고 충청일보에 근무하였고 사표를 제출할 당시는 논설실장으로 신문의 논설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실, 민○○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절필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원고 충청일보 노사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바, 민○○의 사표수리를 단순한 직원 개인의 사표 제출과 그에 따른 수리로 보기는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이 작성, 게재한 위 (1)의 (내)항 기재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당시 민○○에 대한 사표 수리 과정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태) 위 (1)의 (태)항 기재 기사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위 (1)의 (태)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 씨비아이뉴스는 위 (1)의 (태)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한○○, 씨비아이뉴스는 원고 임○○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나아가 원고 임○○는 피고 충청리뷰사도 피고 한○○, 씨비아이뉴스와 공동하여 위 (1)의 (태)항 기재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충청리뷰사는 피고 한○○, 씨비아이뉴스와 각자 원고 임○○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임○○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 한○○은 위 (1)의 (태)항 기재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태)의 ②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한○○이 작성한 위 (1)의 (태)항 기재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당시 민○○에 대한 사표 수리 과정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조○의 제1의 라. (6)항 기재와 같은 기사에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조○은 피고 한○○이 충청리뷰에 위 제1의 라. (6)항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조○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한○○은 원고 조○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 ○○토건의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토건의 주장

원고 ○○토건은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가 공동하여 2005. 1. 15.자 충청리뷰 및 2005. 1. 13.자 씨비아이뉴스에 “○○, 하늘이 친다”라는 제목으로 “○○토건은 충북 청주의 전통 있는 신문 충청일보를 폐쇄하고 폐간하며 또 청산했다. 강경한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이라는 ○○의 강변은 강가의 조약돌이 웃을 만한 어불성설이다. 생존을 위하여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의 비정함에 비하면 조족지혈

이다. 그렇진대 ○○의 이번 처사는 능히 삼세(三世)의 원한을 살만한 비정하고 비열한 것이었다. ‘법으로 하고 돈에 따른다’라는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신념이라면 하늘은 물을 것이다. 그대 ○○은 과연 법대로만 살아왔으며 그대의 신은 돈이냐고 말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토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 ○○토건에게 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토건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가 위 주장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임○○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원고 임○○ 뿐만 아니라 원고 ○○토건의 명예까지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토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원고 충청일보의 피고 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충청일보의 주장

원고 충청일보는 피고 한○○이 2004. 9. 2.자 씨비아이뉴스에 “충청일보 노조의 굴절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십중팔구 사측은 또 노조와해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보복 내지 부당인사’는 이번처럼 항상 사측에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 충청일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한○○은 원고 충청일보에게 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충청일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이 원고 충청일보의 위 주장과 같은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의 이면에는 원고 충청일보가 충청일보 사태에서 보복 내지 부당인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사는 원고 충청일보의 사육과 그 부지의 소유권이 2000. 8. 24. 원고 ○○토건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기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 한○○ 자신이 10여년 간 원고 충청일보에 근무하

다가 그만 둔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인 점이 인정되므로, 위 기사는 그 주된 내용이 원고 충청일보가 노동조합의 와해를 조장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보복 내지 부당인사를 할 것이라는 피고 한○○의 판단을 게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기사가 원고 충청일보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충청일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임○○의 피고 김○○, 한○○,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조○의 피고 문○○, 김○○, 씨비아이뉴스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충청일보의 피고 씨비아이뉴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원고 임○○의 피고 문○○에 대한 청구, 원고 조○의 피고 한○○, 충청리뷰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충청일보의 피고 김○○, 한○○에 대한 각 청구, 원고 ○○토건의 피고 김○○, 씨비아이뉴스, 충청리뷰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이 정 미

판 사 조 희 찬

판 사 이 연 경

□

IV. 기타사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자 판결 (2007고합81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NB NEWS 편집국장 김○○(이하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26일에 CNB NEWS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 2006년 12월 9일에 CNB NEWS 『02년 박○○-김○○ 면담은 DJ 작품설』의 기사 등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박○○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CNB NEWS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박○○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 등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판 결 문

사 건 : 2007고합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김 ○ ○

검 사 : 조 석 영

변 호 인 :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윤 덕 근

판 결 선 고 : 2007. 10. 25.

주 문 :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3의 죄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 (CNB NEWS, 인터넷 홈페이지 <http://○○.com>) 및 주간지 ‘○○’의 편집국장이고, 2006. 7.경부터 이○○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인터넷 홈페이지 <http://○○.net>)』 및 『이○○을 지지하는 모임(인터넷 홈페이지 <http://○○.net/>)』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바,

1. 박○○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위 박○○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 박○○의 대통령선거 당선에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박○○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11. 26.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 전 대표인 피해자 박○○가 2002.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김○○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물류기지화 한다는 소위 '대륙횡단철도 구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박○○가 김○○ 국방위원장에게 대륙횡단철도 구상에 대한 동의를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박○○의 위와 같은 방북은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박○○ 의원의 방북을 주선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 뉴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om>)에 『박○○, 2002년 방북행적 의혹 확산』이라는 제목 하에, '일부에서는 2002년 방북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솔직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 방북 3박 4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 언론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차기대선을 위해 김 위원장과 묵시적인 빅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관련, 이○○ 총재와의 마찰로 탈당한 시기에 그녀는 방북을 추진한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설에 대해 심증이 간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탈당으로 여론에서 앞서던 이○○ 후보는 노○○ 후보에게 패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 전 대통령 관련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설의 근원은 김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박 전 대표 방북을 주선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방북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핵심은 대륙횡단 철도 공약에 대해 얼마 대가의 뒷거래가 이루어 졌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60억달러의 빅딜설이 나돌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위 박○○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2006. 12. 9.경 전향의 장소에서, 전향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위 피해자 박○○가 위와 같이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협상을 통하여 김○○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을 뿐,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박○○가 김○○ 전 대통령과의 밀약을 통하여 ○○을 탈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com>에 『02년 박○○-김○○ 면담은 DJ 작품설』이라는 제목 하에, '박○○ 의원의 김○○ 단독면담에 대해 김○○ 당시 대통령의 작품설이라는 설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11일자로 발행되는 ○○은 이 같은 사실을 심층보도했다. 그 당시 김○○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국정원등을 동

원해 여러 작품을 구상했지만 오히려 갈수록 지지기반이 바닥을 쳤다. 김○○ 대통령은 만일 정권을 ○○에게 특히 이○○후보에게 내어줄 경우 친인척은 물론 측근들이 서울구치소로 향할 것을 두려워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묘책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서 김○○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바로 ○○ 대선후보를 분열시키는 작전이다. 김○○ 대통령은 ○○ 유력 대권후보인 박○○ 의원을 밀회를 통해 김○○ 단독 면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후보는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위 박○○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의 인격,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박○○로 하여금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이○○으로 하여금 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박○○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올려 박○○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7. 2. 14.경 전향과 같은 장소에서 이○○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t>)』에 『어~박○○도 ○○ 창간을』이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을 지지·홍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7. 2. 14.경 전향과 같은 장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국민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t>)』에 『어~박○○도 ○○ 창간을』이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을 지지·홍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폄훼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 2007. 2. 14.경 전향의 장소에서 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온라인 지지모임인 『이○○을 지지하는 모임』(인터넷 홈페이지 <http://○○.net/○○>)』에 『어~박○○도 ○○ 창간을』이라는 제목으로 ‘박○○ 후보가 온라인 언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자금은 박○○ 육영재

단 이사장, 제5공화국 비자금 또는 모 그룹 비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을 지지·홍보하고 박○○ 내지 박근혜 측 인사들을 비난·편협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4. 경기도에서 '○○', '○○', '○○' 등 온라인 뉴스 매체에 대하여만 광고계약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기도 도지사 김○○와 '○○'에 대한 비방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9.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경기도청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그와 별도로 통상에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을 뿐, 경기도로부터 막대한 광고료를 지급받거나 김○○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협약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http://www.○○.com> 에 『김○○ '제2노○○ 꿈 돌입' ···道 혈세 쏟아붓기, 사조직 '○○, ○○' 온라인 매체 양성 中』이라는 제목으로 '김○○ ○○지사가 차차기 대통령의 권좌를 위해 언론사를 최대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에 막대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은 경기도 및 김○○ 도지사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김○○ 경기도지사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은 김○○ 도지사 대통령 만들기 협약을 한 것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 정○○, 김○○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보도자료, 관련자료,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의 네티터 활동관련 질의회답 공문사본, ○○ 소속 네티포트명단 및 기사 게재 현황, 『국민캠프 747, 일하겠습니다 이○○(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et>)』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초기 화면, 『이○○을 지지하는 모임』(인터넷 홈페이지 <http://○○.net/○○>)』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초기 화면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박○○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글을 ○○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박○○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글이 ①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②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③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 각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박○○의 2002년 방북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게시글 등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 2항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 판시 제3항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사전선거운동의 점)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은 ‘인터넷 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인바, 방송·신문 기타 매체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정과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판시 제4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 2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판시 제3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4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판시 제1, 2, 3의 죄에 정한 형과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을 분리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11. 26.부터 2007. 3. 20.까지 자신이 편집국장으로서 있는 ○○의 홈페이지와 이○○의 온라인 지지모임의 홈페이지에 박○○의 2002년 방북 당시의 행적에 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박○○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였고, 나아가 위 게시글에 필명을 바꾸면서 박○○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뉴스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의하여 댓글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

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의 게시글에 대하여 ○○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온라인 뉴스 매체인 '○○' 과 김○○ ○○지사의 관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기소요지

검사는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죄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의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본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함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제254조 제2항 제2호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박○○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호 위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1죄의 관계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민병훈

판사 한기수

판사 장우영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 편집자 주



피고인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전주지방법원 2006. 5. 12.자 판결 (2006노195)

대법원 2007. 12. 27.자 판결 (2006도3619)

사실개요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7년 12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신문 사회부 기자 김○○(이하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소속 신문 2005년 3월 23일자 1면에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 증인 성관계 시인』 제하로 “〈속보〉 김△△ ○○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의혹 사건(명예훼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해 향후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옳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위 인정사실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보도는 속보성이 요구되는 전날의 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관련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해석을 김□□의 증언 내용인 것처럼 오인케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점, 이 사건 보도가 게재된 새전북신문은 전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재판부는 2006년 1월 2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당시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김△△ 군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371~381면 참조).

2심 판결문

사 건 : 2006노19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김 ○ ○

항 소 인 : 검사

검 사 : 김 도 완

변 호 인 : 변호사 유 충 권

제1심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5고단1203 판결

판결 선고 : 2006. 5. 12.

주 문 :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백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새전북신문의 기자인 피고인이 2005. ○. ○.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라는 제목으로 ‘...김 양은 김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2005. ○. ○. 새전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해자가 2005. ○. ○. 자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김□□의 증언과 관련하여 문제삼은 것은 ‘핵심증인 성관계 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인데 이에 피고인이 위 부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증언’이라고 바로잡은 점, 변호사 하○○가 김□□의 증인신문 후 기자들에게 ‘김□□이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한 점, 당일 이루어진 녹음테이프 검증과 공개절차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김□□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밝혀져 피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그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 그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하○○로부터 전해들은 김□□의 증언 내용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 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

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새전북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공원 조성방향 연구 용역 수주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2005. ○. ○.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인 같은 달 이미 새전북신문에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 요구를 받고서도 추가적인 아무런 확인 없이 종전 기사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점, 김□□은 법정에서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을 뿐 성관계의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특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김□□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는 말을 하○○로부터 들었다고 변명하나 정작 하○○는 ‘김□□이 단지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할 무렵 피고인이 속한 새전북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공원 조성방향 연구 용역 수주 요구를 ○○군에서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그 판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위와 같은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사실을 적시한 경위·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김□□이 2005. ○. ○.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공소의 한○○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군수를 자처하는 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증언한 사실, ② 한○○의 변호인으로서 당시 위 증언을 들은 하○○는 휴정시간에 피고인을 포함한 전주지방법원 출입 기자들에게 김□□이 ○○군수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하였으며 단지 ‘당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③ 피고인 근처에 있던 어느 기자가 ‘김□□이 자신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군수인 것으로 착각하였고 그 사람이 이국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첩에 「→ 군수로 착각 → 이국적인 인상」이라고 메모한 사실, ④ 하○○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기자들 중 전북일보 기자 김◇◇은 여중업원 C씨는 이날 열린 비공개재판에서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진짜 군수로 착각한 것 같다”며 군수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한 뒤 “당시 관계를 가진 사람의 배에는 칼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⑤ 이와 달리 피고인은 2005. ○. ○.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새전북신문에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한 사실, ⑥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요청을 받은 사실, ⑦ 이에 피고인은 김○○, 하○○, 담당재판부나 검사, 함께 취재한 다른 언론매체 소속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라는 제목으로 ‘...김 양은 김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일 새전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다음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비방의 목적에 관해 본다.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 이전에 김□□이나 하○○는 물론 담당 재판부나 공판검사, 함께 취재를 했던 다른 기자들 중 누구에게도 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 기사가 나간 이후에 피해 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본 사실, 피고인이 김□□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은 채 “김 양은 비공개신문에서 김 군수의 신체특징인 배의 칼자국을 들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지만 배에 칼자국이 난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사실만 이 사건 보도에 포함시킨 사실, 피고인 스스로 김□□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되면 피해자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보도는 속보성이 요구되는 전날의 보도와는 달리 정정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점, 관련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해석을 김□□의 증언 내용인 것처럼 오인케 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점, 이 사건 보도가 게재된 새전북신문은 전북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결국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고(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채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별도로 분리·확정되었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전북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2005. ○.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의 1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 공소의 한○○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2004고단169)의 공판과정을 취재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사건의 증인 김□□이 피해자인 ○○군수 김△△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음에도 같은 날 이에 반하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송고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일자 새전북신문에 그 기사가 게재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라는 제목으로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 ○일 1면에 보도한 ‘김△△ 군수 성매매 의혹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 시인’ 제하의 기사 가운데 ‘군수와 성관계 사실 시인’ 표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증언’으로 바로잡습니다. 본보의 이 같은 표현은 지난 ○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 군수 명예훼손 사건 증인신문에서 김 군수로부터 고소당한 한 모 씨 측 핵심증인인 김 모 양의 비공개증인신문과 … 증언에서 김 양이 김 군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 이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김 양은 김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인하기 보다는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달 ○일자 새전북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1. 김△△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 1. 하○○가 작성한 우편 진술서 및 인증서의 각 기재
- 1.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송○○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취재수첩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 1. 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광수

판사 김대규

3심 판결문

사 건 : 2006도361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 고 인 : 김 ○ ○
 주거 전주시 완산구 ○ ○
본 적 : 여수시 ○ ○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유충권
원 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노195 판결
판 결 선 고 : 2007. 12. 27.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 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에서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 6555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54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재 시점이나 게재를 전후한 상황, 글의 전후 문맥, 표현방법과 전체적인 흐름,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치는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둘러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 홍 훈

주 심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대법관 안 대 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시 행 : 2005. 7.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

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

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

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범익이나 사회적 범익 또는 타인의 범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 | |
|---|--|
| <p>■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p> <p>■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p> <p>■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p> <p>■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p> <p>■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p> | <p>■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p> <p>■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p> <p>■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p> <p>■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p> <p>■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p> |
|---|--|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5집 (언론중재 통권107호 부록)

2008년 6월 25일 인쇄
2008년 6월 30일 발행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조사분석팀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 • 대표 397-3114
• 언론피해상담 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397-308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